#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 - 총 185개 국가·지역 -

2021.12.28.(화) 10:00 외교부

국가·지역별 가나다순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20.4.13.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해당국 리스트는 동 게시글 세 번째 첨부물에서 확인)

## 1 입국금지 조치 : 57개(26*) 국가·지역

*57개국 중 26개국은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아시아·태평양 | 나우루 | ▸모든 여행객은 호주(빅토리아주 제외),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파푸아뉴기니 제외 13개국)에서 체류 후 승인을 받아 나우루 입국 가능(20.8.7.)<br>※ △탑승 전 보건설문지 작성 및 체온 등 확인, △입국여행객 보건신고서 작성, △신체 건강 및 체온 확인, △필요 시 기타 검사 실시<br>※ 모든 입국자는 지정 주거시설에서 14일 격리,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 | 뉴질랜드 | ▸20.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br>*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등<br>※ 예외적 입국 허용 시에도 비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는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만 입국 가능<br>- 단, 17세 미만 혹은 건강상 사유로 접종 불가한 경우 진단서 소명시 동 요건 면제 가능<br>※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20.6.19.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br>-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br>▸(예외적 입국 허용 시) 입국 후 방역조치<br>※ 21.12.23. 23:59 이후부터 뉴질랜드 입국시 10일간의 시설 격리 필요<br>※ 21.1.18.부터 모든 해외입국자(호주·남극·태평양도서국 제외)에 대해 뉴질랜드 도착 시 코로나19 PCR 검사 제도 실시<br>- 22.1.7.부터 모든 지역(호주 Norfolk Island·남극·태평양도서국 제외)에서 출발하는 경우, 출발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PCR 또는 RT-PCR 검사 결과만 인정)<br>▸(Travel Bubble) 관련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쿡제도, 니우에,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경우 無격리 입국 가능<br>※ 호주-뉴질랜드 Travel Bubble의 경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short notice로 중단된 만큼, 이민성 홈페이지 공지 수시 확인 권장 |
| | 니우에 | ▸20.4.1.부터 자국 거주민(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6개월간 거주한 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의 입국 불허<br>※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반드시 14일간 격리 조치<br>※ 니우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전문직 종사자 등은 입국 가능 |
| | 대만 | ▸21.5.19.부터 모든 외국인의 대만 방문은 물론 단순 경유도 금지<br>※ 예외적 입국 허용 : △긴급 또는 인도적 사유, △거류증 소지 외국인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단, 유학생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미포함) △특별입경 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 △대만인의 외국국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br>▸예외적 입국 시 아래 방역조치 적용<br>※ (거류증 및 특별입경 비자 소지 외국인)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 시, △대만 거류증 또는 특별입경 비자, △항공권 및 격리시설 예약증, △진단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검사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br>※ (특별입경 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 전 △항공권 및 격리시설 예약증, △대학교 입학 동의서, △진단검사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br>▸대만 입국 허용 후 격리조치(21.12.14.~22.2.14. 한시 적용)<br>※ 거류증 미소지 외국인은 방역호텔·집중검역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원칙<br>※ 백신 미접종자 : 10일 방역호텔 + 4일 자가격리 + 7일 자발적 건강관리<br>- 격리 9~10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br>- 자가격리는 격리대상자가 자가(自家)에서 단독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격리 동거 가족이 모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독립된 방에서 격리한다는 조건으로 허용<br>- (방역조치) ①입국시 공항내 PCR 검사, ②격리 3일차 및 7일차 자가진단키트 각각 검사 실시(국비지원), ③격리 10일차 및 14일차 PCR 검사 실시, ④코로나19 음성판정 이후 자발적 건강관리로 전환, 입경 20일차 또는 21일차에 자가진단키트 검사(국비지원) 실시<br>※ 백신 접종자* : 7일 방역호텔 + 7일 자가격리 + 7일 자발적 건강관리<br>* WHO 긴급승인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4일 경과 후 대만에 입국한 자(입국시 영문 백신접종완료증명서 제출 요망)<br>- 격리 6일차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br>- 자가격리는 격리대상자가 자가(自家)에서 단독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격리 동거가족 모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하였고 아래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격리대상자가 비격리 동거가족 거주지의 독립된 방에서 격리하는 것을 허용<br>☞ 비격리 동거가족은 ▲(격리대상자의 自家격리 기간) 7일간 강화된 자발적 건강관리 실시 ▲(격리대상자의 자발적 건강관리 기간) 7일간 자발적 건강관리 실시 ▲격리대상자의 격리 10일차 및 14일차에 자비로 자가검사(진단키트 활용) 실시<br>- (방역조치) ①입국시 공항내 PCR 검사, ②격리 3일차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국비지원), ③격리 6일차 PCR 검사 실시, ④격리 10일차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국비지원), ⑤ 격리 13일차 또는 14일차 PCR 검사 실시, ⑥코로나19 음성판정 이후 자발적 건강관리로 전환, 입경 20일차 또는 21일차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국비지원) |
| | 동티모르 | ▸정기 민항편 운영 중지, 비정기 민항기만 운항(21.5.7.)<br>※ 외국인의 필수 목적 입국 가능(도착비자 제한 없음), 입국 전 주재국 내 위기관리통합센터 통해 입국허가 취득 필요<br>※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필수 제출<br>※ 입국 후 정부지정호텔에서 14일 시설격리<br>-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WHO 승인 백신)의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증명서 지참 시 격리 면제(단, 입국 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실시) |
| | 라오스 | ▸별도 발표 시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및 비자발급 중단(20.12.23)<br>※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입국을 원하는 경우 입국 전 라오스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사전허가 필수 및 라오스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결과서(RT-PCR만 인정) 제출<br>- 주요 사업 관련 전문가, 기술자, 해외노동자 등이 긴급하게 입국이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사전허가에 따라 예외적 비자발급<br>- 입국 직후 진단검사 실시(US$70 상당 비용 자부담) 및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공관직원의 경우 자택 격리)(21.11.15.)<br>- 14일간 추적장치 소지(임대료 US$6/1일) 및 코로나19 보험 가입(US$100) 의무<br>▸22.1.1부터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14일 경과 단체관광객 입국 가능(21.12.17)<br>※ 비엔티안특별시, 방비엥, 루앙프라방을 여행할 수 있으며, 승인된 여행사를 통해 입국허가를 진행하고 라오스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RT-PCR 검사 음성결과지 제출 필요<br>- 라오스 도착 즉시 RT-PCR 검사 실시 및 24시간 시설 대기한 후, 음성 판정시 여행 가능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 5만 미불 이상 보장성 보험 가입, Lao Stay Safe 앱 설치 및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록<br>- 비엔티안특별시 왓따이 국제공항과 제1우정교(쿠와밋따팝) 육로국경을 통해 입국 가능하며, 시행추이에 따라 입국 국경 및 여행 가능 지역 확대 예정 |
| | 마셜제도 |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6.5.) |
| | 마이크로네시아 |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20.5.4.) |
| | 마카오 | ▸외국인(중국, 홍콩, 대만 제외) 대상 입국 금지(20.3.25.)<br>※ 외국국적자 중 마카오 내 중국영사부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중국비자를 소지하고 중국 방문 후 마카오로 돌아오는 경우 입국 허용<br>※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입국 허용 신청 가능(단, 입국허용 여부 및 방역조치(격리 등)는 마카오 정부가 결정)<br>- (최근 21일 이상 중국 또는 홍콩에 머문 경우) △마카오 거주자(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마카오 거주 자격을 습득한 자, △마카오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 △중요한 사업, 학술적 목적으로 마카오를 방문해야하는 자, △취업 등 마카오 비거주 체류자격을 습득한 자 또는 그의 배우자 및 자녀<br>- (최근 21일 이상 대만 또는 여타 국가에 머문 경우) △마카오 공공이익 발전 목적에 부합하는 자, △마카오 내 일일필수품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자<br>▸마카오 거주자/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입국 전 체류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른 방역조치 적용<br>※ (최근 14일 이상 중국 체류 후 입국시) 7일 내 발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소지 및 격리없이 입국(단, 최근 14일내 중국내 코로나19 발생지역을 방문한 경우 14일 격리)<br>- 단 최근 14일내 중국내 코로나19 발생지역을 방문한 경우 14일 격리<br>※ (입경 전 21일 이상 대만 체류 후 입국시) 24시간내 발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소지 및 21일 격리<br>※ (최근 14일 이상 홍콩 체류 후 입국시) 24시간내 발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소지 및 14일 격리<br>▸마카오 거주자의 경우 입국 전 체류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른 방역조치 적용<br>※ (최근 21일 이상 여타 국가 체류 후 입국시) 72시간 내 발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필수 소지, 21일/28일(혈청검사양성) 격리 및 7일 능동감시<br>※ (최근 28일 이상 방글라데시, 브라질,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남아공, 스리랑카, 탄자니아, 터키 체류 후 입국시) 7일내 3번 검사한 코로나19 음성결과지 및 백신증명서/항체 양성결과서 필수 소지, 28일/35일(혈청검사양성) 격리 |
| | 말레이시아 | ▸21.11.1.부터 유효한 말레이시아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은 이민국 사전승인 없이 출입국 가능 (관련 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br>※ 단, 비자미소지자(무사증), 비자 만료자, 신규 비자 신청자, 단기 기업 방문자 등은 기존과 같이 이민국으로부터 사전승인 필요<br>※ 21.11.27.부터 최근 14일 이내 변이바이러스 발생 적색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 및 환승 금지<br>- 자국인은 입국 시 14일 시설격리 실시하며 격리 10일차 PCR 검사 시행<br>*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짐바브웨, 말라위<br>▸21.12.8.부터 오미크론 확산 대응으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PCR 검사 지침 적용<br>※ ①~④ 해당시 출발 전 2일 이내, 도착 당일 RT-PCR 검사 시행<br>① 오미크론 변이 고위험국*으로부터 입국: 디지털 트래커(전자팔찌) 착용 필수<br>*(12.16 기준) 호주, 미국,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나이지리아, 인도(상황에 따라 수시 변동 예정)<br>- 영국발 입국자는 매일 Mysejahtera 앱에 셀프 RTK-Antigen 검사 결과 업데이트<br>② 랑카위 travel bubble 이용 입국: 랑카위를 떠나기 2일 전 PCR 검사 시행<br>③ 말레이시아-싱가포르 VTL 이용 입국(항공)<br>④ 기업인 단기방문을 위한 원스톱 센터(OSC) 이용 입국<br>- ②③④ 공통: △여행 3, 5일차 RTK-Antigen 검사, △여행 2, 4, 6일차 자가진단키트 검사(Mysejahtera 앱에 검사 결과 반영 필수)<br>▸21.5.25.부터 말레이시아 입국시 아래 방역조치 적용<br>※ 도착 전 3일 이내의 코로나19 스왑테스트 영문 음성결과지 제출(미제출시 탑승거부)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 모든 입국자는 공항 도착 이후 스왑테스트 실시(자부담)<br>※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입국 후 시설(호텔)격리 10일(자부담)<br>- 격리해제시 보건부 위험평가에 따라 7일 추가격리 가능(자부담)<br>- 웹을 통한 검역비 사전 지불 및 개별적으로 격리호텔(프리미엄 호텔) 지정 예약 가능<br>※ 백신접종 완료*하고 자가격리에 적합한 거주지가 있는 자는, 주재국 보건부에 신청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설 대신 자가격리 7일 가능(입국 7-10일 전 신청)<br>* 백신 2회 접종(화이자, AZ 등) 완료 후 14일 경과, 백신 1회 접종(얀센, 칸시노 등) 완료 후 28일 경과<br>▸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은 비즈니스 진출 목적 입국 촉진을 위해 원스톱센터(OSC) 운영 중이며, 단기 방문자에 대하여 격리 면제(투자, 사업주, 기술전문가 등)<br>※ http://safetravel.mida.gov.my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 | 미얀마 | ▸국제선 항공기 이착륙 금지 조치 실시(외국인 입국 금지)<br>▸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 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면제 중단(20.3.29.)<br>※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br>※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통신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br>▸20.3.25.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부과(20.3.24.)<br>※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20.3.19.)<br>*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br>▸모든 외국인 대상 시설자가격리 28일(21일 시설 격리 후 7일 자가격리)로 확대(20.4.11.)<br>▸긴급한 공무 또는 타당한 사유로 미얀마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하기 사항 충족 시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완화(20.6.19.)<br>- 미얀마 입국 최소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음성판정서 제출<br>- 입국 전 자국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증명<br>- 주한미얀마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고,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이 예외적 입국 희망자 리스트 및 사유를 공한으로 송부<br>- 입국 후 7일간 시설 또는 호텔 격리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올 경우 추가 자가격리 7일 후 활동 가능 |
| | 베트남 | ▸20.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3.21.)<br>※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중요 대외활동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외국인 학생·대학생, 인도적·치료적 목적 입국신청자) 제외(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21.7.5.)<br>-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입국 후 보건 당국에 통보/등록,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출발지 출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국제의료보험 가입 또는 △초청 기관에서 치료비 부담(21.7.5.)<br>※ 해외입국자(14일 미만 단기출장자 제외)는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한다는 보건부 지침 발표(21.7.14.)<br>- 시설격리 종료 후 14일 자가 및 체류지내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포함<br>- WHO 승인 백신접종 완료자(또는 감염 후 완치자)는 입국 시 시설격리 기간을 14일→7일로 단축(7일 시설격리 이후 의료적 모니터링 7일)(21.8.4.발표)(임시조치인 만큼 변동 가능성 다대)<br>※ 21.11월부터 5개 지정구역(푸꾸옥/카잉화/꽝남/다낭/꽝닝)에서 관광 전세기를 이용하는 패키지 여행 상품 허용(상세사항 여행사를 통해 문의 요망)<br>- (이용 조건)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통한 입국자, △베트남에서 인정하는 백신의 접종완료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완치증명서 소지, △출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 발급한 RT-PCR 또는 RT-LAMP 음성결과지 소지,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증하는 최소 5만불 배상 규모의 여행자보험 소지<br>----------<br>▸22.1.1.부터 해외입국자 격리 규정 완화 <u>예정</u>(21.12.16.) (구체적 내용 변동 가능)<br>※ (입국자 방역 관련 일반 요구사항)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행 PCR 음성확인서 소지(2세 이상) △PC-COVID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검역신고<br>※ (백신접종 완료자 또는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 △3일간 자가 등 체류지 내 격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리 실시 △입국일로부터 3일째 PCR 검사 실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br>- (백신접종완료자) 베트남 인정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백신여권 소지(베트남 내 미인정 시 소관 관청에서 영사확인 필요)<br>- (감염 후 완치자)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PCR 양성결과지 및 관할기관 발급 코로나19 완치확인서 소지<br>※ (백신접종 미완료자) △7일간 자가 등 체류지 내 격리 실시 △입국일로부터 3일째 및 7일째 PCR 검사 실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br>-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기저질환자의 경우) 백신접종을 완료하였거나 코로나19로부터 완치한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격리<br>※ (기타 요구사항) △공항 등 입국관문에서 체류지로 이동시 정차 자제 △보건부 지침상 격리조건*을 충족하는 곳에서 격리 필요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간 내 다중집합시설 출입 자제 △입국일로부터 1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자체 실시<br>*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가족구성원의 공동 생활구역과 분리된 별도 공간 마련 △별도 화장실, 에어컨, 세탁기 사용 △방역 폐기물용 별도 쓰레기통 구비 △동거인과 격리자의 접촉 자제 등 |
| | 브루나이 |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금지(20.3.24.)<br>※ △필수 비즈니스 여행(공무 여행 포함), △학업, △치료, △브루나이 국민·거주자의 부모, 배우자, 가까운 가족 등 배려 상황 및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한해 입국 승인<br>- 승인 신청은 브루나이 내 초청자가 Travel Portal 웹사이트에서 여행 8일전 Entry Travel Pass신청<br>- △브루나이로 출발 전 최소 14일 동안 출발국가에 체류,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발급, △브루나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2-14일(격리기간은 브루나이 정부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 의무 자가격리(고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 등은 10일차 및 12일차 추가 진단검사 실시), △브루나이 체류 최초 14일동안 BruHealth 앱을 통해 건강상태 일일보고 등 의무 준수<br>-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의무 격리기간이 1~7일(출발국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로 단축<br>※ 육로·해상 국경을 통한 브루나이 입국·경유 제한 연장<br>- 다만, 공무 출장, 학생, 긴급상황(구급차, 경찰, 군인)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br>- 브루나이 정부가 허가한 운송업자들이 필수품을 운반할 경우,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통행증 필요하며, 신속항원검사 실시<br>▸브루나이-싱가포르 상호 그린레인 재개(21.7.12.)<br>※ 브-싱 상호 그린레인: 국적불문,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 및 공무 목적의 필수 여행일 경우 사전 승인 신청을 통해 상호 방문이 가능한 제도<br>▸인도 및 인접국(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 대한 입출국 제한조치(추가 발표 시까지)<br>※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경유허가 잠정 중단, △해당 국가 향발 출국허가 잠정 중단<br>※ 단, 외교여권 소지자 및 군인, 비즈니스,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등 해당부처 승인을 받은 필수 목적 방문에 한해 입국 승인<br>▸아프리카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에 대한 입출국 제한조치(추가 발표 시까지)<br>※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경유 허가 잠정 중단, △해당 국가 향발 출국허가 잠정 중단 |
| | 사모아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20.3.21.)<br>※ 사모아 내각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제항공편 중단 |
| | 솔로몬제도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0.), 솔로몬항공 국제선 정기 운항 중단(~22.3.26.)<br>※ 6개월 이상 거주했고, 유효한 거주비자가 있는 외국인은 Oversight Committee(OSC)로부터 입국허가 가능 / 18세이상 성인(외국인 포함)이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백신접종 완료(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화이자 2회 접종 / 얀센 백신 1회 접종)일로부터 4주 경과 후 입국 가능<br>※ 입국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br>- 입국 신청 서한, 입국 신청비 납부 증명서(2,000 솔로몬제도달러/약 250미불), 유효한 노동 허가서, 장기 비자 사본, 여권사본, 백신접종 증명서, 배우자비자(필요시), 기타 관계 서류 등<br>※ 솔로몬제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25개국을 고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은 |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조 치 사 항</th></tr>
<tr><td></td><td></td><td>규제를 실시 중임.<br>- 고위험 국가: △출발 9~11일 전 코로나19 PCR 검사 1회 및 도착 72시간 전 코로나19 PCR 검사 추가 실시(사전 검사 총 2회 실시), △입국 후 14일 격리 및 총 3회(2일, 7일, 13~14일) 코로나19 PCR 검사 (18세 미만 동반 입국자의 경우 21일 격리 및 4회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br>- 솔로몬제도 정부는 입국이 허가된 모든 외국인들에게 고위험 국가 기준으로 사전 PCR 검사(총 2회) 및 14일 격리에 준하여 입국을 준비 할 것을 권고(21.11.3.)<br>※ 격리는 정부지정호텔에서 실시 (비용 자부담)<br>※ 22.3.26.까지 솔로몬항공 국제선 정기 운항 중단<br>※ 국가 비상사태(SOPE) 22.3.25.까지 연장</td></tr>
<tr><td></td><td>인도네시아</td><td>▸21.2.9.부터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을 금지<br>※ 입국 금지의 예외(21.9.15.부터 입국 금지 완화)<br>① 외교/관용 비자, 외교/관용 체류비자 소지자, KITAS(단기취업비자), KITAP(장기체류비자), 신규 KITAS(VITAS), (비즈니스, 가족)방문비자<br>* APEC Travel Card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허용<br>② 기타 법무장관령 27호(2021.7.19.) 유효<br>③ 단, 비자유효기간이 3개월 남아 있어야 하며, 외국인은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과 마나도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입국 가능<br>④ 10.14일부터 발리 공항을 통해 입국 가능 (△단기방문비자, △코로나 치료비용 10만달러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증, △체류할 숙소 예약 확인증 소지)<br>※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에도 백신접종완료증명서(출발 전 최소 14일 이전에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완료)와 출발일 전 72시간 이내 발행한 PCR 음성 결과지 휴대 의무(21.7.6.)<br>-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면제 대상) △부모와 동반한 만 12세 미만 외국인, △12-17세 외국인, △외교/공무 체류비자 소지자, △건강상 이유로 백신접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br>* 당사자가 백신접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시된 전문의의 건강진단서나 소견서, 의학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시 필요<br>※ 인도네시아 입국 후 9박10일 격리<br>- 입국 1일차와 9일차에 RT-PCR 검사를 실시하며, 9일차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다음 여행을 이어갈 수 있음<br>▸21.11.29.부터 14일 이내 다음 국가*를 방문했거나 거주한 경우 입국 금지<br>* 남아공, 보츠와나, 홍콩,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레소토<br>※ (입국/격리 제외 대상) △장관급 이상 공식 방문, △TCA로 입국하는 경우, △G20 방문단</td></tr>
<tr><td></td><td>일본</td><td>▸21.1.14.부터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br>※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계속)<br>※ 일본에 재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br>- 21.12.2.부터 남아프리카 10개국*으로부터 출발하는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도 원칙 거부<br>* 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잠비아, 앙골라<br>※ 21.1.14.부터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br>▸21.1.9.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br>※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의 '검사증명' 제출 필요(검사증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br>※ 공항 내에서 영상통화/위치확인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서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진위 여부 확인<br>※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원칙(격리면제 제도 불비)이나, 출발국가에 따라 시설격리 필요 여부 구분<br><table><tr><th>시행일</th><th>21.11.30.~</th></tr><tr><td>귀국/재입국 후 지정시설에서 격리 (격리시설 내에서 실시한 모든 진단검사에서 음성판</td><td>총 23개 국가/지역<br>- 10일간 격리 : 남아공,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미비아, 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말라위, 잠비아, 앙골라<br>- 6일간 격리 : <u>한국,</u> 이스라엘,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td></tr></table></td></tr>
</table>

| 구 분 | 조 치 사 항 |
|---|---|
| | <table><tr><td>정 시 입국 후 14일까지 남은 기간 자가격리)</td><td>아, 호주, 스웨덴, 독일, 포르투갈,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페루<br>- 3일간 격리 :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터키, 체코,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프랑스, 레위니옹, 벨기에, 모로코, UAE, 사우디,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우즈벡,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 코스타리카, 브라질, 콜롬비아, 수리남, 도미니카, 에콰도르, 아이티,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몽골, 홍콩, 러시아(모스크바, 해안지방), 미국(캘리포니아), 캐나다(알버타, 퀘벡, BC, 온타리오주)</td></tr><tr><td>귀국/재입국 후 자택 등에서 격리</td><td>상기 23개 국가/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택에서 14일 격리</td></tr></table><br>- 21.12.3.부터 호주, 캐나다(앨버타, 퀘벡, BC주), 한국, 스위스, 스웨덴,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령 레위니옹섬에서 출발한 입국자도 6일 시설격리 의무 적용 예정<br>※ 21.10.28.부터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국(한국 포함) 공적 기관에서 발행한 접종증명서 지참한 경우 격리기간 14일 → 10일로 단축<br>- 입국 후 격리 10일째 이후 개별적으로 받은 검사(PCR 또는 항원검사)의 음성 결과를 후생노동성에 통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대기 불요<br>- (격리기간 단축 조건) 검역소 숙박시설에서 6/10일간 대기대상인 국가/지역 외에서 입국했으며, 유효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자(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는 제조사, 접종일, 접종횟수 등 항목이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br>- (백신접종 인정 기준) AZ(코비쉴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중 한 가지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하고 일본 입국일 기준으로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br>▸(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사이국제공항·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br>※ 제3국가발 일본 환승 시,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br>▸21.11.8.부터 '입국책임자(입국자를 고용하거나 사업 또는 행사 개최를 위해 초대하는 기업, 단체 등)'의 관리하에 입국 후 최단 4일 이내 행동제한 재검토 인정 (상세내용은 주일대한민국대사관 공지사항 참조)<br>※ 11.30부터 전세계發 신규입국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기 조치 잠정 중단 |
| 쿡제도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4.)<br>※ 자국 거주민, 영주권자, 워크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외교이민부 승인하에 입국가능 |
| 키리바시 | ▸20.3.20.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국경봉쇄 |
| 통가 | ▸자국민,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20.3.20.) |
| 투발루 | ▸추후 공지 시까지 국경봉쇄<br>※ 예외적인 조건(의약품, 인도주의 등)으로 입국 시 14일간 의무격리 |
| 필리핀 | ▸입국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허용<br>※ 다만 단기방문비자(9a) 소지자는 도착후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 제출 필요<br>* 특별입국허가증이란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입국허가(DFA Entry Exemption)를 뜻하며, 1개의 입국허가로 1회 입국만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90일 유효(추가 입출국시 별도 입국허가 필요)<br>-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부모, 자녀는 특별입국허가증 없이 유효한 단기방문비자(9a)만으로 입국 가능<br>※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 허용<br>※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한 RT-PCR음성결과서 소지 의무(12.3부터)<br>※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국가/지역(Red List)*에서 출발하거나 필리핀 입국 전 14일 이내 해당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은 21.12.31.까지 입국금지<br>* 남아공, 안도라, 프랑스, 모나코, 북마리아나제도, 레위니옹, 산마리노, 스위스<br>▸저위험국가/지역(Green)*(한국 불포함)에서 온 외국인 중 완전하게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접종에 대해 필리핀 당국에 인정받은 사람은 10일 격리(입국 후 3일째 되는날 RT-PCR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시설격리, 나머지 기간은 자가격리)<br>*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차드, 중국,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포클랜드, 감비아, 가나, 기니,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케냐, 코소보,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 라이베리아, 몬세라트, 모로코, 오만, 파키스탄, 파라과이, 르완다, 사바, 생바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르텔레미, 생피에르앤드미클롱, 세네갈, 시에라리온, 신트외스타티우스, 수단, 대만, 동티모르, 토고, 우간다, UAE<br>※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국자(백신을 안 맞거나 부분적으로 맞거나 필리핀 정부로터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14일 격리(입국 후 7일째 되는 날 RT-PCR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올때까지 시설격리, 나머지 기간은 자가격리)<br>※ 완전히 접종했다는 의미는 1회 접종만 필요한 백신은 해당백신 접종일로부터,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두 번째 접종일로부터 2주가 경과된 경우<br>※ 백신 인정은 아래 3종류 증명서로 실시<br>- WHO 발행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br>- VaxCertPH 등 필리핀 내 접종확인서<br>- 상호인정하 외국의 전자 백신접종증명서(한국 내 백신접종은 아직 미인정)<br>※ 동반중인 미성년자가 보호자와 백신접종 상태가 다를 경우 보호자 기준으로 격리 및 PCR 검사 실시<br>※ 3살 이하 아동은 RT-PCR 검사 면제<br>▸중위험국가/지역(Yellow)*에서 온 외국인 중 완전하게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접종에 대해 필리핀 당국에 인정받은 사람은 14일 격리(입국 후 5일째 되는 날 RT-PCR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시설격리, 나머지 기간은 자가격리)<br>* 고위험 및 저위험 국가/지역에 속하지 않은 모든 국가 및 지역(**한국 포함**)<br>※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국자(백신을 안 맞거나 부분적으로 맞거나 필리핀 정부로터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14일 격리(입국 후 7일째 되는 날 RT-PCR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시설격리, 나머지 기간은 자가격리)<br>※ 한국 내 백신접종 인정 관련 협의 중 |
| | 홍콩 | ▸홍콩 비자 무소지자(홍콩 비거주자) 입국금지 원칙이되, 홍콩 입국 전 14일간 체류국가(A, B, C그룹)에 따라 차등적 방역조치 적용 (입국 전 체류지역별로 적용되는 상세한 방역조치는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코로나19 공지' 참고)<br>※ 모든 홍콩 방문객은 △홍콩행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21.12.24.부터 48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의무격리를 위한 홍콩정부 지정호텔 예약증 필수 소지<br>- 21.12.8.부터 경유/환승을 위해 홍콩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홍콩행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br><br>○A그룹(high risk) :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프랑스, 그리스, 이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스위스, 탄자니아,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스페인, 브라질,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웨덴, **대한민국**, 핀란드, 가나,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루마니아, 몰디브, 세네갈, 튀니지, 피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우간다, 쿠바,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키프로스, 요르단, 레바논, 모리셔스, 시에라리온, 콩고, 지브롤터, 헝가리, 오만, 슬로바키아, 알제리, 에콰도르,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케냐, 리투아니아, 르완다, 몬테네그로, 폴란드, 이집트, 모로코, 뉴질랜드, 카타르,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페루<br>※ 입국 대상 : 백신접종을 완료한 홍콩거주자 (홍콩비거주자는 백신접종 여부 관계없이 입국 불가)<br>※ 탑승 조건 : △백신접종증명서(영문/중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21박 지정호텔 예약증 소지<br>*홍콩정부가 인정하는 국가(한국 포함)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만 인정<br>※ 격리 조건 : △21일 지정호텔 격리, △격리 중 6차례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7일 능동감시, △도착 후 26일째 코로나19 재검사<br><br>**○A그룹(high risk) 중 미국, 영국, 앙골라,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잠비아, 짐바브웨**<br>※ 입국 대상 : 백신접종을 완료한 홍콩거주자 (홍콩비거주자는 백신접종 여부 관계없이 입국 불가)<br>※ 탑승 조건 : △백신접종증명서(영문/중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17박 지정호텔 예약증 소지(홍콩도착 8일째부터 예약된)<br>*홍콩정부가 인정하는 국가(한국 포함)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만 인정<br>※ 격리 조건 : △4일 정부격리센터 격리 후 17일 지정호텔 격리, △격리 중 첫 7일간 매일 코로나19 검사 이후 6차례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7일 능동감시, △도착 후 26일째 코로나19 재검사<br><br>○B그룹(medium risk) : 중국/마카오를 제외한 여타국가들 중 A그룹과 C그룹에 속하지 않는 모든 국가<br>※ 입국 대상 : 홍콩거주자 또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홍콩비거주자<br>* 백신 권장횟수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더나, ZF2001, 칸시노,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V, 코비쉴드, SARS-COV-2 인정(교차접종 인정)<br>※ 탑승 조건 : △백신접종증명서(영문/중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21박(백신 미접종)/ 14박(백신 접종완료) 지정호텔 예약증 소지<br>※ 격리 조건 : △21박/14박 지정호텔 격리, △격리 중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7일 능동감시, △도착 후 지정일에 코로나19 재검사<br><br>ㅇC그룹(low risk) : 해당 없음<br>※ 입국 대상 : 모든 사람<br>※ 탑승 조건 : △백신접종증명서(영문/중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14박(백신 미접종)/ 7박(백신 접종완료) 지정호텔 예약증 소지<br>※ 격리 조건 : △14박/7박 지정호텔 격리, △격리 중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7일 능동감시, △도착 후 지정일에 코로나19 재검사 |
| 유럽 | 투르크메니스탄 | ▸긴급한 필요가 아닌 경우 2021년 9월~12월간 일반 방문객의 입국 제한<br>※ 예외적 입국 허용 시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와 함께 백신접종증명서 제출(백신접종증명서는 IgM, IgG항체증명서로 대체 가능)<br>- 백신접종증명서는 1차 접종 후 42일이 경과해야 유효<br>- 건강문제로 백신접종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의료소견서 제출 필수<br>※ 일반 외국인 방문객은 백신접종과 무관하게 21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br>- 외교관 및 국제기구 근무자, 그의 동반 가족은 14일간 자택격리 원칙이나, 백신접종했을 경우 7일 격리 |
| 중동 | 모로코 | ▸21.11.30.-22.1.31. 기간 국경 전면 봉쇄(모든 출입국 중단)<br>※ 모로코인, 외국인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며, 보건부로부터 승인 받은 긴급 의약품 이송만 허용 |
| | 이스라엘 | ▸21.11.29.~21.12.29. 기간 모든 외국인의 입국 전면 금지(국가 예외심의위원회 특별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br>※ 이스라엘 국민의 경우, △백신 완전 접종자는 최소 3일 자가격리 및 3일째 PCR 검사 음성 확인시 격리 해제 △백신 미접종자는 최소 7일 자가격리 및 7일째 PCR 검사 음성 확인시 격리 해제 △Red 국가* 방문자는 백신 접종 여부 무관하게 입국장 PCR 검사 음성 확인 시까지 코로나 호텔 격리 및 음성 확인 후 7일간 자가격리<br>* Red 국가(한국 불포함): △남아공 등 49개 아프리카 국가 외 영국, 덴마크, UAE,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등(신규 확진자의 10%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인 국가 혹은 상기 국가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우로 지속적으로 추가 중)<br>----------<br>▸21.11.1.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또는 완치된 외국인 입국 허용<br>※ 백신 미접종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이 불가하며, 공무, 1촌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입국 허용<br>- 입국 시에도 14일의 자가격리 의무 부여(단축 시 7일)<br>▸입국 대상 : 입국 전 14일 이내 Red국가에 미체류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또는 완치자<br>※ (WHO 승인 백신* 접종자) 2차(얀센은 1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br>* 모더나, 화이자, 얀센,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br>※ (스푸트니크V 백신 접종자)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br>- 입국장에서 혈청검사 시행을 전제로 12.1부터 입국 허용 예정(혈청검사 양성판정 전까지 격리 의무)<br>※ (완치자) 분자검사(PCR, NAAT 등) 결과 양성판정 이후 최소 11일이 경과하였음을 입증하는 디지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서 WHO 승인 백신 최소 1회 접종<br>-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디지털증명서가 없는 한국의 경우, 동 규정상의 완치자로 인정 불가<br>▸입국 절차<br>※ 탑승 전 24시간 이내 보건부에 온라인 입국신고서 제출<br>※ 도착 전 그린패스 발급<br>- (디지털증명서 보유 시(EU 등)) 입국신고서 작성 시 동 증명서 업로드<br>- (디지털증명서 미보유 시(한국 등)) 접종 백신 종류, 접종일자 기입 및 관련 문서(영문 접종증명서 등)를 업로드하면, 입국 가능 여부 확인 후 입국신고서에 기입한 이메일로 그린패스 발급<br>※ 탑승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및 벤구리온 공항 입국장에서 PCR 재검사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 입국장에서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수령 시점 혹은 입국 후 24시간 시점 중 빠른 시간까지 격리 의무 |
| | 팔레스타인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2.26.) |
| 아프리카 | 보츠와나 |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고위험국가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20.3.28) |
| | 카메룬 |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20.4.30.)<br>※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중단(기존 복수비자 소지자 입국 가능)<br>- 카메룬 도착 전 3일 이내 시행한 코로나 19 검사 음성결과 제출 필요<br>- 야운데·두알라 공항 도착 시 코로나19 검사 시행, 양성판정 시 지정 의료시설 격리 (검사비용 카메룬 정부 부담, 격리 비용 자부담) |
| | 콩고공화국 |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20.6.6.) |

## ◇ 백신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 26개 국가·지역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아시아<br>·<br>태평양 | 바누아투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0.)<br>※ 에어 바누아투 국제선 정기 운항 중단(20.7.14.)<br>※ 단, 18세 이상 외국인 중 WHO긴급승인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국승인 신청 가능(이와 별도로 사전에 유효한 사증 소지 필요)<br>* 1회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발 28일 전,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발 14일전까지 접종 완료했음을 증명<br>① 입국승인 신청은 바누아투 전자여행 시스템 (Vanuatu Electronic Traveller System)에서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 격리비용, 여권 및 사증, 백신접종증명서 등 제출: https://covid19.gov.vu/index.php/travelling-to-vanuatu<br>② 바누아투측으로부터 확인 메일을 받은 후 여타 건강정보와 출발 72시간 전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를 전자여행 시스템에 업로드 등록<br>③ 도착 후 15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자부담), 도착 1일, 5일, 11일에 코로나19 검사 실시(자부담) |
| | 싱가포르 | ▸백신미접종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 원칙적 금지 -단,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및 국민의 직계가족 또는 인도적 목적(가족 사망 등) 단기 방문객은 사전입국승인(Entry Approval) 후 입국가능(7일 격리 원칙)<br>※ 상세사항은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safetravel.ica.gov.sg) 참조<br>※ VTL 미이용 한국발 입국자는 7일간 격리 (격리 마지막 7일차 PCR 추가 검사)<br>- 자가, 직접 예약한 호텔/서비스 아파트에서 격리가능<br>- 가족 이외 다른 구성원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불가<br>※ **(출발전 Covid-19 검사)** 한국발 입국자(3세 이상)는 싱가포르로 출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전문가가 실시한 ART의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br>- (예)11.3 23:59 출국자는 11.1 검사<br>※ 모든 입국자(국민 및 영주권자 포함)는 도착 직후 공항에서 PCR 검사<br>※ **(해외입국자 검사비 등 자부담)** ①검사비, ②격리비, ③도착 후 14일 이내 확진 시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포함)<br>※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 관련 조치)** 11.28부로 지난 14일 이내 남아공, 보츠와나, 에스와니티,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가나, 말라위,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외국인의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 금지 (국적자 및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br>※ **(코로나19 보험 가입 필수)** 싱가포르 입국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보험 가입 필수(출입국 심사 시 보험 약관 등 제시)<br>- △단기 방문자는 S$30,000 이상 청구 가능한 보험, △취업비자 소지자는 S$10,000 이상 청구 가능한 보험(싱가포르 입국 후 14일 이내 확진 시 대비)<br>▸싱가포르항공사(Singapore Airline)가 싱가포르 정부에 승인 받은 항공편(루트)으로 싱가포르 창이공항 경유 가능 (한국발 싱가포르 경유 가능)<br>※ 출발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br>▸21.11.15.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국발 싱가포르 입국자는 VTL(Vaccinated Travel Lane) 입국절차 적용<br>※ 21.12.23.-22.1.20.까지 신규 VTL 항공권 판매 동결<br>- 단, 해당 기간 항공권을 기 구매한 개인에 한해서는 기존 VTL 절차로 입국 가능<br>※ (대상)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지정 직항편으로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

| | | |
|---|---|---|
| | | * WHO 승인 백신을 필요횟수 만큼 접종 후 2주 경과 필요(교차접종 인정)<br>- 여행 전 14일간 한국 또는 싱가포르에서 지정한 VTL 국가에 체류 조건<br>-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의 입국도 허용(한-싱 사증면제협정 재개)<br>※ (출국 전)<br>- https://safetravel.ica.gov.sg 통해 VTP(Vaccinated Travel Pass)를 사전신청하고(입국 최소 7일 전 이내) 유효한 예방접종증명서 업로드<br>- https://safetravel.changiairport.com 통해 입국 직후 PCR 검사비용 사전 결제<br>-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통해 SG Arrival Card 발급(건강/숙소정보 등 입력, 입국 전 3일 이내 신청)<br>- https://tracetogether.gov.sg 통해 TraceTogether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설치<br>- 싱가포르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시 치료비용을 30,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 보장하는 여행자보험 가입<br>※ (입국심사 시) △VTP,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항공편 탑승 전 2일 내 검사한 PCR 또는 ART 음성확인서,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TraceTogether 앱 설치여부 등 제시<br>- 입국 직후 창이공항에서 PCR 검사 후 개인 교통수단 또는 택시로 지정숙소(VTP 신청 시 지정)로 이동, PCR 검사 확인 시까지(24시간 소요) 단독으로 격리<br>※ (입국 후 추가검사 요구) 모든 입국자(국민 및 영주권자 포함)는 도착 직후 공항에서 PCR 검사<br>- 12.7 이후 VTL통해 입국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도착 직후 공항에서 하는 PCR검사 이외에 추가로 3일차 및 7일차에 신속검사소에서 감독하 자체시행 신속항원검사(supervised self-administrated ART) 요구(2, 4, 5, 6일차에는 자가신속항원검사(ART) 후 온라인 제출 https://go.gov.sg/vtl-air-art) |
| | 파키스탄 | ▸ 18세 이상 백신 접종 미완료자(1차 접종자 포함) 외국인 입국 금지<br>※ 단, 기저질환 등 이유로 백신접종 불가할 경우 의사 진단서 소지 시 입국 가능<br>※ 6세 이상의 내·외국인 승객 파키스탄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RT-PCR 음성확인서 필수 제출 및 Pass Track 앱 설치 후 개인정보 입력<br>※ 6세 이상의 승객 공항 도착시 신속항원검사(RAT) 실시<br>- 입국 시 코로나 관련 증상이 발현되어 검사를 통해 확진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 시 10일 자가격리<br>▸ 파키스탄 NCOC로부터 면제 허가(exemption certificate)를 받지 않은 카테고리C 국가*발 외국인 승객은 파키스탄 입국 금지<br>* 카테고리 B, C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카테고리A에 해당하며(**한국 포함**), 국가 분류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출국 전 반드시 주재국 질병청 홈페이지(covid.gov.pk)를 참고 바람<br>※ 일반 입국자는 격리 의무 없으나, 카테고리C 국가발 승객은 3일 자가격리 필수 |
| | 파푸아뉴기니 |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2.) (관광 목적 입국 승인 불허)<br>※ 예외적으로 통제관의 사전 승인자에 한해 입국가능(20.6.17.)<br>-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 한해 승인 신청(21.9.24.)<br>*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인정(교차접종 인정 여부는 미정)<br>※ 파푸아뉴기니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은 탑승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결과(PCR) 필요/ 출발 24시간 이전 e-Health Form 제출 및 바코드 소지<br>▸ 입국 후 격리 규정(격리는 지정 시설 또는 자택에서 가능하며 비용은 자부담)<br>※ 모든 입국자는 도착 즉시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9.24)<br>- 음성 : 격리 없음<br>- 양성 : 14일 격리 (격리 방법 등은 통제관의 지시에 따름)<br>※ 입국 전 지난 14일간 고위험국가(필리핀, 인도)에 체류한 경우, 코로나19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14일간 격리 실시(호텔 또는 자택 격리)<br>- 코로나19 검사 실시(도착1일, 7일, 12일/5세이하 아동 제외)<br>- 격리기간 중 추적조사를 위한 장비 또는 앱 사용(비용 자부담 /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1일 40키나, 전자발찌 100키나) |
| | 피지 | ▸ 21.12.1.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여행협력국가(Travel Partner Country)*발 모든 입국자(여행자 포함) 입국 가능<br>* **한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카타르, 스페인, 프랑스, 싱가포르, 스위스, 일본, 태평양 도서국 등이며, 피지 여행 전 해당국가에 최소 10일 체류 필요<br>※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 필요)(18세 이상) △피지행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12세 이상), △피지 내 의무격리시설* 예약증, △공항에서 의무격리시설까지의 |

| | | |
|---|---|---|
| | | 교통편 예약증, △여행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지원 가능한 보험증서 제출<br>* 12.1 이후 예약 사이트 www.fiji.travel/covid-19/safer-than-ever<br>※ 입국 후 △휴대전화에 CareFiji 앱 설치, △3박(4일)간 지정호텔에 체류하며, 입국 48시간 내 신속진단검사를 통해 음성결과 확인 시, 피지 전 지역으로 이동 가능 |
| | 호주 | ▸ 21.12.15.부터* International Safe Travel Zone에 근거하여<br>1) 유효한 호주비자 소지(ETA 포함) 2) 한국 국적자 3) 한국 출발 직항편 이용하여(경유편 불가) 입국 4) 호주정부가 승인(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5)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6) 늦어도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고를 조건으로 호주 입국 허용 (기존에 요구되던 Travel Exemption 신청 불요)<br>※ 단, 연방정부의 입국허가와는 별도로, 입국하는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각 주정부의 방역지침은 백신접종률, 확진자 발생추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입국 또는 이동을 원하는 주 정부의 방역지침 수시 확인 필요<br>- 현재 NSW, VIC주 등에서는 한시적으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72시간 격리 및 도착시 24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의무 유지 중<br>▸ 21.12.15.부터 New arrangement for Eligible visa holders에 근거하여 28개 특정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국적과 출발지(남아프리카 특정국가 제외**)에 상관 없이 1) 호주정부가 승인(인정)하는 백신에 대한 접종증명 제시 2)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3) 늦어도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신고를 조건으로 호주 입국(경유편 포함) 허용 (기존에 요구되던 Travel Exemption 신청 불요)<br>* 비자 종류는 호주 내무부 홈페이지 내 New Arrangements for eligible visa holders 게시물을 통해 확인 가능<br>· http://covid19.homeaffairs.gov.au/vaccinate-travellers<br>** 출발 14일 이내에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한 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나와, 레소토, 에스와티나, 세이셸, 말라위, 모잠비크 등 9개국에서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 금지<br>※ 단, 연방정부의 입국허가와는 별도로, 입국하는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각 주정부의 방역지침은 백신접종률, 확진자 발생추이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입국 또는 이동을 원하는 주 정부의 방역지침 수시 확인 필요 |
| 미주 | 가이아나 | ▸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만이 입국 가능하며, 도착 시 백신접종 증명서 및 도착 전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제출<br>*백신(종류 무관)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종한 자(교차접종 인정)<br>※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예외) 18세 미만 또는 의료적 이유로 백신접종을 할 수 없는 자(의사 소견서 제출 필수)<br>▸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항공사 카운터 및 도착 시 보건당국에 제출(2세 이상)<br>※ 코로나19 PCR 검진일이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3일)을 초과하거나 여행 전 7일 이내인 자는 도착 시 추가 코로나19 PCR 검진 시행 필요 (코로나19 PCR 검진일이 비행기 탑승 전 7일을 초과한 자는 탑승 불가)<br>※ 코로나19 PCR 검진일이 여행 전 72시간 이내(3일 이내)인 자는 도착 시 추가 검진은 요구되지 않지만, 보건당국이 이상 징후를 근거로 필요하다고 판단 시 검진 및 자가격리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
| | 그레나다 |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br>※ 단, 입국 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가능<br>*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br>- 입국 전 △격리를 위한 정부지정 호텔 최소 2박 예약하고, △온라인으로 안전여행증명서(Pure Safe Travel Authorization) 신청<br>-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호텔예약확인서를 제출하고,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 후 음성결과 확인 시(48시간 이하 소요) 격리 해제<br>※ 백신미접종 내국인 및 영주권자의 경우<br>- 입국 전 △격리를 위한 정부지정 호텔 최소 7박 예약, △온라인 안전여행증명서 신청<br>-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호텔예약확인서 제출<br>- 격리 5일째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결과 확인 시 입국 7일째까지 격리 후 7일간 추 |

| | | |
|---|---|---|
| | | 가 모니터링 실시<br>※ 21.11.26.부터 14일 이내 남아프리카 10개국(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레소토, 에스와티니, 앙골라,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방문 여행객 입국금지 |
| | 미국 | ▸ **(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1.8.부터 모든 외국인**(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입국제한 실시<br>※ 21.11.29.부터 남아프리카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을 지난 14일 이내 방문한 모든 외국인들의 이민 및 비이민 목적 입국 금지(12.31부터 동 입국금지 조치 해제 예정)<br>- 예외 적용 가능 대상 : △미 영주권자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외국인 부모, 법적 보호자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 21세 미만의 미혼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인 외국인 형제자매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외국인 자녀, 위탁 자녀 및 피보호자 혹은 IR-4 또는 IH-4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예비 입양자녀 △바이러스 격리 및 완화와 관련된 목적으로 미 정부의 초청에 응해 입국하는 외국인사 △C-1,D 또는 C-1△D 비이민 비자를 보유한 승무원 또는 항공·해상 승무원 △A-1, A-2, C-2, C-3(외국정부 공무원 및 직계가족), E-1(TECRO 또는 TECO 직원 및 직계가족), G-1, G-2, G-3, G-4, NATO-1 ~ NATO-4 또는 NATO-6(또는 여사한 NATO 항목과 관련된 비이민 비자) 비자를 보유하거나 유엔 본부 협정 제11조의 범위에 해당되는 여행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사 △미군 및 배우자, 자녀 △법무장관 또는 그의 지명자의 추천에 의거해 국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또는 그들의 지명자가 해당 외국인사의 입국이 중요한 미 법 집행 목표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 △국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또는 그들의 지명자가 해당 외국인사의 입국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br>※ 비시민권자(이민자 제외)는 한국 포함 전 국가에서 미국 향발 시 기존에 요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이외 백신접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br>- 두 가지 증명서를 해당 항공사에 제출해야 항공기 탑승 가능<br>※ (백신접종완료 기준) 미 FDA 또는 WHO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로, 한국의 교차접종자도 백신접종 완료자로 인정<br>※ 백신접종 증명은 디지털방식(예: 한국의 COOV앱)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br>- 백신접종증명서에는 개인식별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가 있어야 하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음 (예: QR 코드가 있는 백신접종증명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디지털 패스, 국가/지방정부/공인 백신 제공자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출력물, 백신접종카드 또는 기록의 디지털 사진, 공식 백신 제공자에게서 다운로드한 백신접종기록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등)<br>※ A비자 소지자 등 아래 표기된 예외 적용 가능 대상 이외에 예외 인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백신접종률이 10% 미만인 국가로부터의 방문객 등에 대해 제한적 적용<br>-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입국 가능한 백신접종 미완료자)** : △외국 공무원 및 직계가족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등), △TECRO 또는 TECO의 직원 또는 직계가족(E-1), △G-1, G-2, G-3, G-4, NATO-1~4 및 6 등, △여행이 유엔본부 협정 제11조의 범위에 속하거나 미국의 법적의무에 따라 여행하는 경우, △해당 연령 그룹의 개인에 대한 전 세계 백신 가용성을 고려하여 CDC 국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백신접종이 필요한 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특정 임상시험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자, △인도주의적 또는 긴급 상황을 위해 CDC 국장이 예외를 승인한 자 , △미군의 일원인 외국인, 미군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자녀, △C-1 및 D 등 선원으로 입국하려는 자, △미 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에 의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등<br>- 입국 제한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자(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포함) 중, 2세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는 항공기 탑승 전 하루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음성확인서 제출<br>- 의료적 이유(특정 약물 및 치료에 대한 사용 금지 이유)로 인해 백신접종이 불가한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서약서 작성 필요(서약 내용에 도착 후 3-5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와 음성이라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한다는 내용 포함)<br>※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7일 자가격리를 **권고**<br>-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7일간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10일간 집에 머무르며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지침 준수할 것<br>- 백신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권고 조치 이행 불필요<br>▸ (21.12.6.~) **출발 전 1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탑승 전 항공사에 제출(**출발 전 1일 이내** 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 실시) |

| | | |
|---|---|---|
| | |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br>※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br>- 경유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1일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br>- 탑승 전 이륙시간이 연기되어 탑승 전 '1일 내'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br>▸ 21.11.8.부터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캐나다, 멕시코 국경지역 육로 입국 제한 해제<br>※ 18세 미만 어린이 예외 인정<br>※ 백신접종완료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 | | ▸ 현재 **미국 본토 내** 대다수 州는 CDC 공통 방역지침 외 **의무조치**를 별도 부과하지 않으나,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권고사항**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해당지역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필요<br>▸ **(워싱턴 DC)**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코로나19 회복 진단서를 탑승 전 해당 항공사에 제출<br>※ 백신 접종자 : 백신 접종자 및 코로나19 회복자(지난 90일 이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없는 자)는 도착 후 자가격리는 면제되나, 3-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 권고<br>- (FDA/WHO 승인 백신 중)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두 번째 접종 후, 1회 접종 백신의 경우 단일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만 완전한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br>※ 백신 미접종자 : 도착 후 3~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하고 음성이라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할 것을 권고<br>※ 도착 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10일 동안 자가격리 권고<br>※ 기타 참고사항 : △접종 카드 등 확인 서류 지참, △워싱턴DC 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최소 10일 자가격리 실시<br>▸ **(하와이州)** 21.11.8.부터 미국 연방 정부 규정에 따라 해외발 미국행 비행기 탑승 시 요구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가능<br>※ 단,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주 방문 시(해외에서 미국 본토 경유하여 도착시에도 적용)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 시행<br>- △미국 내에서 접종완료한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하와이 지정검사기관* 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하와이 출발 전 하와이안전여행 홈페이지(travel.hawaii.gov)에 등록해야 하와이주 도착 후 부과되는 10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면제 가능<br>* 하와이 관광청 홈페이지(hawaiitourismauthority.org)에서 확인 가능<br>※ 신 조치 적용 전까지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 시행<br>- 출발 기준 72시간 전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 가능 (미국행 항공기 탑승 시의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와는 별개로,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br>▸ **(괌)** 모든 입국자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 원칙(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없이 격리 비용 무료), 격리 대상자는 5-6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7일차에 격리 해제 가능 ⇒ 단, 한국 국적자는 입국시 아래 요건의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격리 면제 가능(만 2세 이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백신미접종 예외를 인정하나 음성확인서는 지참 필요, 만 2세 미만의 경우 백신접종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모두 예외 인정)<br>※ 美 CDC 발표에 따라, 괌 및 사이판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모든 탑승객(만 2세 이상)에 대해 백신접종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br>**※ 백신 접종 완료자**<br>-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접종 완료 후 2주 이상 지난 접종자의 경우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 통해 **격리 면제 가능** (교차접종 인정)<br>-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해 입국자는 입국 시 △접종자 성명 및 생년월일, 백신명, 접종일 등이 표시된 접종 기록서, △기타 접종 확인 증빙서류(보건당국 접종기록서, 백신제공자가 발급한 접종확인 서한, 괌 정부 제공 격리 면제 요청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신고서 등) 해당 서류 모두 제출 필요<br>**※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 |

| | | |
|---|---|---|
| | | -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고, 3개월 이내에 완치한 사람이 괌에 입국 시, 감염 증상이 없을 경우 **격리 면제 가능**<br>- 감염 이력 확인을 위해 입국자는 입국 시 △괌 도착 전 10일-90일 내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양성 확인서, △괌 도착 10일 내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및 의사, 병원, 혹은 보건부로부터 발급받은 완치 확인서 해당 서류 모두 제출 필요<br>**※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또는 항원)* 소지자**<br>- 입국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항원 검사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시하면 **격리 면제 가능**<br>* 검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검체 수집일, 검사명 표시 필수<br>▸**(미국령 사모아)**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20.3.24.)<br>▸**(사이판)**<br>※ 美 CDC 발표에 따라, 괌 및 사이판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모든 탑승객(만 2세 이상)에 대해 백신접종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br>* 항공기 탑승 기준 1일 이내 실시(예: 10일 10:00 항공기 탑승 시 9일 0시 이후 진단검사 실시)<br>※ 최소 입국 전 3일 이내 www.staysafecnmi.com(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br>※ **(백신접종 완료자*)** 입국 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 시 격리 해제(진단검사 결과 판정 시까지 자가격리 실시)<br>* FDA 및 WHO 승인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자는 백신접종증명서(접종기관명, 접종자 성명 및 생년월일, 접종 장소, 백신명, 접종일, LOT 넘버, 백신 유효기간 포함 필수) 제출 필요<br>※ **(백신 미접종자)** 7일간 정부 지정 시설 격리 (7일 격리 후 PCR 진단검사 실시)<br>※ **(확진자 밀접 접촉자)**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는 당일 및 5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br>- 백신접종자의 경우 음성판정 시 격리 불요하나, 미접종자의 경우 5일 자가격리<br>▸**(푸에르토리코)** 모든 내외국민 대상 도착 시 여행신고서와 항공기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 공항 출구 확인 번호와 QR코드 제출 의무(푸에르토리코 보건부의 포털사이트에 결과서 업로드 시 확인 가능)<br>※ San Juan 국제공항 입출국 시 공항 내 PCR 검사 가능($110 자부담, 6-12 a.m. 이용 가능),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내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하여 PCR분자검사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14일 의무격리<br>▸**(버진아일랜드)** 입국 전 버진아일랜드 여행 심사 포털(Travel Screening Portal)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사전 제출 의무(미 제출시 비행기 탑승 거부) |
| | 브라질 | ▸20.7.29.부터 외국인의 항공을 통한 입국 허용 ⇒ 입국 시 여행자 건강확인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필요(상세내용 하단 참조)<br>※ 21.11.27.부터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에서 출발하거나 14일 이내 방문,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br>-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은(브라질 이민자 및 국제기구 근무자,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은 외국공무원 등) 입국 후 최종 목적도시에서 14일간 격리 실시<br>※ 항공기 탑승 전 24시간 내 여행자 건강확인서(DSV : 체재기간 동안 브라질 내 위생조치를 준수하겠다는 동의)를 작성하고, 그 증명을 인쇄본 또는 전자문서로 항공사에 제시<br>※ 항공기 탑승 전 RT-PCR 검사 음성확인서(탑승 전 72시간 내 실시) 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탑승 전 24시간 내 실시) 중 하나를 항공사에 제시<br>- 검사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br>- 2세 미만 또는 동반자가 있는 12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br>- 단, 최근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무증상 상태이나 RT-PCR 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양성이 나타나는 경우 다음 서류 제시 가능 △최소 14일 간격으로 실시한 RT-PCR 양성 확인서(두번째 검사는 탑승72시간 전 실시), △두 번째 RT-PCR 검사 후 실시한 항원검사 음성확인서(negative / not detectable), △무증상에 여행이 가능하다는 여행 일자가 포함된 의사소견서(의사 면허자의 서명 필요)<br>※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쇄본 또는 전자문서로 항공사에 제시 |

| | | |
|---|---|---|
| | | - 브라질 위생감시청(ANVISA), 세계보건기구 또는 접종국가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 필요<br>- 접종증명서에는 접종완료자 이름, 백신명 또는 제조사, 로트번호, 접종일자 포함<br>- 제출면제대상*은 DSV에 적시한 주소에서 14일간 격리하되, 격리 5일째 RT-PCR 또는 항원검사에서 음성 및 무증상인 경우 격리 해제 가능<br>* △건강상 예방접종 금기자(의사소견서 필요)<br>△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아동(보호자동반)<br>△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출발한 자(보건부가 리스트 발표 예정)<br>△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브라질인 및 브라질 거주 외국인<br>△인도주의적 사유 관련 예외 가능<br>- 21.12.14. 이전 브라질을 출국한 브라질인 및 브라질 거주 외국인은 귀국 시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및 격리의무 면제<br>▸21.12.9.부터 외국인의 육상을 통한 입국허용<br>※ 교통수단 탑승 시 운송기관에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제시<br>- 제출면제대상*은 별도 격리 동의 없이 입국 가능<br>* △건강상 예방접종 금기자(의사소견서 필요)<br>△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아동(보호자동반)<br>△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출발한 자(보건부가 리스트 발표 예정)<br>△상호 대우가 보장되는 쌍둥이도시 국경거주자 등<br>△화물운송 근로자<br>△인도주의적 사유 관련 예외 가능<br>▸해상(수상)을 통한 입국제한<br>※ 21.11.1.부터 브라질 관할수역 내 수상(크루즈선) 운송 허용<br>- 다만, 국가 간 이동은 금지되며, 승객은 백신접종증명서, RT-PCR(72시간 내) 또는 항원(24시간 내)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br>※ 의료지원 / 본국으로 귀국항공 연결을 위해 연방경찰의 승인을 받은 선원의 하선 가능<br>▸상기 입국 시 제출하는 서류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본 중 제시 |
| | 수리남 | ▸(백신 미접종 또는 불완전접종자) 내국인(거주자)은 수리남 외교부(conza@gov.sr)에 입국허가를 신청<br>※ 48시간 이전에 발급한 RT-PCR(유전자 검사) 음성결과서 소지 필수, 도착 3일후 antigen 검사 필수, 입국 후 7일간 숙소(호텔) 격리 의무, 수리남 신분증(영주권) 필수<br>▸(백신접종완료자*) 아래 조건하 입국허가 없이 입국 가능하며, 자가격리 권고<br>* WHO 긴급승인 백신(교차접종 불인정) 접종자, 백신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18세 미만은 백신접종 예외, 12세 미만은 PCR 또는 antigen 검사 예외, 기타백신(쿠바 soberana 1/2/plus, 쿠바 Abdala, 러시아 스푸트니크 V) 접종자는 48시간 전 PCR 음성결과서와 도착 3일후 antigen 테스트 필수<br>※ **코로나 고위험국발 입국자**는 아래 조건으로 입국허가 없이 입국 가능(7일간 자가격리 권고)<br>- 백신접종증명서, 출발 48시간 이전에 발급한 PCR 음성 결과서, 합법적 여행서류 필수 소지<br>- 수리남 도착 3일후에 수리남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antigen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이민국에 제출(미 제출시는 출발전에 100유로 또는 110미불을 벌금으로 부과)<br>*The Burequ of Public Health Surinam, MeDiLab, Mylab, The Academic Hospital, Health Control<br>※ **코로나 저(중)위험국발 입국자**는 아래 조건으로 입국허가 없이 입국 가능(7일간 자가격리 권고)<br>- 백신접종증명서, 출발 72시간 이전에 발급한 PCR 또는 antigen 음성 결과서, 합법적 여행서류 필수 소지<br>▸허용 항공편<br>- 네덜란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가이아나, 프랑스령 가이아나, 브라질, 파나마,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 모든 항공편 허용<br>-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 입출국 화물기 및 출국 여객기 허용, 입국 여객기 불허<br>- 아이티 : 입출국 여객기 불허<br>- 국내선 : 일반 여객기 불허, 화물기 허용, 긴급목적 허용 |
| | 우루과이 | ▸21.11.1.부로 아래 3가지 조건 충족 백신접종 완료 외국인의 입국 허용 및 격리 면제 |

| | | |
|---|---|---|
| | | 1) '백신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 증빙서류 제시 (18세 미만은 면제)<br>※ (백신접종 완료자) 출발 전 9개월 내에 자국에서 승인된 백신의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효과적 면역형성에 필요한 기간(14일)이 경과된 자로서, 자국 보건당국이 발행한 백신 접종증명서 및 상기 대기기간 경과를 증명하는 서류 제시 필요<br>-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영문) 제시 및 접종 후 14일 경과 필요<br>※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자) 출발 전 20일~90일 내 실시한 PCR 검사 또는 항원진단 검사 양성확인서 제시 필요<br>2) RT-PCR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6세 미만은 면제)<br>※ (사전 PCR) 입국 시 출발 전 72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제시<br>※ (입국 후 PCR) 사전 PCR 검사일 기준 7일째 되는 날 추가 RT-PCR 검사 실시(검사비용 개인 부담)<br>3) 여행자 건강확인서(Declaracion Jurada) 온라인 제출 (출발 전 48시간 내)<br>※ 제출 웹사이트 주소 : https://bpmgob.msp.gub.uy/etapas/ejecutar/5714029<br>-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 여행정보, 건강보험(여행자보험 등)* 정보 등 입력<br>* 우루과이 입국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치료 대비용으로 우루과이 내 통용되는 건강보험(여행자보험 등) 가입 필요<br>▸백신접종 미완료 외국인의 경우, 아래 대상에 해당되어 별도 예외적 입국 허가를 받을 경우 입국 가능<br>※ 예외적 입국이 가능한 경우 :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 △외교관, △우루과이 보건당국이 허가한 크루즈선, 선박, 항공기의 승객, △난민, △가족 간 재회의 사유, △연기할 수 없는 업무상, 경제적, 법무상의 사유로 소관 부처를 통해 이민청의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br>※ 예외적 입국이 가능한 경우에도, 아래 조건 충족 필요<br>ㅇ 입국 시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RT-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br>ㅇ 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다음 양자 중 택일 가능)<br>- (7일 격리+PCR검사) 7일 격리 후, 입국 7일째 되는 날 RT-PCR검사 실시(검사비용 개인 부담) 후 음성 판명 시 해제<br>- (14일 격리) 14일 격리기간 준수 후 해제 |
| | **칠레** | ▸21.4.1.부터 국경폐쇄에 따른 비거주 외국인 입국금지, 예외적 입국 가능한 경우 제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음<br>※ 탑승 전(칠레 입국 직전 탑승 항공편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만 인정) 제출 의무<br>※ 필수건강상태 확인서 제출(www.c19.cl), 위치추적동의서 제출(칠레에서 준비), 여행자보험 가입(코로나19 관련 최소 3만 미불 보장, 영문/스페인어 표기)<br>※ 21.10.1.부터 WHO/FDA/EMA 승인 백신을 접종 완료한 비거주 외국인의 입국 허용(9.15 발표)<br>- mevacuno.gob.cl 접속하여 해외예방접종증명서 업로드 시 통행증(Pase de Movilidad) 발급(발급까지 약 30일 소요, 발급 후 45일 내 입국 조건)<br>※ 최근 14일 이내 남아프리카 7개국(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모잠비크, 레소토, 에스와티니)에 체류한 적 있는 칠레 비거주 외국인은 21.12.1.부터 입국금지<br>- 상기 7개국으로부터 입국한 칠레 국적자 및 거주 외국인의 경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 격리 실시<br>▸21.12.1.부터 통행증(Pase de Movilidad) 소지 여부에 따라 아래 격리제도 시행<br>※ 통행증 소지자 : 공항에서 PCR 검사 후 음성결과 확인 시까지 본인이 예약한 호텔(또는 자택)에서 격리(10시간~24시간 소요)<br>- 단, 최근 6개월 이내 부스터샷 접종 시 모든 검역(공항 내 PCR 검사, 자가격리 등) 의무 면제<br>※ 통행증 미소지자 : 본인이 예약한 호텔(또는 자택)에서 5일간(120시간) 격리 (거주, 비거주 외국인 구분 없음)<br>※ 최종 목적지가 산티아고가 아닌 지방인 경우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 후 격리 |
| | **캐나다** | ▸백신접종완료자 제외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금지<br>※ 21.9.7.부터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비필수적 목적(관광, 친지 방문 등) 입국 허용<br>※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캐나다 입국 전 14일 내 캐나다/미국 외 지역에서 체류한 모든 해외입국자(캐나다 국적자 포함)에 대해 입국 즉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

| | | |
|---|---|---|
| | | - 백신 접종자: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시까지 자가격리<br>- 백신 미접종자: 14일간 자가격리 및 입국 8일차 2차 코로나19 검사 실시<br>※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 시 탑승 불가<br>▸[ **백신 미접종자** ]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금지<br>※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육로 입국시 입국 72시간 이내 시행)<br>- 자가격리(14일) 의무,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br>- 입국 직후 PCR 검사, 8일차 추가 검사 의무<br>※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br>-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br>※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br>-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 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br>※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br>-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br>※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br>-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필요(14일 이내 단기 방문은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br>※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br>※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br>▸[ **백신 접종 완료자** ]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허용(21.9.7.-)<br>※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육로 입국시 입국 72시간 이내 시행)<br>- 입국 직후 PCR 검사, 음성판정시까지 자가격리<br>※ 백신 접종 완료 기준: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백신(AZ, 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접종(교차접종 인정)<br>- 캐나다 입국 전 72시간 내 ArriveCAN에 백신접종증명서(영어, 불어), 항공일정 등 필수 정보 제출(jpg, png, pdf 파일 형태로 제출)<br>-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 전 ArriveCAN에 정보 입력을 완료하고, 항공편 탑승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항공편 탑승 가능<br>- 입국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여행관련 서류(비자, eTA 등) 필수 지참해야 하며,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입국시 최종 결정 |
| | **콜롬비아** | ▸20.9.21.부터 국제선 여객기 운항 재개 및 외국인 입국 가능<br>※ 입국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콜롬비아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출국 시에도 작성 필요)<br>※ 아프리카 대륙 방문 후 콜롬비아 입국 15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자가격리 필요<br>▸21.12.14.부터 18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입국 14일 이상 전에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백신접종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입국 항공기 탑승 가능<br>※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백신접종 증명서가 없는 경우<br>- 콜롬비아 국적자, 장기체류 외국인 및 외교관 등은 콜롬비아 입국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진단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br>- 단기체류 외국인은 최소 1차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접종 증명서와 콜롬비아 입국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진단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20.3.23.)<br>※ 단, 21.7.17.부터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증명서* 지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가능<br>*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br>※ 여행승인증명서(TTravel Pass) 온라인신청(https://ttravelpass.gov.tt/) 후 입국시 지참 |

| | | |
|---|---|---|
| | | ※ 21.11.27.부터 14일 이내 남아프리카 8개국(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레소토, 에스와티니, 말라위)을 방문한 외국인(내국인 및 영주권자 제외)에 대해 입국금지<br>- 내국인 및 영주권자의 경우 14일간 시설격리(자부담) |
| 유럽 | 아제르바이잔 | ▸ 22.3.1.까지 국경봉쇄 조치가 연장되었으나, 외국인의 경우 △백신예방접종증명서(영문)(18세 이상),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진단서, △내각의 특별승인(Permission from the Operational Headquarters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 확인 시 입국 가능<br>※ 21.10.15.부터 한국발 입국자는 내각의 특별승인 없이 항공 입국 가능하며, 바쿠 공항에서 e-Visa 발급 신청 가능<br>※ △근로허가(work permit),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보유자, △가족 구성원 및 친인척 중 아제르바이잔 국적자가 있는 경우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불요 |
| | 오스트리아 | **(1) 입국 제한 조치** (21.12.20.부터 유효)<br>**가. 출발국가(한국포함)를 불문 모든 입국자에게 아래 규정 적용**<br>ㅇ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회복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서 제시할 경우 입국 가능**<br>- 인정 백신 종류 : 바이오엔텍/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얀센), 모더나, 시노팜, 시노백<br>- 2차 접종해야할 백신: 2차 접종 후 270일간 유효(1-2차 접종 간 14일 간격 필수)<br>- 1회 접종이 가능한 백신(예: 얀센): 접종 후 21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270일간 유효<br>- 예외 입국 허용 : 오스트리아 국적자 및 거주허가 소지자, EU/EEA 국적자 또는 거주허가 소지자. 단, 입국 후 온라인 사전등록제 및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부과<br>ㅇ **PCR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부과** (검체체취 시간으로부터 72시간 유효)<br>- PCR 음성확인서 제시가 불가능할 경우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부과<br>- 입국자 온라인 사전등록시 입력한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실시<br>- 오스트리아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이행 유무 무작위 확인 예정<br>- 자가격리 5일째 되는 날부터 PCR 검사 실시 가능 및 음성확인시 격리 해제<br>ㅇ **PCR 음성확인서 추가 제시 예외 대상**<br>- 부스터 접종을 한 경우<br>- 건강상 이유로 백신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의사 소견서 제시 필요)<br>- 일상 통근자<br>- 미성년자의 경우 오스트리아 학생 접종증명 (Ninja-Pass) 또는 이와 동급의 증명서 소지한 경우<br>- 만 12세 아동의 경우 보호자 거주지에 거주신고 또는 자가격리 실시<br>**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로부터 출발하거나 입국일로부터 지난 10일간 해당 국가에 체류한 경우** ⇒ 원칙적 입국 금지<br>ㅇ 해당 국가(12.25 기준) :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모잠비크, 남미비아, 짐바브웨, 남아공, 앙골라, 말라위, 잠비아,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br>ㅇ 예외 대상: 오스트리아 국적자, EU/EEA 국적자, 스위스/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바티칸 국적자 및 가족구성원, 오스트리아 정부 발급 D비자 이상 체류 허가증 소지자, 영주 및 체류허가법(BGBl. I. 100/2002)에 따른 오스트리아 체류가 가능한 자, 오스트리아에 근무하는 또는 근무 예정인 외교 공관원, 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구성원, 인도적 지원사업 관련 종사자<br>- 공무 출장 목적, 외교관 신분증 소지자, 의료 목적 입국자: 격리 의무 미부과<br>ㅇ **단, 예외 대상은 아래 조건하 입국 가능**<br>- 부스터 접종증명서 제시<br>- 입국기준 48시간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 제시<br>- 온라인 입국정보 사전등록(PTC) 실시<br>- 10일간 자가격리 실시(입국 후 5일째 되는 날부터 PCR검사 실시 가능하며, |

| | | |
|---|---|---|
| | | 음성확인시 격리해제)<br>**(2) 입국자 온라인 사전등록제(Pre-Travel-Clearance, PTC System) 실시**<br>ㅇ 시행일 : 2021.12.20.(월) 0:00부터<br>ㅇ 적용 대상 : 항공 및 육로를 이용하는 모든 입국자<br>ㅇ 등록 정보 : 인적사항, 체류예정 주소, 출입국 날짜 및 이동수단(항공편명) 등<br>ㅇ 온라인 사전등록 방법<br>- 오스트리아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PTC System 전용 홈페이지 이용<br>- 오스트리아 정부포털(www.oesterreich.gv.at)을 통해 동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br>-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특정 양식에 수기로 작성하여 체류 지역 보건소 등 관할 관청(MA15 등)에 직접 제출<br>- PTC 홈페이지 주소 및 수기작성 양식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지사항 참고<br>ㅇ 온라인등록 확인서를 출력 또는 휴대기기에 저장하여 출입국 심사시 제시<br>ㅇ 예외 대상 : 단순 경유 승객, 부스터 백신접종 완료자,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시할 경우 면제<br>- 일상통근자의 온라인 사전등록 의무화 및 주간(1주일에 한번) 코로나19 검사 실시 의무(입국시 제시)<br>**(3) 단순 경유목적 입국시**<br>ㅇ EU역내 입국시 :최종 도착국가(EU 역내 오스트리아 주변국) 정부 발행 입국허가서 등 증빙서류 지참<br>- 경유 목적 및 인적사항 등을 기입하는 '경유 확인서' 작성 및 제출<br>ㅇ EU역외 출국시 : 출국 당일 입국하여 오스트리아 내 정차없이 출국한다는 증빙서류 지참<br>**(4) 항공기 착륙금지 조치**<br>ㅇ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착륙을 금지<br>- 시행일 : 2021.11.27.(토) ~ 2022.1.9.(일)<br>- 해당국가 :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남아공, 앙골라, 말라위, 잠비아<br>- 예외 사항 : 화물, 긴급 의료지원 및 의료지원 인력의 수송 등 |
| 아프리카 | 가나 | ▸21.12.20.부터 2주간 한국, 이스라엘로부터 입국자 한시적 제한(몰타발 입국자는 별도 기한 없이 입국 제한 시행)<br>▸21.12.12.부터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가나 식약청에서 승인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국 가능<br>*AstraZeneca, Sputnik-V, Pfizer, Moderna(2회 접종) /Johnson and Johnson(1회 접종)<br>※ 단, 가나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12.12.부터 14일 이전 백신 미접종 시에도 입국은 허용하지만, 입국 후 공항에서 백신 접종 필요<br>※ 탑승 전 72시간 이내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미소지 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거부, △자국민의 경우 14일간 지정시설에서 의무 격리)<br>- 경유하여 가나로 입국하는 경우 첫 출국 국가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 발급 필요<br>※ 입국 후 신속 진단키트 검사 실시(검사비용 자부담)하여 △음성인 경우 별도의 격리 없이 입국 가능, △양성인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격리시설에서 의무 격리 7일 및 치료(최종 퇴원은 보건당국 검역지침에 따름)<br>- 출발 전 온라인(http://myfrontierhealthcare.com/Home/Ghana)으로 검사비용 사전 지불 및 탑승 전 검사비용 결제 영수증 항공사에 반드시 제출 |
| | 라이베리아 | ▸(출발 전) 도착 96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및 백신 접종증명서(18세 이상) 소지<br>※ 사전에 Lib Travel 앱*을 다운받아 건강상태확인서 입력 및 검사비용($75) 결제<br>* 안드로이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tuma.libtravel<br>* 애플 : https://apps.apple.com/us/apps/lib-travel/id1537552090<br>※ 상기 앱 미작동 시 도착 후 건강상태확인서 작성 및 검사비용 지불 가능<br>▸(도착 후) 모든 입국자 간이 테스트(RDT) 실시<br>※ 음성일 경우 공항 밖 이동 / 양성일 경우 시설격리<br>※ (7일간 시설격리 대상)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레소토발 입국자(1박당 40불 본인 부담)<br>※ 도착 다음날부터 7일 자가격리 및 14일간 상기 앱을 통한 셀프 모니터링 권고<br>※ 외교관 여권 소지자 등 도착 후 검사 면제(상기 7개국 제외) 대상자는 도착 |

| | | |
|---|---|---|
| | | 72시간 전 검사 및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 | 적도기니 | ▸국내·외 항공 및 해상노선 조건부 운항 및 입국 허용(21.11.1.)<br>※ 모든 국제선 승객은 입국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증명서(모든 종류의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지참 필수<br>- 입국자 전원 지정호텔에서 5일간 격리 (외교관 제외)<br>- 동 기간 중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5일 후 격리해제 (검사비 및 숙박비 자가 부담)<br>※ 외교단 및 국제기구 관계자(가족 포함)는 주재국 외교부에 입국 항공편 정보(도착일시 포함)를 사전 통보 한 후, 입국 후 자가 격리로 전환 |
| | 케냐 | ▸20.8.1.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br>※ 21.12.21.부터 케냐에 입국하는 18세 이상 모든 방문객 및 여행객은 반드시 예방접종 완료 후 케냐 입국 전 백신접종증명서 제출<br>※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코로나19 증상(기침,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면제<br>- 음성확인서는 케냐 도착 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 발급받은 영문확인서만 인정(한글 및 번역본 불인정, 검사 시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고 영문확인서상에 여권상 이름, 여권번호, 검사받은 날짜 및 시간 반드시 기재)<br>- 5세 미만 어린이는 케냐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br>- 케냐 입국 전 trustedtravel.panabios.org 접속하여 계정 생성 후 음성확인서 업로드(Check in→upload lab test certificate No TT 메뉴 이용), 영문+숫자로 구성된 코드(TT 코드) 생성시 함께 나오는 QR코드 저장, 공항에서 요구시 제시<br>- 입국자 중 무작위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인 경우 10일간 자부담 시설 격리(케냐 거주자는 자가격리), 격리 해제 전 PCR검사<br>※ 케냐 보건부 홈페이지(https://ears.health.go.ke/international_registration)에 접속, 인원별로 Travelers Health Surveillance Form을 작성한 후 각자 전송받은 QR코드를 케냐 공항 입국 시 제공(핸드폰 또는 출력물)<br>※ 케냐 입국 시 비자 발급은 e-visa만 가능(21.1.1.부터 도착비자 발급 불가)<br>- www.evisa.go.ke를 통해 발급 필요<br>▸오미크론 변이 관련, 영향국가 발 입국자 검역 강화<br>※ 변이 바이러스 영향국가*에서 입국하는 18세 이상 여행객은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 실시<br>* 남아공, 나미비아, 레소토,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가나, 나이지리아 |
| 중동 | 오만 | ▸21.9.1.부터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 재개하며,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관련 요건은 오만 민간 항공청(CAA) 규정 적용<br>※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레소토, 에스와티니 및 모잠비크에서 출발하거나, 오만 도착 전 14일 이내에 상기 7개 국가에 체류한 적이 있는 자는 오만 입국 금지<br>- 외교관, 오만 거주비자 소지자, 의료인 및 동반 가족 등은 상기 입국 금지 예외 대상이나, 오만 도착 시 PCR 검사를 받고 7일 간 시설 격리 조치됨(도착일로부터 6일째 PCR 재검사 포함)<br>※ 입국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QR코드 포함)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필수서류 제출 시 격리는 면제)<br>- 오만 입국일 기준 14일 이전 오만 보건당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또는 1회 접종 대상 백신 접종 완료<br>*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스푸트니크, 시노백, 시노팜, 코비쉴드 8종<br>※ 도착 전 72시간 혹은 96시간 이내에 실시한 QR코드가 포함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br>※ 모든 입국자는 Tarassud+ 앱에서 △사전 등록(pre-registration),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등록, △PCR 검사결과 등록 필요<br>- 18세 이하 입국자 및 병원진단서(의사소견서) 등에 따라 질병 및 여타 건강상의 사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불가한 경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등록, △PCR 검사결과 제출 규정 적용 예외<br>▸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미소지 입국자는 입국시 PCR 검사를 실시<br>※ PCR 검사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격리(추적 팔찌 착용)<br>※ PCR 검사 양성 판정시 검사일로부터 10일간 격리<br>- 입국시 코로나19 확진 및 치료된 상태이나,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시 코로나19 확진 국가(출발국가)에서 격리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격리조치 예외 |

| | | |
|---|---|---|
| | 이란 |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한 입국 제한조치<br>※ 22.1.2.까지 아프리카 8개국(보츠와나,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레소토, 모잠비크, 짐바브웨, 말라위, 남아공) 출발 여행객 입국 금지<br>※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출발 외국인(non-Iranian): 별도 통보시까지 이란 입국 금지<br>※ 22.1.8.까지 접경국(터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아르메니아)에서의 육로 입국 제한<br>※ 상기 입국제한 조치 적용 예외: 외교관 및 가족, 체류증 소지자, 교육/의료/무역 목적 입국, 화물 수송<br>▸상기 국가 외 여타 국가발 여행객<br>※ 21.10.27. 관광비자 발급 재개(단, 여행사를 통한 발급 권장)<br>※ 출발 전 48-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영문 음성확인서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영문 증명서 제출(13세 이상)<br>- 백신 접종 완료(fully vaccinated) 후 최소 2주 경과(백신 종류 무관)<br>※ 이란 입국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 PCR 검사 추가 실시(검사 비용 자부담)<br>※ 남아공,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레소토, 에스와티니로부터의 여행객 입국 금지(21.11.27.) |
| | 쿠웨이트 | ▸21.11.1.부터 쿠웨이트 정부가 인정한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는 모든 종류의 입국비자(상용, 관광, 근로 및 동반비자 등) 발급 재개하며, 11.24부터는 관광 및 단기 방문 목적의 e-Visa 발급 신청 가능(http://evisa.moi.gov.kw)<br>* 쿠웨이트 정부가 승인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 2회 접종, 얀센 백신 1회 접종 완료/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 백신 2회 접종 완료자는 상기 쿠웨이트 정부 승인 백신 중 1종을 추가접종 시 입국 가능<br>- 다만 22.1.2.부터는 백신접종 완료 후 9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 상기 승인된 백신을 1회 추가 접종해야 백신접종 완료자로 인정<br>※ 백신 접종 승인 절차 : 입국 전 백신접증증명서를 쿠웨이트 보건부 홈페이지(http://vaxcert.moh.gov.kw)에 업로드 후 쿠웨이트 정부가 증명서 진위여부 승인(증명서에 QR코드 포함시 진위여부 확인절차 불요) → 입국 전 'Shionik' 어플 및 'Kuwait mosafer.gov.kw' 사이트에서 입국 관련 정보(탑승자, 항공편 등) 등록 → 항공기 탑승 및 쿠웨이트 도착 시 'Immune/Kuwait mobile ID' 어플상의 전자 QR코드 제시<br>▸모든 해외입국자 공통 방역 지침<br>※ 입국 전 Kuwait-Mosafer(온라인 플랫폼) 등록(모든 항공사는 상기 플랫폼 미등록자 대상 탑승 금지 의무)<br>※ 21.12.26.부터는 탑승 시 PCR 음성확인서(쿠웨이트 도착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 증명서) 소지 필요<br>※ 입국 후 격리 안내<br>- (백신접종자) 21.12.26.부터는 도착 후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며, 격리기간 중 도착 후 3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받고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에서 해제(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br>▸외교관과 가족 및 동반 가사노동자, 정부대표단은 입국전 백신접종을 받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br>※ 입국 후 격리 안내<br>- 시설격리 없이 14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2회 실시(쿠웨이트공항 도착 즉시 1차 검사, 자가격리 6일차에 2차 검사)<br>- 외교관 및 동반가족, 정부대표단에 한해 공항에서 무상 PCR 검사 실시 및 Kuwait-Mosafer 설치 면제<br>▸21.11.28.부터 아프리카 9개국(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레소토, 에스와티니, 잠비아, 말라위)에서 출발하는 직항 여객기 입항 제한<br>※ 상기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쿠웨이트 입국 금지(상기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최소 14일 이상 체류 후 입국 가능)<br>※ 상기 국가에서 입국하는 쿠웨이트 국민은 입국 후 7일간 시설격리, 도착 후 1일째와 6일째 PCR 검사 실시 |
| | 튀니지 | ▸21.12.1.부로 튀니지 거주증이 없는 18세 이상 백신미접종자 입국금지(백신접종부 입국허용)<br>▸거주증이 있는 모든 백신미접종 해외입국자 10일간 의무 지정호텔 격리(공항 체 |

| | | |
|---|---|---|
| | | 크인 시 △지정호텔 10일 투숙 예약증, △공항-지정호텔 간 이동수단 지불영수증, △격리해제를 위한 PCR 검사 예약증 제시)<br>* 지정호텔 목록은 https://www.ontt.tn/ar/blagh에서 확인<br>※ 격리 종료 24시간 전 진행한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br>▸ 백신접종완료자*는 거주증이 없어도 입국 가능하며, 강제격리 의무 면제<br>* 백신별 필요 접종 횟수 충족 및 접종 완료 후 최소 14일 경과(얀센의 경우 28일 경과) / WHO 승인 백신 인정 / 교차접종 여부 관계 없이 공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접종완료증명서일 경우 인정<br>※ 부모를 동반하지 않거나, 백신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한 18세 미만의 아동은 10일 지정호텔 강제격리 의무에서 면제되지만, 10일간 자가격리 실시<br>▸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 체크인 48시간 이전 실시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공식 의료기관 발급, 6세 이상) 지참, △튀니지 보건당국 입국신고 사이트(app.e7mi.tn)에 접속 → 입국 및 격리정보 등을 기입 후 출력 및 서명하여 지참(항공편 탑승 시에도 확인)<br>※ 튀니지 입국 시 무작위 항원 또는 PCR 검사 실시 |

## ◇ 중국 지역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중국 | 공통 | ▸ 20.3.28.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br>※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br>*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br>-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br>-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br>-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br>▸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 신청 가능<br>※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를 통해 가능<br>▸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br>※ 중국행 직항 항공편 탑승객(정기편)<br>- 20.12.1.부터 탑승 전 48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각각 1회 실시 필요(PCR 검사 및 항체검사는 1개의 의료기관에서 같이 받거나,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각각 실시 가능)<br>※ 임시 항공편 및 전세기 탑승객(부정기편)<br>- 20.12.1.부터 탑승 전 72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1차 PCR 검사 실시 및 탑승 전 36시간 내 2차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실시 필요(PCR 검사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br>*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kr.china-embassy.org/kor)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병원 방문 전 미리 확인 필요<br>※ 건강 QR코드 발급<br>- 20.12.1 이후 입국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정사이트(https://hrhk.cs.mfa.gov.cn/H5/)에 업로드해야 하며,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이를 심사 후 입국자에게 발급하는 '녹색건강 QR 코드'를 항공 탑승시 제시 필요<br>※ 만 3세(36개월)이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PCR 및 항체검사) 면제<br>- 다만, 항공 탑승 시 '녹색건강 QR코드'를 제시해야하므로, QR코드 발급을 위해 https://hrhk.cs.mfa.gov.cn/H5/에 접속하여 여권의 사진 및 생년월일 정보가 적혀있는 면을 사진 찍어 업로드 필요<br>※ 중국 입국 검역 강화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 | | |
|---|---|---|
| | | (kr.china-embassy.org/kor)에서 확인 가능<br>▸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제3국 인원 출입국 금지<br>※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br>- 최근 각 성·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 해외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
| | 간쑤성 | ▸**간쑤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외출 가능)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br>※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간쑤성에 도착하는 경우, 중국 내 경유지에서 지정시설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간쑤성 도착 후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 |
| | 광둥성 | ▸**국외(홍콩 포함)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는 내외국인은 14일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6회(시설격리 중 4회 + 자가격리 중 2회) 실시(각 시 지방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음)<br>※ 해외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여 북경으로 이동 시 21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이동 가능<br>※ 해외에서 광저우시로 입경시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br>※ 홍콩에서 선전으로 입경시 7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br>※ 마카오에서 주하이로 입경시 7일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소지 |
| | 광시좡족 자치구 | ▸**광시좡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2회 실시(각 시 지방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 | 구이저우성 | ▸**구이저우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 있는 국내 이동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br>※ 시설격리 후 14일 건강 모니터링 실시<br>※ 시설격리 및 모니터링 기간 중 핵산검사 12회 실시(격리 1, 2, 3, 4, 5, 7, 10, 13, 14, 16, 21, 28일째)<br>※ 건강모니터링 제1~7일은 원칙상 외출과 가족 이외의 인원 접촉이 불가하나, 제8~14일에는 거주단지위원회(社區)에 사전 신고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중교통 탑승 불가 |
| | 네이멍구 자치구 | ▸**네이멍구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br>※ 네이멍구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br>※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네이멍구자치구로 이동 가능<br>- 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필요, 도착 후 14일간 격리(지정시설 또는 자가) 후 핵산검사 재실시 |
| | 닝샤후이족 자치구 | ▸**닝샤후이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7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 | 랴오닝성 | ▸**랴오닝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모니터링 정책 시행중, 핵산검사 최소 3회, 혈청항체검사 최소 2회 실시(비용 자부담)<br>※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br>- **(선양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28일 집중격리 + 28일 건강검측* 실시<br>* 거주지 社區에서 매일 체온검사 및 총 2회 PCR 검사, 건강검측 기간 불필요한 외출 자제<br>- **(다롄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 모니터링 정책 시행<br>* 자가격리 중에는 1인 1실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집중격리 연장 |
| | 베이징시 | ▸**베이징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7+7" 방역정책 적용<br>(관련 상세 내용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br>※ 14일 지정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br>※ 베이징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3일차7일차14일차, △추가 시설 또는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7일차(입국28일차)에 PCR 검사 실시<br>※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후 21일이 지나야 베이징으로 진입 가능하며 베이징 도착 후 7일간 건강모니터링(7일차에 PCR검 |

| | | |
|---|---|---|
| | | 사) 추가 실시<br>※ 20.12.10. 이후 해외에서 베이징으로 입국한 모든 인원(격리 해제 인원 포함) 대상 항체 검사 실시<br>※ 21.1.27.부터 홍콩발 항공편을 통해 베이징시로 입국하는 경우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
| | 산둥성 | ▸**칭다오, 옌타이, 지난 공항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더불어 7일간 자가격리 추가(21.1.12.)(총 21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 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비용 자부담)<br>※ 단, 칭다오 공항 입국자의 경우 총 28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 + 7일간 건강관찰(공공장소 출입금지) 추가(21.1.18.)<br>※ 격리기간, 건강관찰 기간 중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자부담)<br>※ 입국 후 핵산검사 5회(옌타이는 6회) + 혈청검사 1회 실시<br>※ 목적지가 입경공항 지역 외 다른 지역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 시 해당지역으로 이동 가능(단, 호텔 퇴소 전 3일 전에 이동할 관할지역 사구(社區)에 반드시 신고하여 하며, 관할지로의 이동가능 확답을 받아야 이동 가능)<br>▸**웨이하이 공항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2-3일간 집중 관찰 및 10일간 자가격리 추가(21.1.12.)(총 23-24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2-3일 집중관찰 + 7일간 자가격리)( 비용 자부담)<br>※ 핵산5회, 혈청1회, 이동가능, 특이 증상자 병원이송 등은 여타 산둥성 공항과 동일 |
| | 산시성<br>(陝西省) | ▸**산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외출 불가)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br>※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시성에 도착하는 경우, 경유지에서 지정시설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산시성에서 7일 자가격리 추가 실시 |
| | 산시성<br>(山西省) | ▸**산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4+2" 방역정책 적용.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4번의 PCR 검사(1, 5, 10, 14일차), 2번의 혈청항체 검사(1, 14일차)<br>※ 14일간 격리를 마친 인원은 "14+2" 방역정책 적용. 14일 자가격리, 2번의 PCR 검사(1일차, 14일차)<br>※ 중국 내 여타 지역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산시성으로 이동 가능하며, "14+4" 방역정책 적용. 14일간 시설격리, 4번의 PCR 검사(1일차, 5일차, 10일차, 14일차)<br>-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
| | 상하이시 | ▸**상하이시 도착시**,<br>①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신청 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건강관찰 가능(지정시설 격리 중 지역 및 호텔에 따라 방역당국 요청으로 핵산검사 2회 실시, 비용 자부담)<br>- 7일 자가건강관찰 기간 중 핵산검사 2회 실시<br>-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1일간 지정시설 격리<br>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11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br>-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br>- 지정도시로 이동 후 해당 성의 격리정책에 따름<br>③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 | 시짱자치구 | ▸**시짱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br>※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
| | 신장위구르자치구 | ▸**신장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br>※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
| | 쓰촨성 | ▸**쓰촨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br>※ 지정시설 격리 기간 중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5회 + 항체검사 1회 추가 실시 |

| | | |
|---|---|---|
| | | ※ 지정시설 격리 후 7일 건강모니터링 실시(즉,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해당기간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2회 실시<br>※ 자가격리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건강모니터링 기간 시설격리<br>※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 |
| | 안후이성 | ▸외국에서 상하이를 거쳐 **안후이성**으로 입경 시, 상하이에서 시설격리 3일, 안후이성 지정시설에서 11일 집중격리 후 추가적으로 7일 자가격리, 7일 건강관찰 실시(각 시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음) |
| | 윈난성 | ▸**윈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비용 자부담, 총 격리기간 중 핵산검사 6회 실시)<br>※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14일 시설격리 종료 후 윈난성으로 이동한 경우 7일 자가격리 추가 실시<br>▸각 시・주에서 공식발표 없이 별도의 방역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다수 |
| | 장시성 | ▸**장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br>※ 이후 7일 시설격리 후 7일 자가격리 진행 |
| | 장쑤성 | ▸**장쑤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및 핵산검사 총5회(1, 4, 7, 10, 14일차) 실시 후, 추가로 14일간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2, 7,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br>※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시설격리 해제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장쑤성으로 이동한 경우, 추가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2, 7,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br>※ 신속통로 이용 인원에 대한 건강관찰은 위 정책대로 실시 |
| | 저장성 | ▸**저장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7+7 건강관리 조치 시행<br>※ 14일간 집중격리 후 7일 자가건강관찰 및 7일 일상건강관찰 진행<br>※ 집중격리 1, 4, 7, 10, 14일차, 자가건강관찰 2, 7일차, 일상건강관찰 7일차에 각각 핵산검사 진행 |
| | 지린성 | ▸**지린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21-28일간 지정시설 격리<br>※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br>※ **(창춘시)** △고위험지역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14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로 이동 후 14일 집중격리 실시), △기타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7+7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에서 7일 집중격리, 자택에서 단독 격리 7일)<br>-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br>※ **(연길시)** 21.11.24.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도착지 호텔 집중격리 14일 + 연길 호텔 집중격리 7일 + 자가격리 14일 + 자가검측 7일 등 총 42일간의 격리 실시(비용 자부담)<br>※ 20.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
| | 충칭시 | ▸**충칭시 도착시**,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28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br>※ 시설격리 기간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7회(격리 1, 4, 7 10, 14, 21, 27일째) + 항체검사 2회(격리 4, 27일째) 실시<br>※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가 시설격리 14일 종료 후 충칭시로 이동한 경우 추가 시설격리 14일 실시 |
| | 칭하이성 | ▸**칭하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br>※ 칭하이성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7일차-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br>※ 경유지에서 14일간의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칭하이성으로 이동 가능(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및 도착 후 7일간 시설격리 실시 및 2차례 PCR검사 요망) |
| | 톈진시 | ▸**톈진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br>※ 톈진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7일차-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 | | |
|---|---|---|
| | |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21~28일차에 톈진으로 진입하는 인원은 톈진 도착일로부터 3일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소지 필요<br>※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톈진시로 이동 가능<br>-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
| | 푸젠성 | ▸ **푸젠성 도착시**, 국외에서 푸젠성으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추가로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3회 실시(각 시 지방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음)<br>※ 샤먼시에서는 14일 시설격리 후 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일 경우 7일 자가격리 불요(단, 추가로 혈청검사 1~2회 실시) |
| | 하이난성 | ▸ **하이난성 도착시,** 중국 내 여타 도시로 입국하여 하이난으로 진입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여타 도시에서 14일간 시설격리 + 하이난에서 7일간 2차 격리(시설 또는 자가, 비용 자부담) + 7일간 자가건강관찰 진행 (자가격리 및 건강관찰 기간 중 핵산검사 3회 진행) (각 시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음) |
| | 허난성 | ▸ **허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 이후 14일 자가격리 |
| | 허베이성 | ▸ **허베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br>※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허베이성으로 이동 가능(단, 허베이성 각 지역 거주위원회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로 지정시설 또는 자가격리, 핵산검사 등 실시 가능) |
| | 헤이룽장성 | ▸ **헤이룽장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br>※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br>※**(하얼빈시)** 집중격리 14일 + 자가격리 7일(격리기간 내 핵산검사 3회 + 혈청검사 1회 실시)<br>※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
| | 후난성 | ▸ **후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건강코드 소지<br>※ 이후 7일 시설격리와 7일 자가격리 진행 |
| | 후베이성 | ▸ **후베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시설격리 + 7일 거주지역 관할 시설격리 + 7일 자가격리 진행<br>▸ **(우한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시설격리 + 7일 거주지역 관할 시설격리 + 7일 자가격리 + 14일 자가건강관찰* 진행<br>*14일 자가건강관찰 범위는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 |

## 2 (시설)격리 조치 : 16개 국가·지역 (정부시설, 지정호텔 등에서 격리)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아시아<br>·<br>태평양 | 몽골 | ▸ 21.6.1.부터 국경 개방<br>※ 모든 입국자는 몽골 도착 72시간 이내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br>-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최근 4개월 이내 확진되었다가 완치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br>※ 21.12.25.부터 모든 몽골 입국자들은 지정시설(호텔)에서 3일간 격리(자부담)되며, 격리 3일차에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면 귀가조치<br>- 오미크론 등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정된 시설에서 10일간 격리조치<br>▸ 21.11.27일부터 최근 14일내 남아공,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잠비아, 앙골라, 말라위, 모잠비크, 짐바브웨, 나이지리아를 방문 또는 경유한 외국인 입국금지<br>※ 단, 몽골 국적자는 입국시 PCR 검사 후 10일간 시설격리(자부담) 및 격리기간 중 총 2회 PCR검사(4일차, 8일차) |
| | 부탄 | ▸ 부탄 입국 시 사전에 반드시 비자 취득 필요(20.12월부터 관광객 입국 가능)<br>※ 모든 해외 입국자는 3주(21일)간 시설격리 의무(격리 및 검사 비용 자부담) |

| | | |
|---|---|---|
| | | - 단, 백신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의 경우 2주 시설격리<br>※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출발 전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검사만 인정) 지참 필수 |
| | 스리랑카 | ▸21.7.8.부터 백신접종완료자* 격리 면제(9.29.부터 도착 후 PCR 검사도 면제)<br>* 백신 접종 국가에서 인정하는 백신은 모두 인정하며(교차접종 방식도 인정), 백신별 접종 횟수를 접종하고 14일 경과 필요<br>※ 상기내용 증명을 위해 입국일 기준 최소 14일 전 접종을 완료했다는 백신접종 증명서(영문)와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서(영문) 제출<br>- 21.12.10.부터 만 12세 미만 입국자는 PCR 음성결과서 제출 불요<br>※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최근 3개월 이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완치 후 백신 1회 접종 후 14일 경과하면 백신접종완료자로 간주<br>- 이 경우 3개월 내 확진판정 서류(영문)과 함께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또는 48시간 이내 실시된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영문) 제출<br>※ 22.1.1.부터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항공편 탑승 전 온라인 건강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 후 발급되는 QR코드(핸드폰 화면 또는 인쇄된 사본) 소지 필요<br>- 건강신고서 제출 시 백신접종기록, 코로나19 검사 결과, 여권 사본 등 업로드<br>▸스리랑카 입국 14일 이내에 여행제한국가*를 방문한 경우 스리랑카 국민, 유효한 거주비자 소지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및 기타 중요한 사업을 위해 스리랑카 정부에서 초청한 자에 한하여 입국 허용<br>※ 단, 여행제한국가 방문 후 입국자는 14일 간 시설격리<br>* 앙골라, 모잠비크, 잠비아 및 남아메리카 국가<br>▸**관광비자 소지자**<br>1. 백신접종 완료 후 입국하는 관광비자 소지자는 입국 즉시 자유 이동 가능<br>※ 만 12-18세 백신 미접종자는 동반 부모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정부시설 또는 '사전 지정된 관광객용 인증호텔' 에서 대기, △도착 1일차에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 시 자유 이동 가능<br>-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도착 즉시 부모와 함께 자유 이동 가능(검사 불요)<br>2. 백신 비접종 관광비자 소지자는 △최소 한달 이상 유효한 코로나19 보험 가입,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 결과, △입국 후 24시간 이내 1차 PCR 검사 실시, △ '사전 지정된 관광객용 인증호텔' 에서 14일 체류, △입국 12일차에 2차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14일차에 자유이동 가능(단, 96시간 이내 출국자는 최초 1회만 PCR 검사 실시)<br>※ 만 12-18세 백신 미접종자는 부모와 함께 체류하며, △도착 1일차 PCR 검사, △도착 12일차 2차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14일차에 자유이동 가능<br>-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도착 후 PCR 검사 불요<br>※ 1일차 또는 12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 시 정부지정 의료시설 입원<br>▸**관광비자 소지자가 아닌 외국인 입국자**(거주비자 소지자 등)<br>1. 백신접종 완료 후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즉시 자유 이동 가능<br>※ 만 12-18세 백신 미접종자는 동반 부모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거주비자 소지자인 경우 자택에서 대기, △도착 1일차에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 시 자유 이동 가능<br>-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도착 즉시 부모와 함께 자유 이동 가능(검사 불요)<br>2. 백신 미접종 외국인 입국자는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 결과, △입국 후 24시간 이내 1차 PCR 검사 실시, △거주비자 소지자는 자택격리, 그 외의 경우 정부 지정시설 또는 호텔에서 격리, △입국 12일차에 2차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14일차에 격리 해제<br>※ 만 12-18세 백신 미접종자들은 부모와 함께 체류하며, △도착 1일차 PCR 검사, △도착 12일차 2차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14일차에 자유이동 가능<br>-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도착 후 PCR 검사 불요<br>※ 1일차 또는 12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 시, 거주비자 소지자는 자택격리 또는 정부지정 의료시설 입원 중 선택 가능, 그 외의 경우 정부지정 의료시설 입원<br>▸최근 14일 이내 남미 국가, 앙골라, 모잠비크, 잠비아 체류자 입국·경유금지<br>※ 단, △스리랑카 국민, △유효한 거주비자 소지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

| | | |
|---|---|---|
| | | △기타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사업상 목적으로 초청되는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14일 격리 필요(21.8.19.부터 기업 초청 입국 불가) |
| | 캄보디아 | ▸21.11.15.부터 백신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시행<br>※ 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는 사전에 컬러로 출력하여 입국시 지참해야 하며, 서류상 인장 필수<br>(1) 백신접종 완료자<br>※ 공항 도착시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15-20분 소요)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격리 면제<br>※ 입국시 필요서류 : △유효한 비자 △백신접종증명서(또는 카드)* △PCR 음성확인서(입국 72시간 이내)<br>* WHO 승인백신(교차접종 가능), 최종접종일자가 증명서에 표시되면 경과기간 등 제한 없음<br>(2) 백신 미접종자<br>※ 입국시 PCR 검사 후 14일 의무 격리<br>※ 입국시 필요서류 : △유효한 비자 △PCR 음성확인서(입국 72시간 이내) △격리호텔 예약확정서(미예약시 예치금 2,000불 준비)<br>▸21.12.6.부터 아프리카 10개국*발 입국자 대상 별도 방역조치 적용(11.29 발표했던 입국금지 조치는 해제)<br>*Botswana, Eswatini, Lesotho, Mozambique, Namibia, South Africa, Zimbabwe, Malawi, Angola, Zambia<br>※ 해당국가로부터 입국(경유 포함)하거나 2주 이내 해당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은 입국 후 7일 격리(6일차에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확인 시 격리 해제)<br>- 백신 미접종자는 14일 격리 |
| | 태국 | ▸21.12.22.부터 아래 63개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무격리입국(Test&Go) 제도 및 타일랜드 패스(Thailand Pass) 신규 발급 잠정 중단<br>→ 22.1.4. 이후 상황 재평가 예정<br>※ 시설격리(백신접종 완료자 7일, 미접종자 10일) 및 푸켓 샌드박스 입국을 위한 타일랜드 패스 신규 발급만 가능<br>※ 이미 Thailand Pass를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시점에 관계없이 기존 무격리 입국과 동일한 절차 적용(단, 입국 후 2번의 RT-PCR 검사 수행)<br>- (타일랜드 패스 기 발급자 입국 후 조치) △입국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 검사 △필수 지참서류 제출 △입국 후 7일간 모니터링 시스템/어플리케이션(머프럼) 설치 △입국 즉시 RT-PCR 방식의 1차 코로나 검사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 시까지 정부지정 격리장소(SHA+인증호텔 또는 AQ 호텔) 대기 △입국 6~7일차 정부지정시설에서 2차 RT-PCR 검사 실시(비용 무료)<br>- 타일랜드 패스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발급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 승인 여부를 기다려야 하며, 승인(발급) 시 무격리 입국 가능<br>▸21.11.1.부터 샌드박스(무격리 관광) 프로그램을 방콕 포함 운영(태국관광청 홈페이지 참고)<br>※ (요건) △모든 국가로부터의 백신접종 완료자(입국 최소 14일 전), △해당 샌드박스 지역 내 7일간 체류(이후 여타 지역으로 이동 가능), △입국 직후 RT-PCR 검사 1회 실시 및 호텔(SHA+)에서 음성 결과 대기(음성 확인시 호텔 외부 이동 가능), △도착 6~7일차 2차 RT-PCR 검사 실시, △5만불 이상 의료보험 가입,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RT-PCR 음성확인서 지참 등<br>▸21.12.1.부터 태국 입국 전 21일 이내 아프리카 8개국(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짐바브웨) 방문자는 입국 금지(태국인 예외)<br>※ 여타 아프리카 국가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14일 격리 적용, △도착 후 RT-PCR 검사 3회 실시 (단, 11.27부터 태국 입국 신청은 중단) |
| 미주 | 바베이도스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24시간 이내 입국승인카드를 온라인 신청 △입국 전 3일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br>※ (백신 미접종자) 7일간 지정호텔 격리 후, 격리 5일째 PCR검사 실시하여 음성 결과 확인 시 격리 해제<br>※ (백신접종 완료자*) 입국 시 공항에서 여행객에 대해 무작위 신속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 입국 가능<br>*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 |
| | 세인트루시아 | ▸모든 입국자는 아래와 같은 방역조치 준수 |

| | | |
|---|---|---|
| | | ※ 입국 전 정부 홈페이지(www.stlucia.org)를 통해 △여행 전 등록서(Pre-arrival registration form), △입국 전 5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등 제출<br>※ 입국 후 14일 지정호텔 격리<br>- 단, 입국 전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격리 면제<br>*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서류(Pre-arrival Travel Form)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입국 시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br>* 정부 홈페이지(https://stv.servicedx.com/travelform)상에서 입국 서류와 코로나19 질문서 작성<br>※ 백신 미접종자<br>- 최고위험국가(베네수엘라, 브라질, 에콰도르, 남아공, 수리남 등)로부터 입국한 경우 : 보건관계자의 재량에 따라 입국 시 PCR 재검사 실시 가능하며, 14일간 정부승인호텔에서 격리(격리 10~14일째 PCR 재검사 실시)<br>- 고위험국가(바베이도스, 도미니카, 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등)로부터 입국한 경우 : 보건관계자의 재량에 따라 입국 시 PCR 재검사 실시 가능하며, 10일간 정부승인호텔에서 격리(격리 7~10일째 PCR 재검사 실시)<br>- 중위험국가(세인트키츠네비스, 대만)로부터 입국한 경우 : 5일간 정부승인호텔에서 격리(격리 3일째 PCR 재검사 실시)<br>- 저위험국가(앙길라, 몬세라트)에서 입국한 경우 : 입국 시 PCR 검사를 실시하고 3일간 정부승인호텔에서 격리<br>※ 백신접종 완료자<br>- 변이발생국가(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짐바브웨, 벨기에, 이스라일, 홍콩)에서 입국한 경우 : 입국 시 PCR 재검사 실시 및 정부 지정호텔에서 7일간 격리(정부지정호텔 7박 사전 예약)<br>- 그 외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 입국시 PCR 재검사 및 격리면제 |
| 유럽 | 몰타 | ▸각 국가 및 지역을 Green, Amber, Red, Dark Red 네단계로 분류하여 입국제한 조치 시행(단계별 국가 리스트는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br>※ 모든 입국자는 온라인 EU Digital Passenger Locator Form(dPLF) 사전 제출<br>- 항공기 탑승전까지 제출 의무<br>- 온라인 제출을 완료하면 작성시 등록한 이메일로 QR코드를 포함한 dPLF 도착 (홈페이지 주소 : https://app.euplf.eu/)<br>※ **Green List 국가 및 지역발 입국자**<br>- 조건없이 입국가능(자가격리 불요)<br>- 해당 국가 및 지역 없음<br>※ **Amber List 국가 및 지역발 입국자**<br>- 입국 72시간 전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음성확인서 없을 경우 공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의무)<br>-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몰타공항에 도착한 승객 중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랜덤으로 PCR 검사 실시<br>- 해당 국가 및 지역 없음<br>※ **Red List 국가 및 지역발 입국자(한국 포함** 대다수 국가)<br>- 입국이 가능하나,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 지참 필수<br>- 단, 백신접종증명서가 없을시 몰타 입국 72시간 내 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몰타정부가 지정한 숙소(유료)에서 14일 자가격리 의무<br>- 백신접종증명서는 백신 2차접종 종료 후 14일이 지난 증명서만 인정<br>- 만 12세 이상에게만 동 조치 적용<br>- 만 5세~11세는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동행하, 입국 72시간 전에 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입국 가능(단, 5세 미만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br>ㅇ**(인정되는 백신접종증명서) △대한민국 백신접종증명서**(The South Korean "COVID-19 Vaccine Certificate" as issued through the COOV App) △몰타 백신접종증명서(Maltese Vaccination Certificate), △EU 디지털 백신접종증명서(EU Digital COVID Certificate)(스위스 백신접종증명서 포함), △영국 NHS 증명서 및 NHS 어플(NHS COVID Pass Letter / NHS App UK), 그 외 특정국가* 발급 증명서<br>*두바이, 터키, 미국, 세르비아, 지브롤터(영국령), 카타르(도하), 알바니아, 호주, 이집트, 레바논, 캐나다, 싱가포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르완다, 코소보, 팔레스타인, 바레인, 버뮤다, 이스라엘, 아르메니아, 이라크, 몰도바, UAE, 칠레, 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일본, 오만, 리비아<br>ㅇ**(불인정 증명서)** △코로나19 완치 증명서, △백신 1차 접종 증명서, △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증명서 |

| | | |
|---|---|---|
| | | ※ **Dark Red List 국가발 입국자** (상기 Green, Amber, Red list 제외 모든 국가)<br>- 입국제한(단, 몰타 거주로 복귀 또는 긴급한 업무 등의 사유로 보건부의 사전허가 시에는 입국 가능)<br>- 입국제한 국가중 오미크론 변이 관련 특별 입국 금지국(21.11.29~) : 남아공, 레소토,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미비아(유효한 몰타 신분증 및 몰타 영주권 또는 거주카드 소지자는 입국가능하나 입국후 14일 자가격리 실시) |
| 중동 | 사우디<br>아라비아 | ▸ 사우디로의 입국이 금지된 4개국 이외의 국가(한국 포함)에서 입국하는 면역 미생성 외국인은 최소 5일간 사우디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격리(21.9.23.~)<br><br>※ 입국 후 PCR 검사를 총 2회 받으며(1차는 입국후 24시간 이내, 2차는 5일차), 5일차 결과가 음성이면 시설격리 해제<br><br>※ 다만 에티오피아,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베트남, 이집트, 인도에서 입국하는 경우 면역 생성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격리<br><br>※ 면역 생성 외국인은 아래를 의미하며, 아래 조건 미충족시 면역 미생성자에 해당<br>- 아스트라제네카(2회), 화이자(2회), 모더나(2회), 얀센(1회) 중 한 종류의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자(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간 교차 접종 이후 14일이 경과한 자도 면역 생성자로 인정)<br>- 시노백, 시노팜을 2회 접종하고 상기 4종 중 한 종류의 백신을 추가 접종하고 14일이 경과한 자<br>- 항공권 발권 및 입국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가의 보건당국이 발행한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필요<br><br>▸ 입국 허용 조건 충족 시, 입국 후 아래 검역강화 조치 적용<br><br>※ 모든 입국 외국인은 사우디로의 출발 전(경유지 기준) 72시간 내 백신접종 정보 전자등록 필요 https://muqeem.sa/#/vaccine-registration/home (현재 사우디측 시스템 미비로 교차 접종자의 경우 muqeem 상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선택할 수 있는 란이 없는 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중 1개를 2번 맞은 것으로 선택하고 입국할 필요)<br><br>※ (음성확인서 제출) 모든 사우디 입국 외국인은 사우디 입국 항공편 탑승 및 입국시 사우디 입국 항공편 탑승 기준(경유지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를 받고(테스트 시간 기준)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br><br>※ (자가격리 및 PCR 검사)<br>- (면역 생성 외국인) 사우디 입국 이후 격리 및 PCR 검사 불요<br>- (면역 미생성 외국인) 시설격리 5일을 해야하며, 격리 24시간 이내 및 5일차에 PCR 검사(총2회)<br>- (면역 미생성 외국인 중 면역된 거주증 보유자를 동반하여 입국한 18세 미만)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격리 5일차에 PCR검사 실시필요<br><br>▸ 외국인들은 하기 4개국으로부터 사우디 입국 불가 (최소 14일을 여타 국가에서 보낸 이후 입국 가능)<br><br>*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터키, 레바논 (총 4개국)<br><br>※ 사우디인, 외교관, 보건의료 종사자 및 가족의 경우 동 국가에서 출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br><br>※ 예외적 입국시, 사우디 입국 항공편 탑승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br><br>▸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레소토, 에스티와니, 말라위, 잠비아, 마다가스카르, 앙골라, 셰이셸, 모리셔스, 코모로스 14개국과의 항공편 왕래 일시 중단 |
| | 카타르 | ▸ 출국지를 3개 구분(Green, Red, Exceptional Red)으로 나누어 상이한 방역조치 적용 (**한국**은 Green List 국가에 포함)<br><br>※ Exceptional Red List*발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불허 |

| | | |
|---|---|---|
| | | * 네팔, 방글라데시, 수단, 남수단,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이집트<br>▸모든 입국자 공통 적용 방역조치<br>※ 여행 전 Travel Authorization 신청<br>- 입국 최소 3일 전에 Ehteraz 사이트(www.ehteraz.gov.qa)에서 신청(여권사본, 영문 백신접종증명서 등 등록), 발급 후 도하행 비행기 탑승 전 제출<br>- 카타르 거주허가증(QID) 소지자는 사전 등록 불요<br>※ Undertaking and Acknowledgement Form 작성 및 제출<br>- MoPH 사이트, Ehteraz 사이트 및 항공사에서 양식 발급<br>- 카타르 내에서 백신접종 완료하고 Green List 국가로부터 출발한 카타르 거주허가증(QID) 소지자는 상기 form 작성 불요<br>※ 입국 시 Ehteraz 앱 설치 필요(local, international sim 모두 사용 가능)<br>※ 입국 시 카타르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영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비행기 탑승 전 확인)<br>- 출발지국 보건부가 승인한 검사기관(병원,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것일 것(예 : 한국에서 출발시 우리 보건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검사기관 어느 곳이든 무방)<br>- 백신접종완료 카타르 거주허가증(QID) 소지자는 Green List 국가로부터 입국시 동 검사 불요<br>- Green List 국가로부터 백신접종완료 부모와 입국하는 3세 이하 아동은 동 의무 면제<br>▸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입국 후 상이한 격리 의무 적용<br>※ (백신접종 완료 기준) 카타르 공공보건부가 승인한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br>* 화이자, 모더나, AZ, 얀센/ (조건부승인)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V, 코백신<br>- 교차접종 인정(화이자/모더나/AZ 중 2개 접종)<br>- 조건부승인 백신 접종자는 입국 전 실시한 항체 양성 검사서 함께 제출 필요(입국 전 항체 검사 미실시자는 입국 후 7일 격리)<br>- 단, 조건부승인 백신 2회 접종 후 화이자/모더나를 1회 추가 접종하고 14일 경과한 경우 항체검사 없이 백신접종 완료로 인정<br>※ 백신접종 완료자<br>- Green List(<u>한국 포함</u>) 출발시 : 격리 면제(백신접종을 완료한 부모 혹은 가족과 동반 입국하는 11세 이하 아동도 격리면제)<br>- Red List 출발시 : 2일 시설격리 (QID 소지자는 격리면제)<br>- Exceptional Red List 출발시 : 2일 시설격리<br>※ 백신 미접종자<br>- Green List(<u>한국 포함</u>) 출발시 : 7일 격리(QID 소지자, 가족비자 소지자는 자가격리, 그 외 시설격리)<br>- Red List 출발시 : 7일 격리(QID 소지자, 가족비자 소지자는 자가격리, 그 외 시설격리)<br>- Exceptional Red List 출발시 : 입국불허(QID 소지자는 7일 시설격리, 격리 6일차에 PCR 검사 실시하여 결과가 음성이면 7일차에 격리 해제)<br>▸아프리카 6개국(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짐바브웨)발 입국자 대상 조치 내용(21.12.1.~)<br>※ QID 소지자 :<br>- 백신접종완료자는 시설격리 2일 + 자가격리 5일<br>- 백신 미접종자는 시설격리 7일<br>※ QID 미소지자 :<br>- 백신접종완료자는 시설격리 7일<br>-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불허 |

| | | |
|---|---|---|
| 아프리카 | 가봉 | ▸아래 입국금지 조치 8개국 외 모든 가봉 입국 내외국인은 출발 항공편 탑승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가봉 리브르빌 공항 도착 시 코로나19 추가 검사 후 지정호텔에서 5일간 격리(21.10.27.)<br>※ https://voyageurs.assistcovid19.ga/ 에서 격리호텔 사전 예약 및 결제(자부담)<br>※ 단,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는 격리 면제<br>▸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앙골라 출발 승객 및 항공편 전면 입국금지(경유 포함) |
| | 르완다 | ▸20.8.1.부터 국제공항 운항 재개(20.7.29.)<br>※ 21.12.16부터 입국후 지정호텔에서 3일간 격리<br>※ 21.2.8부터 공항을 통한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만 5세 미만 제외)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전 내에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사전 제출, △도착 72시간 전 내 www.rbc.gov.rw 통해 승객위치확인서(성명, 여권번호, 항공편, 지정호텔 예약정보 등) 기입 및 음성확인서 업로드, △입국 후 검역 시 음성확인서 및 확인번호 제시, △입국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진행(검사비 USD 60), 입국 3일 및 7일차에 추가 검사 실시(검사비 각 USD 50)<br>※ 키갈리 국제공항 경유자 대상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전 내에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사전 제출, △도착 72시간 전 내 www.rbc.gov.rw 통해 승객위치확인서 기입, △경유시 음성확인서 및 확인번호 제시, △추가 코로나19 검사 미실시<br>※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1.11.28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지정 호텔에서 1일간 격리 조치 재개<br>- 단, 보츠나와,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잠비아, 짐바브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지정 호텔에서의 7일간 격리 |
| | 마다가스카르 | ▸(일부 항공사 운항허가로 국경 점진적 재개방) 레위니옹 및 모리셔스발 항공편은 21.10.23.부터 재개/ 유럽 등지에서 출발하는 장거리 항공편은 21.11.6.부터 재개<br>※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후 결과 확인 시까지 최대 48시간 지정호텔 격리(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14일 추가 격리)<br>- 입국 시점에 실시하는 PCR 검사비(25유로)는 항공권 가격에 포함<br>- 다만, 비행기 탑승 조건(PCR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등 제시 여부) 관련 지침은 상금 미발표 |
| | 모리셔스 | ▸모리셔스는 단계적으로 7월과 10월에 국경을 개방<br>※ (1차 국경 개방) 21.7.15.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 및 미완료자 모두 입국 가능하나, △비행기 탑승 3-7일 전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제시, △14일간 호텔 격리 필수<br>- 다만, 9.1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는 7일 격리 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격리 해제(격리기간 중에는 호텔 전용 해변을 포함한 호텔 시설 이용 가능)<br>- 격리 지정 호텔은 (www.mauritiusnow.com)에서 확인<br>- 도착일, 자가격리 7일, 14일째 되는 날에 PCR 검사를 받으며, 14일에 음성 확인시 자가격리 해제<br>※ (2차 국경 개방) 21.10.1.부터 국경 2차 개방<br>- (백신 접종 완료시) 비행기 탑승 72시간 전 음성 결과 확인서를 제시할 경우, 별다른 격리조치 없음<br>- (백신 접종 미완료시) 입국자는 지정 호텔 방에서 14일간 격리 필수<br>*도착일, 자가격리 7일, 14일째 되는 날에 PCR 검사를 받으며, 14일에 음성 확인시 자가격리 해제 |
| | 부룬디 | ▸20.8.17.부터 모든 여행객 대상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받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br>※ 입국 시 공항에서 1회 PCR검사 실시하고 지정된 호텔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최대 24시간)<br>※ 21.1.11.부터 육로 국경 폐쇄 |

## 3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 112개 국가·지역

※ 사증 발급 중단, 자가격리(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

| 구 분 | 조 치 사 항 |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아시아·태평양 | 네팔 | ▸21.9.22.부터 관광 입국비자 발급 재개<br>※ 백신 미접종자는 도착비자 발급 불가, 주한네팔대사관을 통해 입국 전 비자 발급 필수<br>- 입국 후 10일간 시설(호텔) 격리 필수, 11일째 PCR 검사 실시<br>※ 도착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공통 제출서류 외 △코로나19 백신접종 영문 증명서*(5세 미만 어린이는 제외), △등산/트레킹 허가증 또는 기타 여행 목적 관련 서류, △숙소 예약증 추가 제출 필요<br>*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교차접종 불인정)/ 백신 종류와 회차별 접종일자 기재/ 한국에서 접종완료한 경우 질병예방청 발급 영문 증명서 인정<br>※ 모든 네팔 입국 외국인들은 △네팔로 출발하기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5세 미만의 어린이는 제외), △격리 숙소 예약확인서, △여행자보험 가입확인서 지참<br>- 코로나위기관리센터(ccmc.gov.np) 접속하여 'International Traveller Online Arrival Form(English)' 작성 후 생성되는 바코드 출력본 2부 소지 후 제출(항공사, 네팔 트리부반 국제공항 입국장)<br>※ 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의무(문화관광항공부에 등록된 숙소 중 선택)<br>- 본인 거주지에서 격리 가능한 대상 : △외교단 및 국제기구 종사자, △환자, △만 5세 미만 또는 75세 이상 노약자와 이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br>▸21.12.2.부터 3주간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홍콩 등 9개국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는 여행객 입국금지 |
| | 몰디브 | ▸20.7.15.부터 일반 관광객의 입국 허용(사전에 이민국을 통해 온라인 등록 필수)<br>※ 관광객은 △숙박 예정인 호텔 및 비행편 등을 몰디브 이민국에 등록 필요, 모든 입국자는 △몰디브로 출발하기 최대 96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 제출, △공항에서 발열체크, △유증상인 경우 PCR 검사(일행 중 한명이라도 증상을 보이면 일행 전원 PCR 검사), △입국자 대상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br>- 관광객은 사전에 등록한 리조트, 호텔 지역 내 이동 가능<br>※ 관광 외 목적 백신 미접종 입국자(△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백신접종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몰디브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하며, 입국 5~7일차 및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실시<br>- 서남아시아發 취업비자 소지자는 시설격리 실시하며 격리 해제 전 PCR 검사<br>※ 모든 입국자는 환승 공항 대기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환승지에서 PCR 추가 검사<br>▸21.7.26.부터 모든 입국자는 WHO 또는 몰디브 식약청이 승인한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 몰디브 출발 전 96시간 이내 실시된 PCR 음성결과서를 지참하여 입국 시 격리 없이 몰디브 전역 이동 가능<br>※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부모와 동반 시 미성년자도 격리면제 적용<br>※ 환승 시 공항 대기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환승지에서 PCR 추가 검사 필요<br>▸21.11.27.부터 남아공, 나미비아, 레소토, 모잠비크, 보츠와나, 에스와티니(스와질랜드), 짐바브웨를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12시간 이상 경유한 자는 입국·경유 금지 |
| | 방글라데시 |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에 대해 도착비자 발급 중단(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사전에 비자 취득 필요)<br>※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12세 이상의 모든 승객은 반드시 항공기 출발 전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받은 RT-PCR검사 기반 코로나19 음성확인서(영문 원본)를 제출<br>▸**B그룹 국가***(한국 포함)발 입국자 자가격리 조건(21.10.23.부터 적용)<br>* A그룹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br>※ (백신접종 완료자) 여행 시작 14일 전까지 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공식 접종증명서를 휴대 및 제출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br>※ (백신접종 미완료자)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의무<br>※ A그룹 국가를 환승하여 도착한 경우, 공항 내 환승(해당국 입국 없는 환승)과 관계 항공사의 철저한 관리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br>※ 다만,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정부 지정 병원에서 추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가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증상 발견 시 시설격리 조치(자부담)<br>▸ A그룹 국가*(한국 불포함)발 입국자 자가격리 조건<br>*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조지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몽골, 팔레스타인,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br>※ (백신접종 완료자) 여행 시작 14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증명서를 휴대 및 제출, 입국 후 7일간 엄격한 자가격리<br>※ (백신접종 미완료자) 자부담으로 정부지정 시설 또는 호텔에서 격리, 7일 후 RT-PCR 검사 진행 후 음성 판정시 격리 해제<br>▸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18세 미만의 승객은 모든 국가(즉 A, B그룹 포함 국가 모두)에서 출발할 수 있음<br>※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가족과 함께 여행해야 하며, 가족과 동일한 보건절차 준수 필요<br>▸ (21.12.4.부터 적용) 지난 14일 이내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짐바브웨, 가나에서 출발, 경유, 방문 후 방글라데시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정부 지정시설에서 14일 격리 의무(모든 소요비용 자부담)<br>※ 격리 7일, 14일차에 RT-PCR 검사 실시 → 14일차 검사 음성판정 시 격리 해제 |
| | 아프가니스탄 | ▸ 21.4.19.부터 국제선 항공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br>※ 출발 전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
| | 인도 | ▸ 21.11.15.부터 개별관광 비자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관광목적의 인도 방문 가능<br>※ 기존 발급된 관광비자 효력정지는 계속되며, 새로 단수(single entry) 비자 발급 필요(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30일까지 체류 가능)<br>※ 전자비자(e-visa)신청은 가능하나, 도착비자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br>▸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br>※ 코로나19 비-위험국인 한국에서 오는 승객의 경우, 입국 전 14일간 해외여행 국가 리스트를 포함한 입국정보와 입국 전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온라인(델리공항 Air Shvidha 포털)으로 사전등록할 경우 추가 규제 조치 없이 숙소 등으로 이동 가능(14일간 자가 모니터링 실시)<br>- 다만 도착자 중 무작위로 5%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br>▸ 코로나19 위험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br>* 영국 포함 유럽지역 국가, 남아공, 브라질,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중국, 모리셔스, 뉴질랜드, 짐바브웨, 싱가포르, 홍콩, 이스라엘(21.11.26. 현재)<br>※ 입국 전 14일간 해외여행 국가 리스트를 포함한 입국정보 및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 음성확인서 사전포털 등록<br>※ 도착 후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및 8일째 추가 코로나 검사 실시(재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7일간 능동감시(self monitoring))<br>※ 코로나 위험국에서 출발하여 주재국 도착 후 국내선으로 환승하려는 경우, 최초 도착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결과가 확인된 이후에 목적지로 이동 가능<br>▸ (마하라슈트라州)<br>※ 코로나 비-위험국인 한국이나 중동에서 오는 승객은 자가격리 14일<br>※ 상기 코로나19 위험국*에서 입국하거나 15일 이내 해당국 여행력이 있는 승객은 시설격리 7일 실시 및 8일째 추가 코로나 검사 실시<br>- 재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7일간 자가격리<br>※ 델리, 첸나이 등 타 도시로 입국하고 국내선을 이용하여 마하주의 도시(뭄바이, 푸네 등)로 이동하는 경우 도착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받은 음성확인서 필요<br>▸ (카르나타카州)<br>※ 뱅갈루루공항 : '고위험국가' 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및 8일차 추가 진단검사 실시(2차 진단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7일간 능동감시 실시)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 단, 비-위험 국가 발 도착자 중 2% 인원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br>▸ (타밀나두州)<br>※ 타밀나두주 내 국제공항(첸나이, 트리치, 코임바토르, 마두라이)을 통해 입국하는 '고위험국가' 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및 8일차 추가 진단검사 실시<br>※ 단, 비-위험 국가 발 도착자 중 2% 인원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 |
| 미주 | 과테말라 | ▸ 모든 입국자(내외국인 불문)는 입국 시 아래 방역조치 적용<br>※ (백신접종 완료자) 백신접종 증명서 원본 지참<br>※ (백신 미접종자) 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지 지참(과테말라 입국 전 3일 이내 검사한 결과지)<br>※ (백신접종 증명서 및 코로나19 진단검사지 면제 대상)<br>- 10세 미만 어린이<br>- 과테말라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여행목적이 긴급함을 증명할 경우), 타 국가에 입국하지 못한 과테말라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 주재국에 등록된 외교단 등<br>- 상기 증명서 및 검사지 면제 대상자는 입국 시 공항에 설치된 보건국(MSPAS)에서 항원검사 진행<br>▸ 최근 14일 이내 남아공, 나미비아, 보츠와나, 모잠비크, 레소토,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이집트를 방문한 입국자 모든 경로의 입국금지<br>※ (예외) 과테말라 국민 및 영주권자, 외교단, 승무원의 경우 입국은 허용하나 10일간 자가격리 △여행의 목적이 긴급함을 증명할 경우, △타 국가에 입국하지 못한 주재국민 또는 외국인, △주재국에 등록된 외교단, △ 육로 입국이 잦은 여행객(상인, 학생, 국경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트럭 운전기사 및 도우미, 승무원 등은 72시간 미만 체류 가능) |
| | 니카라과 | ▸ (항공) 20.9.19.부터 일부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 재개<br>※ 모든 입국자는 니카라과 입국 전 72시간 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사전 제출 및 입국 시 제출 필요(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출발 입국자는 96시간 내 시행된 확인서 제출)<br>※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RT-PCR' 또는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표기 필요<br>※ 코로나19 유증상자 입국 불가<br>▸ (육로) 남부 및 북부 육로 국경을 통한 출입국 가능<br>※ 모든 입국자는 니카라과 입국 전 72시간 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육로 국경 통과 시 제출 필요 |
| | 도미니카 공화국 | ▸ 입국자에 대해 랜덤방식으로 코로나19 신속 검사 실시(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유증상 시 지정시설 격리)<br>※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필수 |
| | 멕시코 | ▸ 입국 시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br>※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하고, △경증시 자가격리, △중증시 입원조치<br>▸ 멕시코-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
| | 바하마 | ▸ 탑승 전 5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PCR) 음성결과서 제출(비 접종자)하고 4박5일 이상 체류자는 5일 이내 코로나 신속 검사 의무<br>※ 백신접종자(AZ, 화이자, 모더나, 얀센)는 PCR음성확인서 제출 면제<br>※ 모든 18세 이상 여행자는 헬스비자 신청의무 |
| | 베네수엘라 | ▸ 입국 시 72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br>※ 베네수엘라행 항공편 탑승 24시간 전 항공사 측에 PCR 음성확인서 송부 또는 등록 필요(각 항공사 홈페이지 참조)<br>- (Laser, Turpial, Avior 항공사) 음성확인서 이메일로 송부<br>- (Conviasa, Estelar 항공사) 음성확인서 홈페이지에 등록<br>- (Venezolana de Aviacion, Rutaca 항공사)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br>※ △사전에 홈페이지(pasedesalud.casalab.com.ve)에서 QR코드 발급,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 후 자택에서 검사결과 대기<br>- PCR 검사 비용 $60(베네수엘라 항공사는 항공권 가격에 포함, 외국 항공사는 체크인 시 별도 지불) |
| | 벨리즈 | ▸ 백신접종 여부 불문 모든 여행자는 입국일 기준 96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Rapid Antigen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 가능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 여행객은 반드시 정부에서 허가한 Gold standard hotel 표시 숙박시설 예약, 도착 후 입국심사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br>※ 북/서부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자는 벨리즈 정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 수검 필요(자부담) |
| | 볼리비아 | ▸21.10.27.부터 5세 이상 모든 내외국인 대상 아래 입국요건 적용<br>1.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된 자)<br>①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영문) 지참<br>②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영문) 결과서 지참<br>- 항공 입국의 경우,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br>- 육로, 선박 입국의 경우, 볼리비아 도착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br>③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증서 제출(내국인 및 외국인 영주권자는 제외)<br>2.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완료자(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미경과 경우 포함)<br>①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영문) 결과서 지참<br>- 항공 입국의 경우,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br>- 육로, 선박 입국의 경우, 볼리비아 도착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br>②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증서 제출(내국인 및 외국인 영주권자는 제외)<br>③ 볼리비아 입국 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검사 비용 자부담)<br>- 72시간 이내 실시하는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결과 전까지 자가격리 필수<br>- 입국 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후 결과까지의 격리는 자택격리를 의미하며, 검사 결과 양성이 의심되는 경우 볼리비아 보건체육부 지침에 따라 격리(주재국 시설 입소 시 이용료 등 자부담 원칙)<br>3.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③ 면제<br>- 입국 시 PCR 음성결과서, 보험증서는 지참<br>4. 전세기, 긴급의료수송기, 인도적 목적 수송기, 화물기 등의 입국자는 PCR 음성결과서만 제출 |
| | 세인트키츠 네비스 | ▸모든 입국자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결과서 제출, 입국 후 14일 격리<br>※ 백신접종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9일 격리로 단축 가능<br>※ 9일 이상 체류 시 PCR 검사비용 $150 자부담 |
| | 아르헨티나 | ▸21.11.1.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국경 개방<br>※ 한국에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은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가능(단, 백신 미접종자는 관광 목적 입국을 불허하며, 입국을 위해 이민청 특별허가 필요)<br>- 백신접종을 완료한 우리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아르헨티나 입국 시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나, 안전한 입국을 위해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에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권고<br>※ 여행 14일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격리면제 적용<br>- 이민청 웹사이트(www.migraciones.gob.ar)를 통해 출국 전 48시간 이내 서약서 작성 필요<br>* 백신접종 완료 기준은 접종 지역 보건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름<br>※ (입국 시 준수 사항) △상기 이민청 웹사이트에 서약서 제출, △출발 전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증명서 제출, △비영주 외국인은 아르헨티나 체류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비용(격리, 입원 등)을 제한없이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br>※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출발 전 PCR 검사 시점부터 10일간 격리<br>- 백신 미접종 미성년자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 성인 동반 시 입국 가능하나 7일 격리<br>▸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 조치(21.11.29~)<br>※ 입국 전 14일 내에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방문한 모든 입국자는 △아르헨티나 입국시 서약서에 동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입국시 코로나19 항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원 검사, △입국 전 PCR 검사 시점으로부터 10일간 의무격리를 실시, △의무격리 후 PCR 진단검사를 실시, △비영주 외국인은 코로나19 치료 비용을 포함하는 의료보험 가입 필수 |
| | 아이티 | ▸21.2.9.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br>※ 입국 시 발열체크 및 연락처 제출 실시 중 |
| | 앤티가바부다 | ▸입국 전 7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br>※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서 작성 및 발열 검사 |
| | 에콰도르 | ▸21.12.1.부터 해외입국자 대상 아래 조치 적용<br>※ 모든 입국자는 온라인 여행자건강신고서 작성<br>- 보건부 웹페이지(https://encuestas.msp.gob.ec/index.php/947917?lang=es)<br>※ 16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최종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백신종류 무관하나 교차접종 불인정)와 출발 전 72시간 내 실시된 RT-PCR 음성확인서(항원검사 불인정) 제출<br>※ 2세~15세의 모든 입국자는 여행 전 72시간 내 실시된 RT-PCR 음성확인서(항원검사 불인정) 제출<br>※ 남아프리카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이집트, 모잠비크, 레소토,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나미비아) 출발 여행객 입국 제한(출발 및 경유 포함) |
| | 온두라스 | ▸20.8.17.부터 국제공항 및 육로국경을 통한 외국인의 입국 임시적 허용(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불시에 입국 금지 가능)<br>※ 21.3.29.부터 영국 또는 남아공, 파나마, 모든 남아메리카 국가 출발 외국인 또는 이전 15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온두라스 거주증 소지 외국인 및 온두라스 국적자는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br>※ 입국 전 이민청의 사전 입국검사 홈페이지(https://prechequeo.inm.gob.hn)를 통해 입국 신청<br>※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입국 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PCR 또는 특이도(specificity) 85%·민감도(sensitivity) 98% 이상의 신속검사) 음성결과서 제출(경유 입국자의 경우, 도착 국가가 요구하는 검사 결과서 소지 필수)<br>※ 21.6.10.부터 백신 접종자의 경우, 입국일 기준 14일을 경과한 내국인 및 외국인은 백신 접종증명서 원본 제시 가능<br>- 시판되는 모든 백신이 인정되며, 그 백신의 필수 접종 횟수를 완료해야 함<br>-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시하면, PCR 또는 신속 검사 음성결과서를 제출할 의무 없음 |
| | 자메이카 | ▸모든 입국자(자메이카 국민 및 외교단 포함)는 △입국 전 자메이카 보건부 웹사이트(visitjamaica.com)에 접속하여 여행 허가 취득 필요하며,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또는 항체검사) 제출, △입국 목적 및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이한 방역조치 적용<br>* 백신접종 완료 기준 : 코로나19 백신 최종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한 자<br>※ 최근 2주 이내 남아프리카 8개국(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짐바브웨)을 방문한 적 있는 자메이카 비거주자는 21.11.27.부터 입국 금지<br>1. 거주자(자메이카에 거주하는 자메이카 국민 및 외국인)<br>※ (백신접종 완료자) 자메이카에 도착한 날로부터 8일 동안 자택격리<br>-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RT-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후 별도 추가 검사 없이 격리 면제<br>※ (백신접종 미완료자) 자메이카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택격리<br>2. 관광 목적 여행객<br>※ 자메이카 도착 후 건강검진 및 위험평가를 받게 되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호텔/리조트에서 숙박 및 관광 허용 구역 방문 가능<br>3. 사업 목적 방문자<br>※ (백신접종 완료자)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RT-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후 별도 추가 검사 없이 격리 면제<br>※ (백신접종 미완료자) 검사가 음성이면 격리에서 해제되나, 체류기간 중 지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정된 활동만 가능하며 식료품/의약품 구매를 위한 외출은 1일 1회만 허용<br>- 양성인 경우 보건당국 결정에 따라 숙소 또는 정부 시설에서 격리<br>**4. 기타 목적 여행객**<br>※ (백신접종 완료자) 자메이카에 도착한 날로부터 8일 동안 자택격리<br>-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RT-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후 별도 추가 검사 없이 격리 면제<br>※ (백신접종 미완료자) 자메이카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택격리 |
| | 코스타리카 | ▸외국인의 항공기, 육로, 요트를 이용한 입국 제한적 허용<br>※ △입국 전 코로나19 관련 전자 자가진단서 시스템상 제출(서면제출 불가), △코스타리카 보험공사(INS)에 보험가입 또는 코로나 19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비용(입원비) 및 최소 14일간의 숙박비 보전이 가능한 여타 국제보험 가입, △코로나19 증상 미발생<br>- 단, 8.1.(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외국인 및 △18세 미만 외국인의 경우 보험 가입 조건 없이도 입국 가능<br>* 인정 대상 백신 : Moderna, Pfizer, AstraZeneca, Johnson&Johnson<br>* 입국 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 카드를 지참해야하며, 동 서류에는 접종자 이름, 백신 접종 일자, 백신 종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br>※ 단, 육로를 통한 외국인의 입국은 코스타리카로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만 허용<br>※ 영주권자 등 각 체류자격별 입국 조건은 주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 | 쿠바 | ▸모든 입국자 대상 도착 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자부담) 및 21.1.10.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출발 국가의 공인 시설에서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br>※ 21.2.6.부터 입국 후 지정된 숙소에서 5일간 의무 격리(자부담)<br>※ 쿠바에 5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 5일차에 2차 PCR 검사 실시 |
| | 파나마 | ▸21.8.30.부터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아래 방역지침 적용<br>※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온라인 보건 서약서 작성 필요 (viajes.panamadigital.gob.pa)<br>※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파나마로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또는 입국심사 전 코로나19 검사(자부담) 실시<b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 조치 면제<br>- 단, 파나마 입국 전 15일 이내 남미 8개국*, 인도, 영국, 남아공을 방문 또는 경유하였을 경우, 자가 또는 호텔에서 3일간 격리 조치가 시행되며, 3일간 격리 완료 후 코로나19 재검사 후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br>* 콜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에콰도르, 가이아나, 수리남<br>※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입국 전 보건서약서 작성 온라인 사이트에 파나마 입국 14일 전에 발급 받은 백신접종증명서를 업로드하거나 입국심사시 제시할 경우, 공항에서의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 조치 면제<br>* FDA 또는 파나마 정부 승인 백신(교차접종이 합법인 국가에서 접종 시 교차접종도 인정)<br>※ 파나마 입국 만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상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였을 경우 입국심사 전 코로나19 검사 및 3일간 격리 조치 시행 의무 면제<br>▸남아프리카 8개국(남아공,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레소토, 보츠와나, 모잠비크, 짐바브웨, 말라위)을 방문 또는 경유한 승객의 입국 잠정 중단(21.12.3.) |
| | 파라과이 |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5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자가격리 5일째에 RT-PCR 재검사를 통해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해제, 양성일 경우 자가격리 7일 연장<br>* ①탑승 72시간 전 발급된 RT-PCR, LAMP, NAAT 방식 검사 결과서 혹은 ②24시간 내 발급된 Antigen(항원검사) 결과서<br>※ 백신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입국자는 5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면제(단, 검사 시점으로부터 5일째에 RT-PCR 재검사는 필요)<br>※ 입국 전 24시간 내 자가건강신고서 제출(https://bit.ly/2MfqRd4)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 파라과이 입국 전 14~90일 내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양성확인서(RT-PCR, LAMP, NAAT, Antigen 방식) 제출 필요<br>▸남아프리카 국가(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미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앙골라)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입국 금지<br>※ 최근 2주 이내 상기 10개국을 방문한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파라과이 거주 외국인은 입국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가 나온 경우 입국 가능<br>- △입국 시 진단검사(RT-PCR, LAMP, NAAT 방식)실시 △입국 후 자신의 거주지 또는 호텔 등의 시설에서 10일간 자가격리 △입국 후 5일째 되는 날 PCR 재검사 실시 |
| | 페루 | ▸유효한 거주증 또는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소지자 대상 입국 허용(사전에 주한 페루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및 수령 필요)<br>※ 21.11.1.부터 모든 입국자는 백신접종확인서(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후 입국) 또는 PCR 음성확인서(여행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 지참 의무<br>※ △여행자 건강상태확인 서약서 작성(페루 이민청 온라인 제출), △페루 출입국 시 여행 출발 48시간 이내에 페루 이민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출입국 사전 등록' 실시<br>※ 21.7.11.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중 체온 확인 및 문진 등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없는 경우는 격리 없음(유증상자의 경우 14일간 격리)<br>※ 22.1.2.까지 남아공 및 보츠와나에서 출발(경유)하는 비거주 외국인 입국 제한 (기간 연장 가능성 다대)<br>- 거주 외국인의 경우 △백신접종증명서와 PCR 음성확인서(여행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 지참, △14일간 의무 격리 실시<br>※ 22.3.1.까지 비거주 외국인의 육로 입국 제한 |
| 유럽 | 그리스 | ▸그리스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국적 불문)은 출국 이전 travel.gov.gr에서 승객위치확인서 작성하고,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검사) 지참 필수(만 5세 이상)<br>※ 21.12.24.~22.1.2. 기간 입국하는 모든 승객(국적 불문)은 입국 후 2회(2일차, 4일차) 진단검사 필수<br>※ 비EU 국가의 경우 특별입국허가 신청 필요<br>- 단, **한국** 포함 42개국(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UAE, 이스라엘, 러시아, 싱가포르,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캐나다, 벨라루스, 바레인, 카타르, 중국, 쿠웨이트,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일본, 레바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요르단, 몰도바, 브루나이, 코소보, 산마리노, 안도라, 바티칸, 모나코, 터키, 대만, 아르헨티나, 인도, 우루과이, 오만, 칠레, 멕시코) 국민 및 영주권자는 특별입국허가 신청 없이 입국 가능<br>※ 21.11.27부터 아프리카 9개국*에서 출발하는 승객(국적불문)은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주재국의 그리스 영사관에 특별입국허가를 신청, △그리스 입국 시 입국자 전원 10일간 격리 조치, △진단검사 3회(입국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입국시 신속검사, 격리해제전 PCR 검사) 실시 의무<br>* 9개국 :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잠비아, 짐바브웨<br>* 9개국과 그리스 구간을 운항하는 항공기 직항편은 없으며, 그리스 정부는 승객위치확인서를 통해 승객의 출발 국가 및 전체 이동 경로를 추적<br>※ 입국 시 무작위 코로나19 신속검사를 진행하며 양성 판정 시 격리시설로 이동 후 10일 간(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는 7일 간)격리 조치 / 격리종료일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실시 필수<br>※ 아르헨티나, 러시아, 인도, 우루과이, 오만, 칠레 국민(영주권자 포함)은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신속검사 또는 PCR 검사) 실시<br>※ 아래 16개 국가에서 출발한 승객(국적 무관) 중 백신접종증명서(또는 코로나19 회복증명서) 미소지자는 입국 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신속검사 실시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 알바니아, 터키, 불가리아, 북마케도니아, 러시아, 이집트, UAE, 중국, 조지아, 인도, 리비아, 모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쿠바, 파키스탄<br>※ 21.5.14부터 도서지역 포함 지역간 이동을 허용<br>- 9.13부터 그리스 국내 항공/기차/시외버스 탑승시 또는 도서지역 방문을 위해서는 △백신접종 증명서(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코로나19 음성확인서(탑승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48시간 이내 신속검사), △코로나19 회복증명서(확진판정 이후 30-90일 유효) 중 1개 서류 지참 필수<br>- 4-17세 승객은 자가진단 음성확인서(목적지 도착 전 24시간 이내 검사, 개인작성) 지참 필수 |
| | 네덜란드 | ▸출발지별 입국 제한 (모든 교통수단 망라)<br>가. EU/쉥겐 역내<br>- 안전 국가 출발자 : 코로나 관련 지참 서류 없음, 격리 불필요 / 항공으로 이동시 건강상태 신고서(health declaration) 소지<br>- 위험 국가 출발자 : ①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②코로나 완치 확인서 또는 ③코로나 음성 확인서(탑승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NAAT(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 검사 실시) 소지, 격리 불필요 / 항공으로 이동시 건강상태 신고서(health declaration) 소지<br>※ 국가별 분류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br>government.nl/topics/coronavirus-covid-19/visiting-the-netherlands-from-abroad/checklist-entry/from-the-eu<br>나. EU/쉥겐 역외<br>- **위험지역에 대한 EU 입국 금지(EU entry ban)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국이 제한되나, 예외 인정 대상:** △EU 또는 쉥겐 국가 국민, △EU 또는 쉥겐 국가 발급 체류증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학업, 연구, 직업상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중요한 사유(배우자 출산, 직계가족 장례식 등)에 의한 가족 방문, △경유승객, △한국 등 코로나19 안전국 체류자,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등은 추가적인 요건에 따라 네덜란드 입국 가능<br>- 21.12.22.부터 EU/쉥겐 역외(**한국 포함**)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백신접종 완료자, 코로나19 회복자 포함)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br>*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NAAT(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 검사 결과서<br>-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우려 초고위험국 출발자 :** △남아공, △레소토, △에스와티니, △보츠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 △말라위에서 출발자 입국 금지 / 나이지리아는 입국은 가능하나 PCR 검사 및 10일 자가격리 필요<br>· 단, △거주지로 귀환을 위한 네덜란드 및 EU국적자, 네덜란드 거주자,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인도주의적 사유 입국은 예외<br>· 예외 승객 입국시 도착후 24시간 이내 NAAT(PCR) 검사결과서 또는 48시간 이내 NAAT(PCR) 검사 결과서와 24시간 내 신속검사 결과서 지참 / 도착 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및 10일간 자가격리(PCR 음성 확인시 격리 기간 5일로 단축)<br>- **초고위험국 출발자**: ①EU 입국 금지(EU entry ban) 예외 해당 ②백신접종 시에도 10일간 자가격리, (PCR 음성 확인시 격리 기간 5일로 단축, 자가격리 신고서(quarantine declaration) 소지) ③백신증명서·회복증명서 소지시에도 음성확인서(탑승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NAAT(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 검사 실시) 소지 및 ④항공으로 이동시 건강상태 신고서(health declaration) 소지<br>※ 격리면제 대상 : government.nl/topics/coronavirus-covid-19/visiting-the-netherlands-from-abroad/self-quarantine/exceptions-mandatory-quarantine 에서 확인 (DCC 형태 회복증명서 소지자, 12세 이하, 경유승객, 12시간 이하 체류자, 장례식 참석 등)<br>- **고위험국 출발자**: ①EU 입국 금지(EU entry ban) 예외 해당 ②코로나 회복 증명서가 있더라도, 만12세 이상인 경우 코로나 음성확인서 소지(백신 접종시에는 불필요) 및 ③항공으로 이동시 건강상태 신고서 소지 / 자가격리불요<br>- **안전국(한국 포함) 출발자**: ①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그리고 ②(21.12.22.부터 |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조 치 사 항</th></tr>
<tr><td></td><td></td><td>백신접종증명서/회복증명서 소지 시에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탑승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NAAT(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 검사 실시) 소지 / 자가격리 불요<br><br>※ 백신 접종 증명서: EMA 또는 WHO 승인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1차 AZ - 2차 화이자 교차접종 인정), 백신접종 신고서(vaccine declaration) 지참<br><br>- 8.14.부터 얀센 백신을 접종한 경우 접종 완료 후 28일 이상 경과 필요 (8.14. 이전 접종한 경우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하면 유효)<br><br>※ NAAT: PCR, RT PCR, LAMP, TMA, mPOCT 포함<br><br>다. 코로나 관련 서류(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회복증명서 등) 지참 의무 면제 대상 : 12세 미만, 경유 승객(공항 환승구역에만 1일 이내 체류), 외교관 여권 소지자, 초국경 근로자 및 학생 등<br><br>라. 항공기 탑승객(출발지, 연령, 국적, 경유 불문) 공동 지참 서류: 건강상태 신고서(health declaration)</td></tr>
<tr><td></td><td>노르웨이</td><td>※ 입국 시 격리의무 등 방역조치<br><br>
<table>
<tr><th>분류</th><th>사전등록</th><th>음성확인서 제출</th><th>입경지점 검사</th><th>격리</th></tr>
<tr><td>백신접종완료자, 6개월 내 코로나 감염력 있는 자 (노르웨이 정부 인정 백신증명서 제출 가능)</td><td>O</td><td>X</td><td>O (신속항원검사 / 결과 확인시까지 검사소에서 대기 원칙)</td><td>X</td></tr>
<tr><td>18세 이상 백신접종 미완료자 (노르웨이 정부 인정 백신증명서 제출불가한 경우)</td><td>O</td><td>O (노르웨이 도착전 24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항공편 이용시 첫 비행편 출발 전 24시간)</td><td>O (신속항원검사 / 결과 확인시까지 검사소에서 대기 원칙)</td><td>O (자가격리 10일 / 격리 3일 이후 PCR 음성 후 해제)</td></tr>
<tr><td>16세 이상 18세 미만 백신접종 미완료자</td><td>O</td><td>X</td><td>O (신속항원검사 / 결과 확인시까지 검사소에서 대기 원칙)</td><td>X (격리 의무는 없으나 도착 3일 후 검사 권고</td></tr>
<tr><td>16세 미만</td><td>X</td><td>X</td><td>O (신속항원검사 / 결과 확인시까지 검사소에서 대기 원칙) 불가피한 경우 면제 가능</td><td>X (격리 의무는 없으나 도착 3일 후 검사 권고</td></tr>
</table>
<br>※ 노르웨이 정부 인정 백신증명서는 아래 웹페이지에서 목록 확인 가능<br>(한국에서 발급되는 백신접종 증명서는 현재 불인정)<br>ec.europa.eu/info/live-work-travel-eu/coronavirus-response/safe-covid-19-vaccines-europeans/eu-digital-covid-certificate_en#recognition-of-covid-certificates-from-third-non-eu-countries<br>※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준수 의무는 아래 웹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확인 가능<br>helsedirektoratet.no/english/corona/quarantine-and-testing-in-norway-these-rules-apply-to-you</td></tr>
<tr><td></td><td>덴마크</td><td>1. 모든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br><br>※ 21.12.27.부터 3주간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는 덴마크입국 시 아래 3가지 서류 중 한 가지를 제출해야 하며, 상대 국가 및 지역의 코로나19 안전 상황에 따라 그 외 입국요건 상이<br><br>- 덴마크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td></tr>
</table>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 덴마크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항원검사 음성확인서<br>- 최근 6개월 이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br>※ 단, 덴마크 체류국민(덴마크인 및 장기비자소지자)의 경우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지참할 것인지 입국 후 24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인지 선택 가능<br>※ (상기 서류 제출 예외 적용 대상) △15세미만 어린이, △경유 목적 등 입국 후 24시간 이내 덴마크를 떠나는 사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감염검사가 불가한 사람 등<br>2. **거주지역에 따른 입국 요건**<br>※ **(EU/쉥겐 국가 거주자)** EU/쉥겐국가에 거주하면서 ①유럽의약청(EMA) 승인 백신*을 완전 접종한 후 (교차접종 인정) 14일이 경과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백신 증명서를 제출 가능하거나 또는 ②코로나19 감염 후 14일이 지나고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또는 ③입국 24시간 전 실시한 PCR음성확인서를 지참한 경우 여타 제한사항 없이 덴마크 입국 가능하며, 입국 후 감염검사 및 격리의무 면제 (단, 12.27부터 3주간 백신접종자의 경우에도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되며 자세한 사항은 상기 1번 항목 참고)<br>* (EMA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얀센<br>※ **(OECD 국가 거주자)** OECD 국가에 거주하면서 ①유럽의약청(EMA) 승인 백신*을 완전 접종한 후 (교차접종 인정) 14일이 경과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백신 증명서**를 제출 가능하거나 또는 ②코로나19 감염 후 14일이 지나고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또는 ③입국 24시간 전 실시한 PCR음성확인서를 지참한 경우 여타 제한사항 없이 덴마크 입국 가능하며, 덴마크 입국 후 감염검사 실시 및 격리의무 면제 (단, 12.27부터 3주간 백신접종자의 경우에도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되며 자세한 사항은 상기 1번 항목 참고)<br>* (EMA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얀센<br>** 이름, 생년월일, 접종 백신명, 시행일(1,2차 모두) 포함<br>※ **(코로나19 저위험 국가 거주자)** 덴마크가 지정한 코로나19 저위험 국가 및 지역에 거주하면서 ①유럽의약청(EMA) 승인 백신*을 완전 접종한 후 (교차접종 인정) 14일이 경과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백신 증명서를 제출 가능하거나 또는 ②코로나19 감염 후 14일이 지나고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또는 ③입국 24시간 전 실시한 PCR음성확인서를 지참한 경우 여타 제한사항 없이 덴마크 입국 가능하며, 덴마크 입국 후 감염검사 실시 및 격리의무 면제 (단, 12.27부터 3주간 백신접종자의 경우에도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되며 자세한 사항은 상기 1번 항목 참고)<br>* (EMA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얀센<br>※ **(고위험 국가 및 지역)** 상기 언급되지 않은 모든 국가 및 지역은 고위험국가로 분류되며, 고위험 국가 및 지역 거주자는 △입국 전 실시한 음성확인서 지참은 물론이고 △입국 후 24시간 이내 감염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10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 실시<br>3. **특정 공항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입국 후 검사 의무**<br>※ 도하 Hamad 국제공항, 이스탄불 IST 공항에서 (경유 포함) 덴마크로 입국한 경우 입국 즉시 코로나19 감염검사 실시<br>▸국가 분류: <u>한국</u>은 OECD 회원국이자 덴마크가 지정한 코로나19 안전국가<br>※(EU/쉥겐국가) Andorra,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Croatia,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ta, Monaco, the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San Marino,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Czech Republic, Germany, Hungary,and Vatican City, Austria<br>※(OECD국가)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olombia, Costa Rica, Czech Republic,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ia, Slovenia, South Kore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br>※(덴마크가 지정한 코로나19 안전국가 및 지역) Australia, Argentina, Bahrain, Canada, Chile, Colombia, Indonesia, Kuwait, New Zealand, Peru, Qatar, Rwanda, Saudi Arabia, South Korea, Uruguay, Hong Kong, Macau and Taiwan |
| | 독일 | 1. **(입국규제)** 직전 6개월간 체류지 기준 EU/EFTA 역외지역으로부터의 비 EU/EFTA 국적자 입국 원칙적 금지<br>- (예외1) 한국,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인도네시아, UAE, 바레인, 카타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19개 국가/지역으로부터는 **입국 가능**<br>- (예외2) 독일 내에서 인정되는 백신으로 접종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경우 입국 가능<br>- 이외 긴급한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나 EU/쉥겐 지역 내 장기 체류할 권리를 가진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br>- 독일을 경유하여 EU/쉥겐 내 국가로 가는 경우 최종목적지 국가에서의 입국 허가 필요<br>2. **(입국시 증명서 제출의무)** 한국발 포함 육상, 해상, 항공 등 교통수단을 불문하고 모든 만 6세 이상 입국자는 음성확인서 또는 완치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필요(입국 수속시에도 제출 요구 가능)<br>- 만 6세 미만에 대해서는 상기 의무 미적용<br>- 독일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도 제출 필요<br>- 독일 입국 전 10일 내에 변이바이러스지역에 체류한 경우 반드시 음성확인서 필요(완치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로 불충분)<br>※ **(음성확인서)** 독일 도착 또는 도착 예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48시간 이전 검체 채취된 검사여야 하며, 교통수단에 탑승하여 입국하고자 핵산증폭검사(PCR, PoC-NAAT 또는 기타 핵산증폭검사)를 받은 경우 교통수단 탑승 또는 탑승 예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48시간 이전 검체 채취된 검사 결과 가능<br>- 항원검사는 WHO기준인 민감도 80%이상, 특이도 97%이상 충족 필요<br>- 변이바이러스지역으로부터 독일 입국 시에는 반드시 핵산증폭검사(PCR 등) 음성확인서 제시(항원검사 사용 불가)<br>※ **(완치확인서)** PCR 등 핵산증폭검사를 통해 확인된 최소 28일에서 최대 6개월 이전 코로나19 감염증명서<br>- 완치확인서 소지 및 무증상이어야 완치자 해당<br>※ **(백신접종증명서)** 독일 Paul-Ehrlich-Institut에서 명시한 백신(현재 Comirnaty, Janssen, Moderna, Vaxzevria)을 활용, (필요한 경우 2차까지) 접종 완료 후 최소 14일이 경과(예: 12.1 2차 접종 시 12.16 0시부터 가능)하여야 하며(완치자의 경우 백신 1도즈 접종 직후 충족), 독일어/영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로 작성된 종이 또는 디지털 형태의 증명서<br>- Vaxzevria-Comirnaty, Vaxzevria-Spikevax, Comirnaty-Spikevax, Spikevax-Comirnaty 순의 교차접종도 인정<br>3. **(방역조치)** 독일 도착 직전 10일 이내 체류지 기준 고위험지역/변이바이러스지역에 체류한 적 있는 내/외국인 모두 입국제한 조치(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음성확인서 제출, 자가격리) 대상(상세내용 아래 참고)<br>※ 고위험지역, 변이바이러스지역은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RKI 발표 확인 필요**(12.1 현재 한국은 포함되지 않음)**<br>○ **(고위험지역)** △입국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탑승 전 및 입국 수속 시 음성확인서 또는 완치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10일간 자가격리(격리는 음성확인서/완치확인서/백신접종증명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하여 해제 가능하나, 음성확인서를 통한 해제는 입국 최소 5일 이후부터 검사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실시를 통해 가능하며 완치확인서/백신접종증명서의 경우 입국 이후부터 조기 해제 가능)<br>- 고위험지역에서 중간체류 없이 단순 경유한 경우나 독일에서 단순 경유만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국신고서 제출과 자가격리 의무는 없으며 증명서 제출의무는 존재<br>- 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입국 5일 이후 격리 자동 종료<br>- 격리 기간 중 본인이 방문했던 고위험지역이 고위험지역 지정에서 해제될 경우 격리 종료<br>○ **(변이바이러스지역*)** △입국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탑승 전 및 입국 수속 시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완치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로는 불충분) 제출 △14일간 자가격리(증명서 등을 통한 조기 해제 불가능)<br>*남아공,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레소토, 보츠와나, 모잠비크, 짐바브웨, 말라위, 영국<br>※ 변이바이러스지역 방문 후 독일 입국시 항공사 등이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착 이후 추가 PCR검사가 요구될 수 있음<br>- 변이바이러스지역에서 중간체류 없이 단순 경유한 경우나 독일에서 단순 경유만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국신고서 제출과 자가격리 의무는 없으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존재<br>※ 변이바이러스 지역에서 독일로의 승객 운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독일 국적자 및 장기체류권자, 독일 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단순경유 목적으로 운송, 기타 특수한 상황 등 일부 예외)<br>- 격리기간 중 본인이 방문했던 변이바이러스 지역이 변이바이러스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격리 종료, 고위험지역으로 낮춰질 경우 고위험지역에 해당하는 격리 규정 적용 |
| | 라트비아 | ▸ 21.6.26.부터 라트비아 입국시 주재국 질병예방통제센터(SPKC) 발표 국가별 리스트(매우 위험국가(적색), 위험국가(황색), 안전국가(녹색))에 따라 제한조치 변경 (spkc.gov.lv 매주 금요일 업데이트)<br>○ 매우 위험국가(적색) :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국가<br>- 백신 접종자 및 완치자 : 10일간 자가격리 / 입국 전* 및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br>- 백신 미접종자 : 10일간 자가격리 / 입국 전 및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br>○ 위험국가(황색) : 최근 2주간 10만명 당 확진자 수 75명 이상 국가(**한국 포함**)<br>- 백신 접종자 및 완치자 : 자가격리 면제 / 코로나19 진단검사 면제<br>- 백신 미접종자 : 10일간 자가격리 / 입국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br>○ 안전국가(녹색) : 최근 2주간 10만명당 확진자 수 75명 미만 국가<br>- 백신 접종자 및 완치자: 자가격리 면제 / 코로나19 진단검사 면제<br>- 백신 미접종자 : 자가격리 면제 / 입국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br>*비행기 탑승 72시간전 PCR 음성확인서 또는 48시간전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br>**입국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br>※ 모든 입국자는 도착 48시간 전 covidpass.lv에 접속하여 질문서 작성 (QR코드 부여)<br>※ 경유지에 따라 도착시 PCR 검사 및 자가격리 의무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항공권 발권시 반드시 고려 요망<br>※ EMA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만 인정되며, 모든 접종 과정 완료 후 15일 경과 조건(1차 AZ – 2차 화이자/모더나 교차접종도 인정)<br>※ 백신접종 및 회복자 증명서 : EU Digital Certificate 인정<br>▸ 21.12.24~22.1.11까지 일부 EU・EEA 국가(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아일랜드, 독일) 및 러시아 출발 모든 입국자는 라트비아 입국시 비행기 탑승 72시간 전 PCR 음성확인서 또는 48시간 전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 육로 입국시 입국 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필수<br>※ 12세 미만, 경유자, 운송 업체 종사자, 항공 승무원 등은 예외<br>▸ 최근 10일 이내 남아프리카 8개국(남아공,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레소토, 에스와티니, 말라위, 모잠비크)을 방문한 제3국 국민 입국금지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 최근 10일 내 상기 국가에서 돌아온 라트비아 국민 및 EU 영주권자는 라트비아 도착 72시간 전, 도착 후 24시간 이내, 도착 후 8일 이내 총 3회의 Covid19-RNA(PCR)검사 결과 제출 의무 및 10일간 여행숙소에서 격리. 불가능 시 자택에서 격리하며 자택격리 시 가족 구성원도 격리 |
| | 러시아 | ▸21.4.16.부터 러시아 항공운항 재개 국가*를 통한 우리 국민의 러시아 입국 허용<br>※ 20.9.27.부터 한국(인천)과 정기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여 우리 국민의 러시아 입국 허용(육로입국은 불허용)<br>* 러시아 항공운항 재개 국가<br>- <u>한국,</u>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독일, 레바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디브, 몰타, 몽골, 미국, 바레인, 바하마,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세이셸, 스리랑카,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영국, 오스트리아,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마카오, 대만, 지부티, 체코, 카자흐스탄, 카타르, 코스타리카, 쿠바,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튀니지, 페루,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br>※ 블라디보스토크행 임시항공편의 경우 유효한 비자 소지자 외에도 출국 항공권을 소지한 무비자 입국자의 탑승이 가능하나, 추후 변경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여 탑승 가능 여부 확인 필요<br>※ 21.11.28.부터 아래 국가* 국민 및 아래 국가를 10일 이내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 금지<br>*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에스와티니, 탄자니아, 홍콩, 케냐<br>- 중국, 이스라엘,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특별검사<br>▸입국 시 러시아 도착 전 2일 이내에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노어) 제출 필요<br>※ 러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 직원들이 공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무작위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br>- 인도발 러시아 도착 모든 항공편 탑승객은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br>※ 유증상자로 판단되는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검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명령 발부 가능성 있음<br>※ 노동비자(HQS 포함) 소지자의 경우 14일 격리<br>- 초청장 발부 기관의 판단에 의해 14일 격리 여부 결정<br>※ 러시아와 항공운항이 재개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은 러시아 도착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 러시아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각각 PCR 검사(총 2회) 실시 필요(입국 후 음성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음성 확인 후 등교 수업 가능)<br>▸20.3.30.부터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제한<br>※ △영주권자,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 선박 승무원 등은 예외 |
| | 루마니아 | ▸제3국(EU, EEA, 스위스 외)으로부터 루마니아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 또는 무국적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 부여<br>※ (21.12.20.~) 모든 해외입국자(내외국민 불문)는 입국 전 24시간 이내 루마니아 내 거소지 신고서(PLF) 작성 의무<br>- 정부 공식 사이트(https://plf.gov.ro)를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출력 불요)<br>※ (21.12.10.~22.1.8.) EU 역외국가로부터 입국 시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PCR 음성확인서(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검사) 제시 의무<br>- (백신접종자) PCR 음성확인서 제시해야 10일 자가격리 면제<br>- (백신미접종자) PCR 음성확인서 제시해야 10일 자가격리 후 입국 가능<br>※ 격리 예외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루마니아 내 72시간 이내 체류 예정이며,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루마니아에서 24시간 이내 환승하는 여행객, △헝가리, 불가리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간 국경을 넘나드는 근로자(계약관계 증빙 필요) 등<br>※ 남아프리카 8개국(보츠나와,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짐바브웨)으로부터 루마니아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 또는 무국적자 입국 금지 |
| | 룩셈부르크 | ▸EU+ 역외국가에서 룩셈부르크行 여행자 2021.12.31.까지 입국 불가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 (입국금지 적용 예외 지역)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아랍 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요르단, 쿠웨이트, 나미비아, 뉴질랜드, 페루, 카타르, 르완다, 우루과이, 홍콩, 마카오, 대만<br>※ (입국금지 적용 예외 상황) 유럽내 장기체류자격 보유자, 보건분야 종사자, 국경근로자, 대중교통 종사자, 외교단, 경유승객, 학업목적의 여행, 긴급한 가족문제로 여행하는 경우 등<br>※ 항공편으로 룩셈부르크에 입국하는 12세 2개월 이상 모든 여행자는 룩셈부르크행 항공편 탑승 전 △EU회원국 및 쉥겐국가 발행한 EMA 승인 백신접종증명서(2회 접종 필요 백신의 경우 2회차 접종 직후, 1회 접종 완료 백신의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이후), △완치증명서(입국전 6개월 이내 확진 이력이 있는자), △음성확인서(출발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또는 48시간 이내 실시된 신속항원검사)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 필요<br>- (룩셈부르크 인정 제3국 백신접종 증명서) 한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브라질, 카보베르데,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엘살바도르, 미국, 그루지아, 페로제도, 인도, 이스라엘, 일본, 레바논, 모로코, 몰도바, 모나코, 뉴질랜드, 파나마, 북마케도니아, 영국, 산마리노, 세르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토고, 터키, 우크라이나, 바티칸국 발행 증명서<br>- 음성확인서 발급 언어: 룩셈부르크 행정언어 중 하나 또는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번역본과 함께 제시<br>▸(2022.1.14.까지) 룩셈부르크 입국 14일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에 머물렀던 승객의 룩셈부르크 입국시 △도착시 PCR 검사 및 7일간 자가격리, △6일차 PCR 재검사 실시 (검사실시 거부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
| | 리투아니아 | ▸모든 입국자(한국발 포함)는 입국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또는 입국 48시간 이내 발급된 항원(antigen)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br>※ 음성확인서 소지 예외 : 12세-16세 미만 연령 아동(입국 후 자가격리 실시), 12세 미만 연령 아동(입국 후 자가격리 미실시), 입국일 기준 최초 양성 판정일로 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코로나19 완치자, EU지역에서 허용된 백신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한 자(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2회차 완료, 얀센은 1회 접종자)<br>※ 모든 입국수단(항공, 차량 등) 탑승 전 48시간 이내 (keleiviams.nvsc.lt/en/form)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QR코드를 받아 탑승 시 제시<br>※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영어/리투아니아어/러시아어로 발급<br>▸모든 입국자는 10일 자가격리 의무(7일 후 자부담 검사, 음성 판정시 격리 해제)<br>※ 자가격리 예외: 12세 미만 연령 아동, 입국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입국 48시간 이내 발급된 항원(antigen)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12세-16세 미만 연령 아동, 입국일 기준 최초 양성 판정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코로나19 완치자, EU지역에서 허용된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회차 완료, 얀센은 1회 접종자)<br>▸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짐바브웨발 모든 입국자는 입국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입국 48시간 이내 발급된 항원(antigen)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br>※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자가격리 실시<br>- 입국 후 3일 이내, 7-10일 기간 자부담으로 진단검사 2회 실시(2회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시 격리 조기 해제) |
| | 모나코 | ▸EU회원국, 쉥겐국가, 그린존 20개국*(한국 포함)에서 출발하는 우리 국민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 △탑승 전 48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19 완치증명서(15일~6개월 이내의 코로나 양성확인서) 중 한가지 제출 필요<br>* 한국, 미국, 캐나다, 홍콩, 이스라엘,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알바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보스니아, 브루나이, 코소보, 레바논,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바누아투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 아래 조건하에 백신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없이도 입국 가능<br>-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 후 14일 경과<br>- 얀센 백신 접종 후 28일 경과 |
| | 몬테네그로 | ▸21.12.2.부터 모든 내외국민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EU 인정 BAT 신속항원 음성확인서(입국 전 48시간 이내 발급), △백신 접종증명서(마지막 접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과, 교차접종 허용), △코로나19 완치 확인 가능한 PCR 양성 확인서(입국일 기준 10일 이상 180일 이내 발급) 중 택1 소지 의무<br>※ 18세 미만 동반 미성년자 상기 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br>※ 상기 서류 미소지 시 몬테네그로 국민 및 체류허가 소지자에 한해 입국 허용<br>- 10일 자가격리(단, 입국 6일 후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격리 해제) |
| | 몰도바 | ▸21.11.28부터, 최근 14일 내 남아공, 레소토,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말라위를 방문한 외국인 몰도바 입국 금지<br>▸그외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아래 문서 중 1가지 소지 시 몰도바 입국 허용(루마니아어, 영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노어 문서만 인정)<br>1) 입국전 최소 14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시노팜, 스푸트니크 V, 코로나백, 얀센)<br>2) 입국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PCR검사 음성 결과 문서<br>3) 입국전 48시간 이내에 시행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 문서<br>4) 입국전 180일 이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복했음을 확인하는 문서(회복 후 15일 이후부터 인정)<br>5) 입국전 90일 이내에 시행된 코로나19 항체검사 양성 결과 문서<br>※ 위 확인문서가 없는 입국자는 입국후 14일 자가격리 시행<br>- 입국 후 시행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확인될 경우, 자가격리 7일 경과 후 종료 가능<br>- 자가격리 면제 대상: △12세 이하 아동, △유학/학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18세 이하인 자, △국제화물/여객차량 기사 및 승무원,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하는 자, △외교관여권/공무여권 소유자, △경유승객(24시간 이내), △몰도바 법원/법집행기관으로부터 소환된 자<br>※ 입국시 발열 등 유증상자는 즉각 격리 및 진단결과에 따른 병원 이송 등 필요조치 실시(격리조치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출국 불가)<br>- 외국인들은 몰도바에서 코로나 진단 및 치료시, 가입의료보험 또는 자비부담으로 진행 |
| | 벨라루스 |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지참 필요(단, 민스크 공항 환승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24시간 이내 경유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며 경유 항공권 소지 필요)<br>※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PCR 음성확인서 소지를 권장<br>※ (PCR 음성확인서) 입국 기준 3일 이내(예: 1.5 입국시 1.2 이후 검사 필요, 1.1 검사는 불인정)에 검사하여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발급되고 성명 기재 필수<br>※ (백신접종 증명서) 백신 종류 무관(교차접종 인정), 증명서에 성명 및 접종일자 표기,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발급, 접종 후 한달 이상 경과되고 12개월 미경과 필요<br>※ 입국자 자가격리는 불요하나, 입국시 유증상인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여 검사 실시 후 확진자는 자가격리 조치<br>▸육로를 통한 벨라루스 입출국 한시적 제한<br>※ △20.11.1.부터 외국인의 벨라루스 육로 입국 제한, △20.12.21.부터 벨라루스 국민 및 외국인의 육로 출국 제한 |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아래 적시한 확인서/증명서들 가운데 한 가지를 제시하면 제한 없이 입국 가능<br>※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단, 유럽발 입국자는 진단검사 시점부터 48시간, 비유럽발 입국자는 진단검사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확인서),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백신 2회 접종증명서(얀센/존슨앤존슨은 1회), △입국전 14~180일 사이 회복확인서<br>※ 상기 입국 관련 확인서/증명서를 소지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이하 아동은 제한 없이 입국 가능<br>※ 체류허가소지자(영주권자 포함)의 경우 출국 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 방문하고 48시간 이내에 재입국할 시 상기 확인서/증명서 소지 불요(단, 여권 내 출입국 스탬프로 출입국 사실 증명 필요)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북마케도니아 | ▸21.9.1.부터 국적불문 모든 북마케도니아 입국자는 ①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②코로나19 회복증명서(회복일로부터 45일 이내), ③입국전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지 중 1가지 제출<br>* 인정백신 종류 : EMA 승인 백신, 시노백, 시노팜, 스푸트닉V<br>※ 상기 서류 미제출 입국자는 7일 의무 자가격리<br>- 격리기간 중 PCR 음성결과지 제출 시 격리기간 5일로 단축 가능<br>※ 북마케도니아를 경유하는 외국인은 5시간 이내 출국해야 하며, 입국시 서명한 신고서를 출국시 제출<br>▸국적불문 모든 북마케도니아 출국자는 ①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2회이상 접종), ②코로나19 회복 증명서(회복일로부터 45일 이내), ③출국전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지, ④출국전 48시간내에 시행된 신속항원결과지 중 1가지 제출 필요 |
| | 불가리아 | ▸시행기간: 2021.12.1.-2022.3.31<br>※ **(기본원칙)** 각 지역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①녹색지역, ②주황지역 및 ③적색지역으로 구분하여 입국조치 적용(해당 지역구분표는 수시 업데이트되는바, 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요망)<br>- ①녹색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명 이하 또는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200명 사이이며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미만일 경우<br>- ②주황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200명 사이이며 7일간 검사양성률이 4% 이상일 경우, 또는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200-500명 사이일 경우<br>- ③적색지역은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충분한 공식정보 접근 및 관련정보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가 어렵거나 인구 10만 명당 검사 수가 300개 미만인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발견 여부 및 규모와 전파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br>※ **① 녹색지역에서 입국시**<br>-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 포함된 유사 서류 제출 필요<br>-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10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후 72시간 이후 시행된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br>※ **② 주황지역*에서 입국시**<br>*적색지역 해당하지 않는 모든 비EU 국가(한국포함) 주황지역으로 간주<br>-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이 포함된 유사 서류 제출 및 입국자 5%에 대한 (무작위) 신속항원검사<br>- 상기 서류 제출 요건 미충족시, 10일간의 의무자가격리 시행 및 입국 후 72시간 이후 시행된 음성결과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br>※ **③ 적색지역에서 출발시**<br>- 불가리아·EU/EEA/스위스/영국 및 EU디지털증명서와 동등간주 국가 시민 및 장기거주자와 그 가족, 의료인력, 정부대표단 등 예외적 입국가능<br>- 입국시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 △코로나19 완치, △입국전 72시간내에 시행된 PCR 음성결과를 증명하는 EU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또는 동일내용 포함된 유사 서류 제출 및 입국자 5%에 대한 (무작위) 신속항원검사<br>- (11.28부터 시행) 모잠비크, 보츠와나, 남아공, 레소토, 에스바티니, 나미비아, 짐바브웨 출발시 불가리아 시민 및 장기거주자와 그 가족에 대해 예외적 입국 허용(△10일간의 의무자가격리, △입국시 의무신속항원검사, △입국후 10-12일 사이 시행한 PCR 음성결과 지역보건국 제출)<br>※ 12세 미만 어린이는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불요<br>※ 백신접종완료 기준: 아래 인정 백신별 접종횟수 완료 후 14일 경과<br>- 화이자(2), AZ(2), 모더나(2), 얀센(1), 코비쉴드(2), 시노팜(2), 시노백(2), 스푸트닉V(2) (AZ와 화이자 각1회 교차접종도 접종완료 간주) |
| | 사이프러스 | ▸각 국가를 Green, Orange, Red, Grey 범주 국가로 구분하여 Green, Orange, Red 범주 국가로부터의 입국 원칙적 허용, Grey 범주 국가의 경우 예외적 입국 허용<br>※ **한국**은 21.12.2. 기준 Red 범주 국가로 분류 ⇒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검사) 또는 한국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EMA 승인 백신, Sputnik, Sinopharm, Sinovac) 지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참 필요,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자부담) 및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격리 필수<br>- EU 회원국 포함 60여개국(**한국 포함**)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EMA 승인 백신, Sputnik, Sinopharm / 교차접종 인정) 소지자(국적 및 국가범주 불문)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가능,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br>※ 21.12.6.-22.1.10.기간 사이프러스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국적 불문)은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시 PCR 진단검사(자부담) 의무<br>※ 21.12.15.부터 사이프러스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국적 불문)은 입국 72시간 이후 보건부 선별진료소를 방문(여권 등 신분증, 항공권 지참)하여 진단검사(Rapid Test, 무료)실시 의무<br>- 단, 3차 백신접종자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br>※ 모든 승객은 출발 전 48시간 이내 (www.cyprusflightpass.gov.cy) 사이프러스 정부 홈페이지에서 승객위치확인서 등 제출 의무<br>▸사이프러스 입국 전 14일 이내 남아프리카 8개국(남아공,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모잠비크, 보츠와나, 말라위) 방문 또는 경유객 입국금지<br>※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 ①사이프러스 시민 ②EU 시민, 유럽경제지역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시민, 스위스 시민 ③사이프러스 체류허가증 소지자<br>- 입국허용 조건 : ①, ②, ③범주 시민은 예방접종증명서(또는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지참(12세 이상),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개인부담) 실시(12세 이상), △입국자 전원 격리시설로 이동(교통비 개인부담)하여 10일간 격리 조치(입국당일 0일로 계산), 입국 후 10일차 진단검사(무료) 실시 의무 |
| | 세르비아 | ▸모든 해외입국자는 ①입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②세르비아 또는 상호인증국* 보건당국 발급 코로나19 병력증명서(1차 검사 후 최소 15일 이상 6개월 이내 경과), ③백신접종증명서(체류허가 소지자는 백신접종국 보건당국 발행, 체류허가 미소지자는 세르비아 또는 상호인증국* 보건당국 발행) ④EU 디지털 증명서(EU국가 및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참여국* 발행) 중 택 1 소지 의무(자가격리 면제)<br>※ 상기 서류 미소지시, 세르비아 체류허가 소지자에 한해 입국허용(10일 자가격리)<br>* 증명서 상호인증국 현황(한국 불포함)<br>- 백신접종증명서(22개국): 헝가리, UAE, 체코, 슬로바키아, 조지아, 모로코, 사이프러스, 레바논, 몰도바, 아르메니아, 인도, 이집트, 벨기에,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몰타, 우크라이나,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북아일랜드<br>- 코로나19병력증명서(6개국): 미국, 스위스,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페인, 불가리아<br>-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병력증명서(17개국): 그리스,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터키, 크로아티아, 산마리노, 튀니지, 독일, 오스트리아, 안도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카보베르데,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페인<br>※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참여국(28개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카보베르데, 엘살바도르, 페로제도, 조지아,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모나코, 모로코,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나마, 산마리노, 세르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토고, 터키, 우크라이나, UAE, 영국, 바티칸<br>▸상기 서류 제출 예외 대상자(자가격리 면제)<br>※ 사업 목적(Business purpose)의 입국자(21.1.20.부터)<br>- 입국 48시간 전까지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에 입국자 정보 제출(성명, 여권번호, 구체 사업목적, 입국일과 입국지점, 항공편, 세르비아내 체류지 주소 등)<br>-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주재국에서 PCR 테스트 또는 antigen FIA 테스트 결과를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에 제출<br>※ 주변 7개국(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발 입국자 중 내국인, 세르비아 체류허가 소지 외국인 및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국 국적자(21.6.30.부터)<br>- 단,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6개국 체류허가 소지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주재국에서 antigen FIA 테스트 결과를 지역 보건소에 제출<br>- 12세 미만 어린이(12-18세 미성년자의 경우,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주재국에서 PCR 또는 antigen FIA 테스트 결과를 지역 보건소에 제출)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오미크론 변이 발생 아프리카 7개국(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짐바브웨)발 입국자는 12.2.부터 여타국 경유 여부와 관계없이 베오그라드 공항 도착 직후 PCR 검사 실시<br>※ PCR 결과 음성인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및 입국 7일 후 재검<br>※ PCR 결과 양성인 경우, 코로나19 전담 병원 이송 |
| | **스웨덴** | ▸아래 국가를 제외한 EU/EEA 역외 국가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 원칙(22.1.31.까지 유지)<br>※ 21.12.21.부터 노르딕 국가를 포함 EU/EEA로부터의 모든 입국자도 EU의 기준에 부합하는 디지털증명서(EU digital COVID certificate)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백신 접종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도착 전 72시간 내 코로나 음성 결과, 최근 6개월 내 코로나 회복 증명서) 중 한 가지 제출 의무<br>* 한국 백신접종증명서 불인정<br>※ (예외1) EU(유럽연합)/EEA(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스위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국민은 EU디지털증명서나 그에 상응하는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도착 전 72시간 내 음성확인서 또는 최근 6개월 내 회복 증명서 제출 의무<br>(예외2) 스웨덴 또는 EU 회원국에 장기 거주 지위를 갖는 자 / 스웨덴 및 EEA 국가,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스위스, 바티칸의 거주 허가를 받은 자 / 스웨덴 또는 EU 장기 거주 지위를 갖는 자도 입국시 PCR 등 코로나 음성 결과 제출 의무<br>(예외3) 스웨덴 비자 또는 EEA 국가,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스위스, 바티칸의 3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를 가진 자<br>(예외4) 스웨덴에 배우자, 법적 동거자, 21세 미만 자녀 등 가족이 있어 스웨덴 입국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br>(예외5) 영국 시민 등<br>(예외6) 아르헨티나, 호주, 바레인, 칠레, 콜롬비아, UAE, 홍콩, 인도네시아, 캐나다, 쿠웨이트, 마카오, 뉴질랜드, 페루, 카타르,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만, 우루과이 출발 외국인은 입국 전 72시간 내 검사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LAMP, TMA, antigen 검사방식 인정) 제출 의무<br>(예외7) 다음 국가에서 최소 14일 전 발행한 백신접종확인서를 제시할 수 있는 접종 완료자 및 18세 미만 동행자는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 제출 면제<br>-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엘살바도르, 파로, 조지아, 이스라엘, 모로코, 몰도바, 모나코, 북 마케도니아, 뉴질랜드, 파나마, 산마리노, 스위스, 세르비아, 싱가포르, UK+Guernsey, Isle of Man and Jersey, 토고,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 바티칸시국, UAE, 카보베르데, 레바논<br>※ 단, 각 사안별로 국경 통제 당국(스웨덴 경찰청 / polisen.se)의 판단에 따라 입국여부 결정<br>※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코로나 검사 및 자가격리 권고<br>※ 오미크론 변이 발발 관련, 남아공, 레소토,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출발 모든 입국자는 △도착 직후 및 도착 5일 후 코로나 검사 △입국 후 7일간 자가 격리 |
| | **스위스** | ▸비쉥겐국에서 출발하여 쉥겐 지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백신 미접종 비쉥겐 국적자가 근로목적이 아닌 단순 사유(여행, 사교적 방문)로 스위스 입국 시 입국 거부<br>※ 단, 일부 국가/지역*은 비필수 목적의 입국 허용 유지<br>* <u>한국,</u> 안도라, 아르헨티나, 호주, 바레인,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교황청, 아일랜드, 요르단, 쿠웨이트, 마카오, 모나코, 뉴질랜드, 카타르, 페루, 루마니아, 르완다, 산마리노,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UAE, 우루과이 등(상세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br>▸입국 허용 시 절차<br>※ (사전 전자입국 등록) 21.6.26.부터 입국 전 swissplf.admin.ch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QR코드 확인서가 개인 메일로 회신 → 입국 시 회신된 확인서(QR코드)를 제시(전자기기에 저장된 파일 및 출력본 모두 허용)<br>※ (음성확인서 제출) 백신접종 및 완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는 입국시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PCR 음성확인서(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분) 또는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 발급분)를 의무 제출 |
| | 슬로바키아 | ▸외국인의 슬로바키아 입국 가능 여부<br>※ 슬로바키아 정부는 ①쉥겐국가로부터의 입국, ②사전 온라인 등록, 입국 즉시 자가격리 의무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br>- 비쉥겐 국가로부터 입국은 슬로바키아인의 가족 및 체류허가 소지자 또는 특정국가국민(한국 포함) 등만 허용<br>- 한국 국민의 경우 기존과 같이 슬로바키아에 9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br>▸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사전등록/격리 의무를 달리 부과<br>※ 예방접종완료자의 범위(모든 백신 인정)<br>- 2회 접종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교차접종 인정)<br>- 1회 접종 백신: 1차 접종 후 21일 경과<br>- 완치자: 완치 180일 이내 1차 접종 후 14일 경과<br>※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요건<br>- EU DCC 또는 비EU국가의 정부 차원에서 발급된 백신접종증명서 인정<br>- 백신접종증명서는 영문이어야 하고, 성명, 생년월일, 백신종류 및 제조사, 회차별 접종 백신, 총 접종 횟수, 마지막 접종일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권한을 보유한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거나 전자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함 (백신 종류 불문)<br><br>**1. 사전등록 의무** (https://korona.gov.sk/en/ehranica)<br>1) 입국하는 모든 자(만 12세 2개월 이상)는 입국 전까지 사전등록 필요<br>2) 등록 예외 대상 : 단순 경유자, 운송업·응급차량·장례 관련 종사자<br>3) 등록 간편 규정 적용 주요 대상<br>(1) 예방접종완료자 : 1회 등록시 6개월간 유효<br>(2) 치료목적 입국자 등 : 1회 등록시 1주일간 유효<br>(3) EU 통근자, 주변국 통학생 등 : 1회 등록시 1개월간 유효<br>**2. 자가격리 의무(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위험국 방문자는 2-1. 참조)**<br>1) 입국하는 모든 자는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해야하며, 입국 다음날로부터 5일째부터 PCR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음성판정시 조기 격리해제<br>2) 격리 예외: 예방접종완료자<br>- 만 12세 2개월 미만 아동은 부모와 같은 조치 적용<br>3) 격리 면제 대상: 운송업 종사자, 본국 귀국 무정차 경유자 등<br>- 주요 기술자/전문가 출장 목적 입국 경우, 슬로바키아 경제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음(72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br>**2-1.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위험국 방문자의 자가격리 의무(21.12.1.부터)**<br>: 슬로바키아 입국 전 14일 중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위험국(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짐바브웨) 방문 후 입국한 경우, 강화된 격리기간 및 격리해제 기준 적용<br>-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하며, 2회 PCR 음성확인시 조기 격리해제(입국 다음날로부터 1일째 이후 1차 PCR 검사 실시, 8일째 이후 2차 PCR 검사 실시)<br>- 예방접종완료자, 운송업 종사자, 경유자, 통근자, 주요 기술자/전문가 출장 등의 경우에도 격리면제 불가능<br>**3. 항공편으로 슬로바키아에 직접 입국하는 경우**<br>1) eHranica 등록 의무 (상기 1번 참조)<br>2) 슬로바키아 교통부 등록 의무 (https://www.mindop.sk/covid/)<br>3) 자가격리 의무 (상기 2번 참조)<br>4) 안전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백신접종 여부 불문 / 12세 2개월 미만 제외)<b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 배제<br>- 입국자의 최초 출발국가가 아니라 슬로바키아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출발국가가 안전국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br>* 항공편 입국시 적용되는 안전국가 명단(10.15부터)<br>한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중국, 체코,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덴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조지아, 네덜란드, 홍콩,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캐나다, 코소보, 쿠바,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헝가리, 몰타, 몰도바, 모나코, 독일,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페인, 미국, 멕시코, 세르비아, 스위스, 스웨덴, 대만, 터키,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교황청, 아랍에미리트 |
| | 슬로베니아 | ▸슬로베니아 입국제한 관련 정부 포털 링크<br>https://www.policija.si/eng/newsroom/news-archive/104670-transit-trough-slovenia-on-way-to-another-country-allowed-within-12-hours-from-entering-clarification<br>※ 모든 슬로베니아 입국자(단순 관광객 및 경유 승객 포함) "Enter Slovenia" Web Application 온라인 등록(https://www.policija.si/enterslovenia/en)<br>※ 출발 국가별 제한 조치는 없으며 입국시 아래 증명서 중 택1 제시 의무<br>1) 코로나19 음성확인서<br>- PCR 검사 : 검사일로부터 72시간 이내<br>- 항원(Antigen) 검사 : 검사일로부터 48시간 이내<br>- 음성확인서 인정 범위 : 유럽연합(EU) 회원국, 쉥겐회원국, 호주, 보스니아, 이스라엘, 터키, 케나다, 뉴질랜드, 러시아, 세르비아, 영국, 미국에서 발급된 확인서 인정<br>- 상기 국가 외 국가에서 발급된 증명서는 아래 정보* 확인 가능시 인정<br>*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또는 신분증, 건강보험 번호), 검체 채취 일시, 발행기관, 발행일자, 보건당국(의료기관) 서명 및 도장<br>2) EU 디지털 COVID 증명서(EU Digital COVID Certificate(DCC)): 디지털 형식 또는 QR 코드(EU DCC)가 표시된 출력본<br>3) 제3국 발행 디지털 COVID 증명서: 디지털 형식 또는 QR 코드가 표시된 출력본(EU DCC와 동일 내용 포함) 또는 해당국 보건당국 발행 영문증명서<br>4) 백신 접종 증명서(2차 접종 완료시 인정)<br>- 인정 백신 종류 : 바이오엔테크/화이자, 모더나, 러시아 스푸트니크 V, 시노백 바이오테크, 시노팜,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얀센<br>- 교차접종 인정: 슬 정부 허용 백신 종류간 교차접종 인정<br>- 외국인의 경우 백신접종증명서는 영문 혹은 독문 번역본 제출 필요<br>5) 코로나19 회복 증명서: 코로나 증상 후 6개월 이내 발급된 회복 증명서 또는 10일 이상 ~ 6개월 미만 경과된 코로나19 양성판정 확인서<br>- 코로나19 (회복)완치자의 경우, 8개월 이내 백신 1회 접종 증명서 인정<br>※ 상기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서 제출 불가시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부과<br>- 슬로베니아 비거주 외국인은 본인 지정 숙소에서 10일간 자가격리 (숙소로부터 격리 가능하다는 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제시 필요)<br>- 격리 5일째 되는 날부터 PCR 검사 실시 가능하며, 음성확인시 격리 해제<br>※ 입국 시 증명서 제시의무 예외 대상<br>- 화물 차량 운전자(업무목적으로 이동 시 허용)<br>- 슬로베니아에 불필요한 정차 없이 12시간 내 단순 경유시(관련 증빙 필요)<br>- 15세 미만 미성년자(격리 미부과 및 입국이 허용되는 부모 동반 필요)<br>- 국경 지역 토지 소유 또는 임대한 자<br>- 상시 통근자<br>▸남아프리카 7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에서 출발(지난 14일간 해당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입국금지<br>※ 예외 입국 허용 : 슬로베니아 국적자 및 체류허가 소지자(단, 입국후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부과) |
| | 아르메니아 | ▸항공 및 육로 입국 가능<br>※ 모든 입국자는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어, 러시아어 또는 아르메니아어) 또는 COVID-19에 대한 예방접종증명서(1회 접종 백신의 경우 입국 최소 28일 전, 다회 접종 백신의 경우 14일전 최종 접종 완료 필요)를 제시해야 아르메니아 입국 가능<br>- 6세 미만 어린이는 PCR 음성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불요 |
| | 아이슬란드 | ▸입국 가능 여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준수 의무는 island.is/en/p/entry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확인 가능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자국민, EEA/EFTA 회원국 국민(직계가족 포함) 및 아래 입국가능 국가 출발 여행객 대상 입국 허용<br>※ (입국가능 국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바레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홍콩, 이스라엘, 요르단, 코소보, 쿠웨이트, 레바논, 마카오, 몰도바, 몬테네그로, 나미비아,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페루, 카타르,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미국, 우루과이<br>- 상기 외 유효한 사증 또는 거주허가 소지한 외국인 입국 가능<br>▸입국 허용 시 검역강화조치<br>※ 백신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또는 감염력 있는 자<br>*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교차접종 인정)<br>① 입국 전 온라인 등록 의무(능동감시 앱 설치 권고)<br>②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출발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영문 기재) 또는 감염력 증명서 제출<br>③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제출<br>④ 상기 조건 충족시 입경지점에서 검사 의무와 격리 의무 면제<br>※ 백신접종 미완료자<br>① 입국 전 온라인 등록 의무(능동감시 앱 설치 권고)<br>②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출발 72시간 이내 실시, 영문 기재)<br>③ 입경지점에서 검사<br>④ 입국 후 5일간 시설격리<br>- 격리에 적합한 거주장소가 있음을 입증할 경우 자가격리<br>⑤ 격리 5일차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격리 해제 |
| | 아일랜드 | ▸모든 해외 입국자는 △EU디지털코로나증명서 소지자(백신접종 완료 또는 과거 180일간 코로나19 완치사실 증명), △여타 백신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완치사실 증명 소지자, △PCR음성확인서(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제출자 중 한 가지 조건 해당 필요 (해당 조건을 하기 승객위치질문서에 기입) → 오미크론 변이발생에 따라 21.12.3. 이후부터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br>※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승객위치질문서( Passenger Locator Form) 제출<br>※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br>- (백신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완치자*) PCR검사(아일랜드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 또는 항원검사(antigen test, EU Rapid Antigen Test 리스트상의 Rapid Antigen 테스트만 인정, 아일랜드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 셀프검사 불허) 제출 가능<br>* 지속적으로 PCR검사 양성반응이 나오는 코로나19완치자의 경우, PCR검사 양성결과(입국일 전 11~180일 사이 검사)와 함께 항원검사 음성결과도 제출 필요<br>- (백신접종 미완료자) PCR검사만 제출 가능<br>- 11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면제(12~17세 청소년도 백신접종 미완료 및 코로나 미완치자일 경우 제출 필요)<b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으나 미제출한 입국자는 △입국 후 자가격리 및 △입국 후 36시간 이내 PCR검사 실시 의무(동 36시간 이내 PCR 검사 미실시자는 10일간 자가격리)<br>※ 해외 입국자에 대한 최소 5일의 자가격리 의무 폐기(공중보건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 PCR검사 미제출자 등에 한해 자가격리 실시)<br>※ (12.17 발표)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일부터 5일간 항원검사 매일 실시 권고<br>※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하여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과거 14일간 해외 미방문 북아일랜드발 아일랜드 입국자 제외)<br>- 과거 14일간 해외체류 후 북아일랜드를 경유하여 아일랜드 입국 시 영국의 입국제한 사항도 준수(영국 승객위치질문서 작성 필요)<br>▸EU DCC / 백신접종완료 / 코로나19 완치 증명 기준<br>※ EU디지털코로나증명서(DCC, Digital COVID Certificate) 제도(7.19부터 시행)<br>- EU국가·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로부터 입국하는 자(과거 14일간 여타 국가 미방문) 중 '백신완전접종자' 및 '과거 180일 기간동안 코로나19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제출자'<br>※ 백신접종완료자(fully vaccinated)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 화이자(Phizer-BioNtecn) : 2차 접종 후 7일 경과<br>- 모더나(Moderna)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br>- 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Vaxzevria(Covishield) : 2차 접종 후 15일 경과<br>- 존슨앤존슨/얀센(Johnson&Johnson/Janssen)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br>- 시노백(Sinovac)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br>- 시노팜(Sinopharm)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br>- Covaxin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br>- 상기 백신에 대한 교차접종 인정<br>- PCR 양성 검사결과 후 180일 이내 상기 백신의 1차 접종<br>* 백신접종증명서(certification of vaccination)에는 △해당인에 대한 백신접종 사실 확인 △접종일자 △해당국의 백신프로그램 담당 기관 포함 필요<br>※ 코로나19완치증명서에는 △성명 및 생년월일, △완치된 질병명, △최초 양성 결과 일자, △검사 시행 국가 및 증명서 발급자, △증명서 유효기간 등 포함 필요(단, 최초 양성 결과일로부터 11일 이상 180일 미만의 기간) |
| | 알바니아 | ▸21.9.6.부터 알바니아 입국(또는 경유) 시 백신접종 증명서(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48시간 이내 신속검사), 코로나19 회복증명서(회복 후 6개월 유효) 중 1가지 제출 (6세 이상부터 적용)<br>※ 상기 서류가 없는 알바니아 국민은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의무(자가격리 종료일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필수)<br>※ 21.12.3.부터 3주간 아프리카 6개국(남아공, 케냐, 앙골라, 잠비아, 보츠와나, 세네갈) 방문자의 입국 금지<br>- 단, 알바니아 시민, 체류허가증 소지자는 입국이 허용되며, 입국 후 2주간 격리 필수 |
| | 에스토니아 | ▸21.12.13.-12.19. 저위험국가에 속하지 않는 국가(한국 포함, 최근 14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감염자 75명 초과)발 입국자 아래 방역조치 적용<br>※ (백신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등 별도 제한없이 입국 가능(출발지 불문)<br>※ (백신접종 미완료자) 음성확인서 지참, 10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부과<br>-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입국 시 PCR 검사 의무<br>▸21.12.1.부터 남아공, 보츠나와, 말라위, 레소토, 스와질란드, 나미비아, 모잠비크, 짐바브웨, 이집트, 터키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PCR 검사 의무이며 미이행 시 10일간 격리 조치<br>※ 12개월 이내 백신접종완료자, 6개월 이내 코로나회복증명서 소지자가 음성 판정을 받을 시 격리 면제 |
| | 영국 | ▸21.10.04.부터 해외입국자 대상 개정 방역지침 시행: 3주마다 국가별로 코로나19 위험도를 측정하여 적색국가와 여타국가로 분류, 등급별 및 백신접종여부별 상이한 방역지침 적용<br>● **적색국가(Red List)*발 입국자 방역지침(최근 10일 내 방문/경유자 포함)**<br>* (21.12.15. 기준) 없음<br>※ 백신접종 인정 국가 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해당 백신접종 인정 국가가 적색국가인 경우, 적색국가 방역지침 준수 필요<br>※ 영국 국민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비자만 입국 가능<br>- 일반 외국인은 적색국가에서 단순 방문 목적으로 영국 입국 불가<br>※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및 제출<br>※ (입국 전 진단검사) 출발일 기준 2일 내 검사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서(PCR, LAMP, Antigen LFD 등) 제출(12세 이상)<br>※ 입국 후 시설(호텔)격리 10일(입국 전 사전 온라인 예약 필요)<br>- '테스트 투 릴리스' 정책 이용 불가<br>※ (입국 후 진단검사) 입국 2일차 및 8일차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5세 이상)(입국 전 사전 온라인 예약 필요)<br>● **여타국가발 입국자 방역지침(일반입국자*)**<br>* 백신접종 미완료자 / 인정국가 외 타국 백신접종자 / 인정국가 내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br>※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및 제출<br>※ (입국 전 진단검사) 출발일 기준 2일 내 검사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서(PCR, LAMP, Antigen LFD 등) 제출(12세 이상)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 입국 후 자가격리 10일<br>- 5일 자가격리 후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가능한 '테스트 투 릴리스' 정책 이용 가능 (출발 전 지정 검사업체에서 검사 예약, 비용 자부담)<br>※ (입국 후 진단검사) 입국 2일차 및 8일차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입국 전 사전 온라인 예약 필요)<br>- 4세 이하 유하 입국 후 진단검사 불요<br>- 5~17세의 경우 백신접종완료자와 동일한 검사지침 준수 필요<br>● **여타국가발 입국자 방역지침(백신접종 완료자)**<br>※ 입국 8일차 진단검사, 입국 후 자가격리 10일 면제<br>※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및 제출<br>※ (입국 전 진단검사) 출국일 기준 2일 내 검사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서 (PCR, LAMP, Antigen LFD 등) 제출(12세 이상)<br>※ 입국 2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입국 전 사전 온라인 예약 필요)<br>- 21.11.30. 이후 입국자의 경우, 입국 2일차 진단검사는 반드시 PCR 검사로 실시 및 검사 결과 음성확인시 까지 자가격리 필요<br>- 4세 이하 유하 입국 후 진단검사 불요<br>※ (백신접종 인정 기준)<br>- △영국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영국 내에서 백신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자, △아래 인정백신을 인정국가에서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자, △영국 및 아래 인정국가에서 거주하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백신접종 무관하게 백신접종완료자로 처우), △영국 또는 미국에서 승인된 백신임상실험 참여자, △의학적인 사유로 백신접종을 받을 수 없는 영국 거주민<br>-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백, 시노팜, 코백신을 아래 인정 국가에서 접종완료하고 14일이 경과 한 자(교차접종 인정 / 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백신접종완료자로 불인정)<br>- (백신접종 인정 국가) **한국,** 가나, 가이아나, 건지섬, 그레나다, 그리스,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극(영국령 남극지역), 남아공,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도미니카 연방,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맨섬,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몬트세랫, 몰도바, 몰디브, 몰타, 몽골, 미국, 바투아누,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티칸 시티,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벨리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사이프러스, 산 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 헬레나섬ㆍ아센시온 섬ㆍ트리스탄다큐냐 섬(영국해외영토), 수리남,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아크로티리 데켈리아, 안도라, 알바니아,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앵귈라, 에스와티니,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영국령 인도양지역, 오만,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저지섬, 조지아, 지부티, 지브롤터, 짐바브웨, 체코, 칠레,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케이맨제도, 코소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탄자니아, 태국,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터키,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영토, 페로제도, 페루, 포르투갈, 포클랜드 제도,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핏케언 제도, 헝가리, 호주, 홍콩<br>※ (백신접종 증명 방법)<br>- △NHS COVID Pass,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vaccination card(미국 거주자)<br>- 중앙정부 또는 주단위(State-Level) 공중 보건 기관에서 공식 발행한 백신접종 증명서(전자문서/종이문서)로 증명 가능<br>※ (백신접종증명서상 필수 기재 정보) 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및 제조사, 각 회차별 백신접종일자, 백신접종국가명 또는 접종증명서 발행자명 |
| | 우즈베키스탄 |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 도착 72시간 전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음성확인서가 없을 경우 공항이나 기차역 등에서 신속진단검사 실시(21.12.1)<br>※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위한 한국 내 PCR 검사기관 지정(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및 해당 항공사 확인 요망)<br>※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였다는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체내에 코로나19 항체가 있다는 항체증명서를 소지하고 항공기나 열차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입국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시 일체의 제한 조치 없음(21.9.16)<br>- 백신의 종류 및 최종 접종 후 경과기간에 제한은 없으며,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유효하게 발급한 증명서라면 인정(다만, 영문 또는 노문으로 기재되어 있고 QR코드가 인쇄된 종이증명서 권장)<br>※ 차량을 이용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국경검문소에서 자기비용으로 코로나19 신속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 시에만 입국 가능<br>▸ 21.12.3.부터 22.1.10.까지 오미크론 변이 발견국(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레소토,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홍콩)와의 국제선 항공편(경유 포함)은 일시 중단되며, 상기 국가의 국민들과 상기 국가에서 14일간 체류한 제3국 국민은 우즈베키스탄 입국 금지(21.12.1)<br>※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독일, 덴마크, 이태리, 네덜란드, 체코, 호주, 이집트, 이스라엘에서 입국한 사람은 10일간 자가격리 또는 자기 비용으로 호텔에서 격리 의무(21.12.1) |
| | 우크라이나 | ▸ 21.6.7.부터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코로나19 진단 PCR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신속항원검사(RAT) 양성확인서, △WHO가 인증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중 1가지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 허용<br>※ 동 의무 면제 대상 : 12세 미만 어린이, 영주권자, 駐우크라이나 외교관/가족, 정부대표단, 난민 등<br>▸ 21.8.5.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미완료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은 입국 후 72시간 이후 10일 자가격리 시행<br>※ 백신 미접종/미완료 외국인은 "브도마(Vdoma 또는 В д о м а)" 자가격리 모바일 앱을 설치 및 실행해야 입국 가능<br>※ 입국 후에 실시된 코로나19 진단 PCR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동 자가격리 면제 또는 중단<br>※ 동 자가격리 면제 대상 : 18세 미만 미성년자, 정부대표단, 駐우크라이나 외교관/가족 등<br>※ 우크라이나 입국 직전 14일 중 7일 이상 러시아에서 체류하거나 러시아에서 출발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미완료 외국인들은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시행(자가격리 면제 또는 중단 불가능)<br>▸ 외국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치료비용(격리비용 포함)을 처리할 의료보험 소지 의무<br>※ 동 의무면제대상 : 영주권자, 駐우크라이나 외교관/가족, 정부대표단, 난민 등<br>▸ 21.12.3.부터 우크라이나 입국 직전 14일 중 7일 이상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바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에 체류한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 (경유 허용)<br>※ 동 입국금지 면제 대상 : 임시거주증 소지자, 영주권자,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우크라이나 주재 외교관/가족 등<br>- 동 입국금지 면제 대상자는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시행 |
| | 이탈리아 | ▸ 20.12.10.부터 각 국가를 5그룹(A-E그룹)으로 나누어 입국 제한 조치 실시<br>(기타 그룹별 국가 및 조치 내용은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br>※ 한국은 D그룹 국가로 입국시 △ 'PCR(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입국전 72시간 이내 실시)' 지참, △EU Digital Passenger Locator Form(dPLF) 온라인 사전제출, △탑승수속시 EMA 인정 백신 접종 완료후 발급되는 그린패스(certificazione verde)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건당국이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한국 보건당국 발급 증명서 포함)를 제시<br>- 그린패스(또는 이에 상응하는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미지참시 입국후 5일 자가격리 실시 → 자가격리 종료후 코로나19 검사 실시<br>○ A그룹 국가 : 조건 없이 입국 가능<br>○ B그룹 국가 : C그룹 국가 중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은 국가<br>○ C그룹 국가 : △그린패스(Certificazione Verde)* 및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입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 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입국 전 24시간 이내 실시) 지참시 자가격리 면제(그린패스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지참시 5일 자가격리 및 자가격리 종료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br>*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ㅇ D그룹 국가 : 입국사유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단, 아래 입국절차 준수)<br>① 입국시 코로나19 'PCR(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 지참<br>- 단, 영국발 입국자는 48시간 이내 실시한 음성확인서 지참<br>② https://app.euplf.eu/ 를 통해 EU Digital Passenger Locator Form(dPLF) 사전 제출<br>- 항공기 탑승 전까지 제출 의무<br>- 온라인 제출을 완료하면 작성시 등록한 이메일로 QR코드를 포함한 dPFL 도착<br>③ 탑승수속시 EMA 인정 백신접종 완료후 발급되는 그린패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건당국이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한국 보건당국 발급 증명서 포함)를 제시<br>④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미지참시에는 입국후 5일 자가격리 실시 → 자가격리 종료후 코로나19 검사 실시<br>ㅇ E그룹 국가 : 상기 A~D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로 입국 금지<br>- 업무, 건강, 학업, 긴급, 거주지 복귀 사유 등 예외적 사유로만 입국 가능(입국 후 10일 자가격리)<br>ㅇ E그룹 국가 중 오미크론 변이 관련 특별 입국금지국(21.11.26~22.1.31.) : 남아공, 레소토,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br>- 이탈리에에 거주지가 있는 이탈리아 국민 및 그에 상응하는 거주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입국 가능(단, 입국시 코로나 검사 실시 및 입국후 10일 자가격리, 자가격리 후 PCR검사 실시)<br>- 상기 특별입국금지 국가발 항공기 운항 중단 |
| | 조지아 | ▸21.7.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소지 필수<br>[백신 접종자인 한국인 입국자]<br>※ 항공편, 육로 및 해상 입국 : 백신접종증명서,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br>※ 단, 인도에서 출발한 여행객 또는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인도 방문 경험이 있는 여행객은 해당되지 않으며 입국일로부터 72시간 전 발급된 PCR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자비로 14일 동안 격리<br>※ 백신접종증명서는 반드시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어야함<br>[백신 미접종자인 한국인 입국자]<br>※ 경유지(제3국)포함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입국 허용 국가에서 출발<br>- 코로나19백신 미접종자 입국 허용 국가 : 유럽연합 가입국, 이스라엘, 터키,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영국 및 북아일랜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몰도바,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일본, 한국, 오만<br>※ 입국심사 시,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결과서 제출<br>※ 입국 3일차에 자비로 PCR검사 실시<br>※ 입국 전 최근 14일 이내 방문국가 및 연락처를 온라인 작성 및 제출<br>- http://registration.gov.ge/pub/form/8_protocol_for_arrivals_in_georgia/tk6157/<br>※ 입국 전 최근 14일 이내 인도를 방문한 여행객은 입국 후 자비로 14일 격리 필수(이 경우 입국 3일차에 PCR검사 면제) |
| | 체코 |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대비, 모든 체코 입국 외국인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강화된 입국 조건 부과<br>※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입국 전 72시간 내 발행) 제출 의무<br>- 동 의무는 접종완료자(안센 1차 / 기타 백신 2차) 및 코로나19 회복자(6개월 내)에게도 부과되며, (체코 보건부 지정) 출발국가별 코로나19 위험도와 무관하게 적용<br>※ 사전 입국신고서는 www.prijezdovyformular.cz에서 신고 후 출력하여 소지<br>※ 백신 접종완료자(1차 접종 시에도 미접종자로 분류) 혹은 코로나19 회복자가 아닌 경우, 입국 전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과 함께 입국 후 5~7일 사이 2차 PCR 진단검사 의무 부과(단, 격리의무는 없으나 야외 활동시 강화마스크 착용의무 부과)<br>※ 단, 상기 모든 입국조건은 △부스터샷 접종자 △12세 미만 아동 △12세 이상~18세 미만 청소년 가운데 접종완료자(안센 1차/가타 백신 2차) △체코인 및 외국 |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조 치 사 항</th></tr>
<tr><td></td><td></td><td>
인 영주권자/장기거주비자 소지자 등에게는 미적용<br>
▸ 오미크론 변이 유행국가(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發 입국자 대상(21.11.27~)<br>
※ 체코 입국 14일내 상기 변이 유행국가에서 12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입국이 불허(공항내 단순 경유가능). 단, 체코 국민이나 외국인 가운데 90일 이상 장단기 체류허가증 소지자만 아래 방역조건에 따라 입국 가능<br>
※ 아울러, 주재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백신접종증명서(회복증명서 포함) 소지자도 예외없이 조건에 따라 입국 금지 및 아래 제한조치 적용中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전 입국 신고</th><th colspan="2">진단검사</th><th rowspan="2">이동제한 / 자가격리 등</th></tr>
<tr><th>입국前</th><th>입국後</th></tr>
<tr><td>오미크론 변이 유행국가</td><td>○</td><td>△PCR 음성확인서 제출(출국 72시간내 실시)<br>△입국 이후 24시간내 실시 예정인 PCR 진단검사 예약 확인증 제출</td><td>△1차 PCR 진단검사(입국 24시간內)<br>△2차 진단검사(자가격리 10일 이후)</td><td>10일간 자가 격리의무 부과되며 2차 PCR 진단검사 결과 음성확인시 격리 해제</td></tr>
</table>
</td></tr>
<tr><td></td><td>카자흐스탄</td><td>
▸ 20.10.6.부터 출발 국가 불문, 입국 전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영어, 노어) 소지 의무(미지참 시 입국 불허)<br>
※ 21.5.3.부터 카자흐스탄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카자흐스탄 국민 및 영주권자는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대신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 가능(오미크론 발생국가 출발 입국자 제외)<br>
※ 만 5세 이하인 자는 음성확인서 소지 면제<br>
※ 제3국 출발 항공편 이용 시 입국, 환승 제한 규정 폐지<br>
▸ 21.12.3.부터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나미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에스와티니, 탄자니아, 홍콩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br>
※ 21.12.3.부터 오미크론 발생국가(이스라엘, 체코,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독일, 호주, 캐나다, 이집트)로부터의 입국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전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PCR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7일간 자가격리 조치
</td></tr>
<tr><td></td><td>크로아티아</td><td>
▸ 21.12.31.까지 △EU/쉥겐지역발 입국자, △비EU/비쉥겐지역발 입국자, △EU 역외국경 통제 해제 대상국(한국 포함)발 입국자, △남아공, 브라질, 탄자니아(잔지바르), 인도발 입국자 등으로 구분하여 입국제한 차등 조치 실시(12.15.)<br>
ㅇ EU/쉥겐지역발 입국자<br>
※ 다음에 적시한 확인서/증명서들 가운데 한 가지를 제시하면 제한 없이 입국 가능<br>
※ △EU디지털코로나증명서(Digital Covid Certificate) 소지자(단, 제3국 경유시 미체류 사실 증명 필요), △진단검사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PCR음성확인서, △진단검사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EU 인정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EU에서 사용되는 백신(화이자(Comirnaty),모더나(Spikevax),아스트라제네카(Vaxzevria),가말레야(Sputnik),시노팜(BBIBP-CorV)) 혹은 WHO 긴급 사용승인 백신(인도세럼연구소(Covishield),바라트 바이오테크(Covaxin),시노백(CoronaVac)) 2회 접종증명서(단, 접종완료일로부터 365일 미경과 조건 충족 필요), △1회 접종 백신(얀센/존슨앤존슨) 접종증명서(단,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경과 및 365일 미경과 조건 모두 충족 필요), △회복확인서와 EU에서 사용되는 백신 1회 접종증명서(단, 백신접종은 감염 후 8개월 이내 및 입국전 365일 이내 실시 조건 모두 충족 필요), △입국전 22~42일 사이에 실시한 화이자, 모더나, 가말레야 백신 1회 접종확인서, △입국전 22~84일 사이에 실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 접종확인서, △입국전 11~365일 사이에 실시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회복확인서<br>
※ 상기 입국요건 미충족시 10일간 의무적 자가격리<br>
- 단, 자가격리 기간 중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판정시 격리해제<br>
※ 감염 후 6개월 이내에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사람으로서, △회복 후에 유효한 EU
</td></tr>
</table>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디지털코로나증명서를 보유한 사람 또는, △다른 회복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일로부터 7개월 동안 PCR/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및 자가격리 의무 면제<br>※ 상기 입국 관련 확인서/증명서를 소지한 부모와 동반하는 12세 이하 아동은 제한 없이 입국 가능<br>**ㅇ 비EU/비쉥겐지역발 EU/쉥겐지역 국민(가족 포함) 및 EU/쉥겐지역 장기체류허가 제3국민**<br>※ 상기 EU/쉥겐지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요건과 동일<br>**ㅇ 비EU/비쉥겐지역발 제3국민**<br>※ 선원, 관광객, 개인/가족 또는 사업/경제 사유가 있는 사람, 거주/취업(디지털 노마드 포함) 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 12시간 이상을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다음에 적시한 확인서/증명서들 가운데 한 가지를 제시하면 제한 없이 입국 가능<br>※ △진단검사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PCR음성확인서, △ 진단검사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EU 인정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EU에서 사용되는 백신(화이자(Comirnaty),모더나(Spikevax),아스트라제네카(Vaxzevria),가말레야(Sputnik),시노팜(BBIBP-CorV)) 혹은 WHO 긴급 사용승인 백신(인도세럼연구소(Covishield),바라트바이오테크(Covaxin),시노백(CoronaVac)) 2회 접종증명서(단, 접종완료일로부터 365일 미경과 조건 충족 필요), △1회 접종 백신(얀센/존슨앤존슨) 접종증명서(단,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경과 및 365일 미경과 조건 모두 충족 필요), △회복확인서와 EU에서 사용되는 백신 1회 접종증명서(단, 백신접종은 감염 후 8개월 이내 및 입국전 365일 이내 실시 조건 모두 충족 필요), △입국전 11~365일 사이에 실시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회복확인서<br>※ 상기 입국요건 미충족시 10일간 의무적 자가격리<br>- 단, 자가격리 기간 중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판정시 격리해제<br>※ 감염 후 6개월 이내에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사람으로서, △회복 후에 유효한 EU 디지털코로나증명서를 보유한 사람 또는, △다른 회복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일로부터 7개월 동안 PCR/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및 자가격리 의무 면제<br>※ 상기 입국 관련 확인서/증명서를 소지한 부모와 동반하는 12세 이하 아동은 제한 없이 입국 가능<br>**ㅇ EU 역외국경 통제해제 대상국(한국 포함)발 입국자**<br>※ 필수 방문임을 증빙할 필요는 없으나, 상기 비EU/비쉥겐지역발 제3국민에게 적용되는 확인서/증명서들 가운데 한 가지를 제시해야 제한 없이 입국 가능<br>**ㅇ 방역 강화대상 국가**<br>※ 남아공,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발 입국자 및 입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입국 금지<br>- 크로아티아 및 EU 체류 허가 소지자 중 상기 국가발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및 격리 마지막 날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 의무<br>※ 탄자니아(잔지바르)발 입국자: 발급 후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14일 의무적 자가격리 실시<br>-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6일 이상 격리 후 본인 비용으로 PCR 검사 음성판정 필요<br>※ 브라질발 입국자: 백신접종여부, 코로나19 회복여부에 상관없이 진단검사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PCR 혹은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신속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소지(PCR 및 신속항원검사 모두 비인두도말 방식의 검사 실시 필요)<br>※ 경유자가 12시간 내에 미출국시 의무 자가격리 실시 |
| | 키르기스스탄 | ▸입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미소지 또는 발열 등 증상 있을 경우 입국 불허)(21.12.1.) |
| | 타지키스탄 | ▸사증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72시간 이내 실시) 소지자 대상 입국 허가 및 자가격리 면제 |
| | 터키 | ▸코로나19 고위험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한국 포함) 출발 승객은 입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 완료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48시간 이내 검사 완료한 신속항원검사서 제출<br>※ 입국 후 PCR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체 제출 후 최종 목적지로 이동 가능(양성판정 시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 및 치료)<br>- 양성 판정자와 밀접접촉자는 본인이 지정한 곳에서 14일 격리(격리 10일차에 재검 후 음성판정이 나온 경우 격리 해제)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 단, △터키 입국 기준 최소 14일 전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한 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격리 의무 면제<br>* 한국 질병관리청 발급 영문 증명서도 인정(교차접종 인정)<br>※ 항공기 승무원, 선박 선원, 화물 기사 등과 같은 필수인력의 경우 PCR 검사 및 격리 의무 면제<br>▸ 코로나19 고위험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별도 조치<br>※ 브라질, 남아공,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발 입국자<br>- 터키 입국 기준 최대 72시간 전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br>- 입국 후 14일 격리 의무 있으나, 격리 10일차에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임을 증명시 격리 면제)<br>※ 이란, 이집트발 입국자<br>- 터키 입국 기준 최대 72시간 전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br>※ 21.11.27.부터 모든 경로(항공, 해로, 육로)를 통한 보츠와나, 남아공,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에서 터키로의 입국 중단<br>- 다만, 최근 14일 내 상기 5개국을 방문한 후 제3국을 거쳐 터키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 최대 72시간 전 시행된 PCR 음성결과서 제출, △입국 후 정부지정시설에서 14일간 의무 격리(시설격리 비용 사전지불 필수)<br>▸ 경유시 상기 입국제한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12세 미만 아동의 터키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 PCR 검사, 항원검사 결과지 제출 의무 면제<br>▸ 상기 조건 충족 시에도 보건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PCR 검사 요구 가능 |
| | 포르투갈 | ▸ 21.12.1-22.1.9.간 출발지에 따라 아래 조치 적용<br>※ 모든 승객은 portugalcleanandsafe.pt/en/passenger-locator-card에서 체크인 후, 항공편 탑승 전까지 승객위치확인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의무(최초 탑승 항공편명 및 좌석번호 입력)<br>① **<EU+ 쉥겐국가 + EU선정 역외 안전국가/도시(한국 포함)*>**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통해 입국 시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 입국 허용<br>*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쿠웨이트, 나미비아, 뉴질랜드, 페루, 카타르, 중국, 르완다,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홍콩, 마카오, 대만<br>※ 상호주의 원칙 적용 하에 입국 허용<br>※ EU 디지털 코로나증명서(백신접종 완료 또는 완치증명서 또는 음성판정증명서) 소지자는 별도 서류 제출 불요<br>※ 제3국에서 발급된 백신접종증명서는 하기 정보가 기재된 조건하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정*(한국 백신접종증명서 불인정)<br>* (증명서 상호인정국) 알바니아, 안도라, 스위스, 페로 제도,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로코, 모나코,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나마, 산마리노, 터키, 우크라이나, 바티칸<br>- 성명, 생년월일, 병명(코로나19), 백신 명칭, 백신 도입 허가기관 또는 제조사, 백신접종 받은 도즈 횟수/접종받아야 할 백신 총 횟수 (예: 얀센의 경우 1/1, 화이자의 경우 1차 접종은 1/2, 접종 완료자는 2/2로 표기됨), 백신접종일(2차 접종일), 백신 접종 국가명 및 증명서 발급 기관<br>- 완치증명서는 성명, 생년월일, 완치된 병명(코로나19), 1차 양성판정일, 진단 검사를 실시한 국가명, 증명서 발급 기관, 증명서 유효기간<br>- 백신 인정 종류 :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br>※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탑승 48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중 1가지 지참 필요(12세 이상)<br>② 브라질, 미국, 영국에서의 비필수적 목적 방문 허용<br>※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을 통한 음성확인서 또는 48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진단검사(Antigen Test-TRAg)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12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br>③ 상기 ①과 ②를 제외한 제3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포르투갈 입국시<br>※ 필수 목적 방문(출장, 유학, 가족방문, 치료목적 등)에 한해서만 입국 허용 (입국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 지참)<br>※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승객위치확인서 제출 의무<br>④ 보츠와나, 남아공,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7개국 착발 항공편 운항을 21.11.29.부터 중단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 여타 경로로 입국하는 해당국발 승객은 포르투갈 보건당국이 지정하는 거처에서 자비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br>※ 포르투갈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은(EU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 소지자 포함)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육로를 통해 포르투갈에 입국시 코로나 음성확인서 외 EU 디지털 증명서도 소지 |
| | 폴란드 | ▸21.12.16.부터 비쉥겐지역(한국 포함) 입국자 자가격리 강화 조치 시행<br>※ 모든 입국자는 폴란드 입국 전 24시간 이내 발급된 PCR 또는 항원(antigen)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및 자가격리 14일 의무(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은 유지)<br>※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접종지역과 상관없이 EU의약청이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발급 받은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모두 소지하고, 접종완료 다음날부터 최소 14일 경과 후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모든 서류는 영어 또는 폴란드어 / 백신접종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확진증명서'로 대체 가능)<br>※ 환승객: 폴란드 도착 후 24시간 이내 출국 시 자가격리 면제<br>- 환승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 내 환승구역에 머무르는 경우로 제한되며, 만일 환승구역 내 여권검색대(비쉥겐->쉥겐 환승구역)을 통과할 경우 하기 비쉥겐지역발 폴란드 입국 경우와 동일한 증명서 지참 필요)<br>※ (21.7.16부터) 항공편으로 폴란드에 입국하는 승객은 사전에 항공기 내에서 배포된 '탑승객 체류지 신고서(Passenger Locator Form)'를 작성하여 입국 심사 시 제출 또는 입국 심사 전 전자신고시스템에 체류지 신고 내용을 직접 입력<br>▸쉥겐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터키발 입국자<br>① 모든 입국자는 10일간 자가격리 의무(10일 경과 후 자가격리 자동 해제)<br>- 폴란드 입국 후 48시간 이내 희망자에 한해 PCR검사(유료)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br>②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된 PCR 또는 항원(antigen)검사 음성확인서 소지자 자가격리 면제<br>③ EU의약청이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각 2회/얀센 1회) 후 발급 받은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접종완료 다음날부터 최소 14일 경과 후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br>④ 폴란드 입국일 기준 6개월 이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자가격리 면제<br>⑤ EU에서 승인한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 아동 자가격리 면제<br>▸비쉥겐 및 비유럽자유무역연합(EFTA)발 입국자(한국 포함)<br>① 모든 입국자(5세 이상) 폴란드 입국 전 24시간 이내 발급된 PCR 또는 항원(antigen)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및 14일간 자가격리 의무(14일 경과 후 자가격리 자동 해제)<br>- 자가격리 다음날부터 8일 경과 후 희망자에 한해 PCR검사(유료)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예.12.1 입국시 12.9부터 검사 가능)<br>- 음성확인서 미소지 입국자는 도착 후 3시간 이내 공항 내 비쉥겐구역에 설치된 진단소에서 유료 항원검사(150즈워티)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 시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하나, 공항 상황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br>②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접종지역과 상관없이 EU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각 2회/얀센 1회) 후 발급 받은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모두 소지하고, 접종완료 다음날부터 최소 14일 경과 후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br>③ 폴란드 입국일 기준 6개월 이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증명서와 음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성확인서를 모두 소지하고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br>④ EU에서 승인한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 아동 자가격리 면제<br>- 만 5세 미만 아동은 음성확인서 없이 자가격리 면제되나, 만 5세-12세 미만 아동은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자가격리 면제<br>▸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짐바브웨발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실시(격리기간 중 실시한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자가격리 조기 해제 불가)<br>※ EU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각 2회/얀센 1회) 후 발급 받은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모두 소지하고, 접종완료 다음날부터 최소 14일 경과 후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br>※ 폴란드 입국일 기준 6개월 이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모두 소지하고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
| | 프랑스 | ▸21.12.4.부터 EU 역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12세 이상)은 백신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48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또는 항원검사) 필수 제출<br>※ 출발국가에 따른 구체적인 입국 규정은 아래 표 참고<br>※ 백신접종자*는 영국 및 Scarlet red zone**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및 서약서**** 지참시 입국 가능<br>* 접종 완료자 조건<br>- Pfizer, Moderna, AstraZeneca 백신 2회 접종 후 7일 경과<br>- Johnson&Johnson 백신접종 후 28일 경과<br>- 코로나에 기감염되어 항체가 생성된 경우는 추가로 1회 접종 후 2주 경과<br>** 영국발 여행객은 21.12.18.부터 백신접종여부 관계없이 불가피한 여행사유를 만족해야 입국 가능 / Scarlet red zone 국가는 백신접종여부 관계없이 동일한 지침 적용<br>*** 유럽연합국가 면제 / Green zone, Orange zone, Red zone 국가 출발전 48시간 이내 시행된 PCR 또는 항원검사 / 영국 24시간 이내 시행된 PCR 또는 항원검사<br>****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고, △여행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없음을 서약<br>※ 제3국에서 출발하여 파리에서 다른 제3국으로 환승하는 경우 24시간 이내로 공항 내 환승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며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않아야 함<br>▸**EU회원국, 쉥겐국가, Green zone*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정**<br>*한국, 캐나다, 홍콩, 호주, 일본, 뉴질랜드,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바누아투, 바레인, 요르단, 코모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르완다, 세네갈 |

| 백신접종 | 입국조건 | 출발시 음성결과 | 입국시 검사 | 격리조치 |
|---|---|---|---|---|
| 완료자 | 없음 | 48시간 내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 PCR 또는 항원검사 요구 가능 | 없음 |
| 미완료자 | 없음 | 48시간 내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 | 없음 |

*EU회원국, 안도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교황청, 스위스 출발 여행객은 음성결과 제출 의무 면제

**EU회원국, 안도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교황청, 스위스 출발 여행객은 24시간 내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Orange zone**(그린/레드/다홍존 외 모든 국가)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정**

| 백신접종 | 입국조건 | 출발시 | 입국시 | 격리조치 |
|---|---|---|---|---|

| 구 분 | 조 치 사 항 |
|---|---|

| | | 음성결과 | 검사 | |
|---|---|---|---|---|
| 완료자 | 없음 | 48시간 내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 PCR 또는 항원검사 요구 가능 | 없음 |
| 미완료자 | 필수사유 | 48시간 내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 | 7일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전 검사 |

*영국 출발 여행객은 24시간 내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 불가피한 여행 사유

(1)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혼인, 동거계약(pacs), 동거인) 및 자녀
(2) 유럽연합 국적자와 배우자(혼인, 동거계약(pacs), 동거인) 및 그의 자녀로 프랑스 내에 거주지가 있거나 프랑스를 경유하여 유럽연합 내 국가의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우
(3) 제3국(한국포함) 국적자로 유효한 프랑스 또는 유럽 체류증 및 장기체류비자(VLS)소지자로 프랑스 내에 거주지가 있거나 프랑스를 경유하여 유럽연합 내 국가의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우
(4) 영국 및 북아일랜드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 탈퇴협정 대상 재외영국인 및 그 가족(프랑스 출국이 1.31 이전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한 경우) 공무를 수행하는 영국 공무원 및 국경경찰, 세관을 위해 종사하는 인원. Manche 터널 인원(개발, 유지, 보안, 설치 업무 등)
(5) 가족합류, 또는 난민/무국적자 가족통합자격으로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은 제3국 국적자(한국 포함)
(6) 코로나19 퇴치에 종사하는 의료전문가 및 연수생과 배우자(공동생활 증빙하에 혼인, 동거계약(pacs)) 및 자녀
(7) 코로나19 퇴치에 기여하기 위해 모집된 외국 의료전문가 및 연수생
(8) 특별재능여권(Passeport talent)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9) 2021-2022학년도 고등교육기관 프랑스어 수업과정(FLE), 또는 학위과정에 등록된 학생. 연구소에서 초청받아 반드시 연구소에서 연구가 필요한 연구원 및 교수와 배우자(공동생활 증빙 하에 혼인, 동거계약(pacs), 동거)
(10) 프랑스 내에서 사용되거나 경유될 물품을 운송하는 운전자를 포함한 교통 및 운송부문 종사자(육로, 해상, 항공 포함) 및 출발지로 이동하는 경우
(11) 외교, 영사임무 또는 프랑스 내에 소재하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 또는 정부의 임무명령에 따라 필수적인 직업적 사유로 프랑스에 체류하는 외국인
(12) 제3국(한국 포함) 국적자로 24시간이내 경유구역(zone internationale)내에서 경유하는 경우

▸ Red zone*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정

*아프가니스탄, 브라질, 코스타리카, 쿠바, 조지아, 몰디브, 파키스탄, 러시아, 수리남, 터키, 벨라루스,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모리셔스

| 백신접종 | 입국조건 | 출발시 음성결과 | 입국시 검사 | 격리조치 |
|---|---|---|---|---|
| 완료자 | 없음 | 48시간 내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제출 | PCR 또는 항원검사 요구 가능 | 없음 |
| 미완료자 | 필수사유 | | PCR 또는 항원검사 필수 | 10일 의무격리 (경찰 확인) |

※ 레드존에서 출발하는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상기 불가피한 여행 사유 1, 2, 3, 5, 9, 10, 11, 12번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함

▸ Scarlet red zone*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정

*남아공, 레소토,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말라위, 잠비아

| | 입국조건 | 출발시 음성결과 | 입국시 검사 | 격리조치 |
|---|---|---|---|---|
| 모든 여행객 | 필수사유 | 48시간 내 PCR 또는 24시간 내 항원검사 | PCR 또는 항원검사 필수 | 10일 의무격리 (경찰 확인)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음성결과서 제출<br>※ 다홍존에서 출발하는 경우 상기 불가피한 여행 사유 1, 2, 3, 5, 10, 11번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함 |
| | 핀란드 | ▸21.12.21.~22.1.16.까지 EU 및 쉥겐 역외국으로부터 입국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출발 전 48시간 이내 발급 받은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단, 핀란드 시민 또는 영주권자는 동 제시 의무 면제)<br>※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시: 제한없는 입국 가능<br>* EMA 또는 WHO 인정 백신 마지막 접종일 이후 최소 14일 경과 필요(교차접종 인정)<br>※ 백신접종증명서 미소지시: 비필수 목적의 입국은 가능하나, 이 경우 입국 후 3~5일 내 코로나19 검사 의무(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권고)<br>※ 코로나19 저위험 국가 리스트: **한국,**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홍콩, 요르단, 쿠웨이트, 마카오, 뉴질랜드, 카타르, 르완다, 사우디,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우루과이<br>▸21.11.28.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남아프리카 7개국(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남아공,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체류 여행객에 대하여 백신접종 완료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금지 (핀란드 시민 및 영주권자 제외)<br>※ 21.12.16.부터 노르웨이, 덴마크, 나이지리아, 영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 | 헝가리 | ▸20.9.1.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br>※ 단, 영주권, 거주증 등 헝가리 내 90일 이상 장기체류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 후 10일 자가격리)<br>※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로부터 육로로 헝가리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허용(항공편 이용시에는 미해당) 및 격리면제<br>※ 21.8.7.부터 헝가리 입국 전 72시간 이내 OECD국가(한국 포함) 및 EU, NATO, 중국, 러시아, UAE, 바레인, 터키어 공용국가에서 발급된 PCR 영문 음성확인서 지참 시 입국허용 및 격리면제<br>※ 헝가리에서 발행된 코로나 백신보호 카드(Immunity Certificate)소지자 및 동 소지자의 18세 미만 자녀(자녀의 경우 카드를 소지한 부 또는 모와 동반입국 시에만 입국 가능) 입국 허용 및 격리 면제<br>※ EU DCC(Digital COVID Certificate)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협약국*에서 발급된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 입국허용 및 격리면제<br>*알바니아, 바레인, 사이프러스, 체코, 북마케도니아, 조지아, 모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스위스, 러시아<br>※ 헝가리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입국 신청 가능(입국 심사 시 코로나19 증상 유무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입국 후 10일 자가격리)<br>※ 외교, 공무, 비즈니스 목적 입국 허용 및 격리면제<br>※ 쉥겐협약을 따르고,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며, 최종 도착국 이동편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경유 가능(단, 헝가리 내 24시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br>▸21.11.29.부터 남아프리카 7개국(보츠와나, 남아공, 스와질랜드,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전면 입국 금지<br>※ 단, 헝가리인은 입국이 가능하나,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도착후 필수적으로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무증상인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인 경우 14일간 시설격리 의무<br>※ 외국인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입국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PCR 음성 여부 등과 무관하게 14일간 격리 의무 |
| 중동 | 레바논 | ▸(21.12.15.~) 모든 레바논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br>※ 입국 전 https://PASS.MOPH.GOV.LB로 접속하여 인적정보 기입한 후 MOPH PASS 신청<br>※ 레바논 입국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출발국가의 당국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상기 MOPH PASS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되는 링크를 통해 개인 식별 QR코드 다운로드<br>- 만 12세 미만 승객은 상기 PCR 검사결과 제출 면제<br>- 출국 최소 2주 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승객(1차 접종으로 면역력이 형성되는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완료) / 최근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된 승객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은 PCR 음성확인서 대신 동 접종사실 또는 완치사실 증빙문서 업로드하여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체<br>- 1주일 이내 기간으로 제3국 방문 후 레바논으로 귀국하는 승객의 경우 동 사실을 증빙하는 문서 업로드 시 출발국가에서의 PCR 검사 면제<br>※ 베이루트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입국 즉시 PCR 검사 실시 (검사비용 50미불은 각 항공사가 항공 요금에 포함하여 징구 / 12세 미만 승객, UNIFIL 단원, 48시간 이내 기간 동안에만 체류하는 승무원은 검사 면제)<br>- 22.1.10. 이후에는 입국 전 MOPH PASS 플랫폼을 통해 신용카드로 상기 PCR 검사 비용(30미불) 사전 전자결제<br>- 공항에서의 PCR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내 문자메시지 및 전자문서 형태로 통보되며, 음성확인 전까지는 반드시 자가격리 유지(양성 판정 시 레바논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행동) |
| | 리비아 |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
| | 모리타니아 | ▸20.9.10.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br>※ 기존의 입국 요건(비자 발급 등)에 더해 입국 시 △입국 전 3일 이내(공인된 검사소에서 발급받은 시점 기준)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시(외국인의 경우 음성확인서 미구비 시 입국 불허), △체온 측정, △건강자가진단서 제출<br>※ 공항 도착 시 유증상(발열)인 경우 현장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br>-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보건당국 조치에 협조<br>※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에서 출국한 경우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입국장소에서 임시 격리, 방역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재국 정부 지정 격리 장소로 이동 후 10일간 의무 격리(비용 자부담), 10일 격리 후 PCR 검사 결과 음성 시 귀가, 양서 시 보건당국 조치에 따름<br>※ 경유승객도 상기와 동일한 지침 적용 |
| | 바레인 | ▸한국에서 출발하는 백신미접종자의 경우, 바레인 입국시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PCR 검사 3회(입국 시점, 입국 5일째, 10일째), △10일간 격리(6세 이상 백신접종자 및 6세 이하 미접종자의 경우 격리 면제)<br>※ 바레인 혹은 백신상호인정국가* 내 백신접종자로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또는** 바레인 도착비자 발급이 가능한 국가**(한국 포함)의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격리조치가 면제되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br>* GCC국가, 이스라엘, 헝가리, 사이프러스, 그리스, 세이셸, 요르단<br>** 도착비자 발급 가능 국가는 아래 사이트 참조<br>https://www.evisa.gov.bh/list-of-onarrival-visa-country.html<br>※ (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간 연륙교 입국 시) GCC 국가 및 백신 상호인정국가에서 접종한 백신증명소지자는 PCR 음성확인서 불요 / 백신 미접종자는 바레인에서 인정한 사우디 의료기관에서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 | 아랍 에미리트 | ▸**(UAE 공통)** 21.12.25. 기준 오미크론 변이 관련 11개국(남아공,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발 승객(환승 승객 포함)의 입국 중단 조치<br>※ UAE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해당 국가에 체류한 경우에도 입국 중단되며, 다른 국가 경유 시 그 국가에서 최소 14일 체류 필요<br>※ 단, UAE 국민, 외교단, 국가 간 공식 대표단, 골든비자(특별장기거주비자) 소지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나, △출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출발 국가 공항에서 출발 전 6시간 이내 Rapid-PCR 검사, △UAE 공항 도착 시 PCR 검사 실시<br>- 입국 허용 대상인 UAE 국민, 외교단, 골든비자 소지자는 10일간 자가격리 및 9일째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br>※ 21.12.15. 기준 아프리카 3개국(르완다, 가나, 우간다)발 입국자는 △출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출국 전 6시간 이내 Rapid-PCR 검사(출국 국가 공항에서 실시) △UAE 공항 도착 시 PCR 검사 실시<br>- 환승해서 UAE로 입국 시 환승하는 공항에서 추가 rapid-PCR 검사 필요<br>▸**(아부다비)** 방역조치 완화국가(Green Country)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발 국가에 따라 다른 방역조치 적용<br>※ 항공기 탑승 전 출발 48시간 내 검사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br>※ 아부다비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공항에서 PCR 검사<br>※ 방역조치 완화 국가*(한국 포함)발 입국자 : △백신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면제, △UAE 및 해외 백신접종자의 경우 입국 6일차, 미접종자의 경우 6일, 9일차에 PCR 재검사 실시<br>* 2주 단위로 변동되므로 입국 전 아부다비 정부 홈페이지(visitabudhabi.ae/en/plan-your-trip/covid-safe-travel/permitted-countries)를 통해 재확인 필요<br>※ 방역조치 완화 국가 외 국가발 입국자 : △UAE 및 해외 백신접종자는 격리면제 및 도착 4일, 8일차에 PCR 재검사, △미접종자는 10일 자가격리 및 도착 9일차에 PCR 재검사 실시<br>※ 해외백신접종 인정 기준(교차접종 불인정)<br>- 백신 종류 :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br>- 경과 기간 : 마지막 접종 후 28일 경과 시<br>※ 해외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등록 절차 : 아부다비 방문 여행객은 해외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코로나19 음성 확인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ICA 사전등록 및 UAE 보건앱(Al Hosn) 설치 필요<br>① 입국 전 : UAE 연방이민청(ICA)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ica.gov.ae)의 "Register Arrivals" 메뉴에서 필요정보 입력<br>② 아부다비 도착 시 : 공항 또는 ICA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통합식별번호(Unified Identification Number, UID) 수령<br>③ UAE 공인보건앱 Al Hoson 설치 : 앱 설치 후 상기 UID 번호와 ①번 과정에서 등록한 (현지)전화번호 및 UAE 입국 후 공항에서 PCR 검사시 기입한 (현지)전화번호를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완료하면 앱상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 및 PCR 검사 결과 확인 가능 (전화번호 입력 시 UAE 현지 전화번호 입력 권장, 지인 번호로도 입력 가능)<br>▸ **(두바이 및 여타 북부 에미리트)** 20.7.7.부터 두바이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 및 경유 허용<br>※ 사실상 방문비자 면제 중(입국 시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 방문비자에 갈음함, 90일 체류)이나 조치 변동의 가능성이 크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br>※ 변이바이러스 유행 10개국 이외 국가에서 두바이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거주비자 소지자 포함)은 항공기 탑승 전 출발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반드시 RT-PCR 방식 검사만 인정, NHS 등 여타 방식 불인정)<br>- 12세 미만 어린이, 중증도 및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검사 면제<br>※ 21.9.1.부터 변이바이러스 유행 10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엄격한 규정 적용<br>*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남아공, 우간다, 베트남, 잠비아<br>-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및 QR코드가 포함된 음성확인서 소지, 출발시간 6시간 이내 공항 내 rapid PCR 검사 추가 필요<br>-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지참<br>※ 인도네시아, 수단, 레바논, 이집트,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하는 경우 반드시 QR코드가 포함된 음성확인서 제출<br>※ 아프가니스탄, 브라질, 인도,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두바이에 도착하는 경우 도착 시 PCR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되며(결과 통보 시까지 호텔 또는 자가 등에서 격리),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남아공, 우간다, 베트남, 잠비아, 인도네시아를 출발하여 두바이에서 환승하는 경우에도 출발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필요(기타 환승객은 최종 목적지에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PCR 검사 결과 불필요)<br>※ △두바이 거주비자 소지자는 상기 10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 전 두바이 이민청의 외국인 거주자 등록 부서(GDRFA)의 사전 승인 면제, △두바이 외 에미리트 거주비자 소지자도 상기 10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아부다비 이민당국(ICA) 승인 면제<br>- 상기 10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존재(신규 발급 취업비자 등)<br>▸ **(여타 에미리트→아부다비 이동)** 21.12.19.부터 두바이 등 여타 에미리트에서 아부다비로 입경 시, 입경하는 모든 사람 검문소에서 스캔 검사 실시<br>※ 스캔으로 양성반응이 감지되면 현장 추가 검사 실시(antigen test, 비인두도말 방식으로 20분 소요)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 현장 검사 결과 양성 판정 시, 아부다비 거주민은 10일간 자가격리(추적용 손목밴드 착용)를 실시하고, 여타 거주민들은 입경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해당 에미리트 방역 지침에 따름<br>▸**(UAE-인접국 간 육로 입국 지침)** 21.11.23.부터 UAE와 인접국(사우디, 오만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국민 및 거주자)에서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방역지침 발효<br>※ UAE에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시민 및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육로 입국 시 14일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UAE 체류 6일차에 추가 PCR 검사 실시<br>※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UAE 체류 4일차·8일차에 추가 PCR 검사 실시 |
| | 알제리 | ▸21.7.26.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36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도착 시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변경 전 시행되던 시설격리 불요) |
| | 요르단 | ▸요르단 도착 전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5세 이하 면제)<br>※ 출발 전 지정사이트에 입국 정보 입력 후 QR코드 수령하여 항공기 체크인 시 제시 https://www.gateway2jordan.gov.jo<br>※ 도착 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5세 이하 면제)<br>- 도착 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 비용 공항에서 지불 (JD28)<br>- 음성판정 시 자가격리 면제<br>- 양성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21.12.12.부터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의심 및 확진자의 경우 14일간 자부담 시설격리, 격리 5일차 PCR 검사 재실시)<br>※ 요르단 내에서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필수<br>※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및 환승시간 10시간 이내인 경우 환승 허용<br>※ 요르단 입국 전 14일 이내 남아공, 리소토, 짐바브웨, 모잠비크,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보츠와나 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 |
| | 이라크 | ▸공항 운영 및 상업용 항공 운항 재개(20.7.23.)<br>※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라크인의 입국을 불허(입국비자 미발급)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향후 상호주의에 의거 해당 국가 국민들이 이라크 입국시 (이라크 정부가 승인하고 있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동일하게 입국을 불허(입국비자 미발급)함(21.7.7.)<br>- 한국의 경우 상기 입국 제한에 미해당<br>※ 모든 입출국자는 탑승일 기준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br>※ 입국 후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20.11.2.)<br>※ 모든 입국자 입국 후 거주지 또는 사업장 내 격리 14일 의무(21.4.26.)<br>- 상기 격리의무는 외교단, 공무출장단, 이라크 사업프로젝트 종사자(전문가/기술자/근로자)의 경우 백신 2차 접종 완료를 조건으로 면제(72h 내 검사한 PCR음성결과서 필요) |
| | | ▸(쿠르드지방정부)21.3.8.부터 모든 외국인의 쿠르드지역 입국 허용<br>※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공식 인가기관이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1, 2차 접종 모두 완료) 지참 필요(미소지자 입국 금지)<br>* 단, 항공사별 탑승 가능 PCR 검사 인정기준이 상이하므로 사전확인 필요 |
| | 이집트 | ▸남아프리카 7개국(남아공, 레소토,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대상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21.11.27.)<br>※ 해당 7개국으로부터 제3국을 경유하여 이집트로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양성판정 시 출발국으로 귀한 조치, 음성판정 시 자가격리 7일 및 PCR 검사 의무<br>※ 해당 7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이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카이로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에도, 공항에서 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를 거쳐야 하며, 양성 판정 시 출발국으로 귀환 조치<br>[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br>▸21.6.28.부터 이집트에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br>ㅁ(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인정 기준)<br>o 발급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함<br>o 판독 가능한 QR코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br>※ 백신 접종 증명서에 QR코드가 없는 백신 증명서는 이집트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 증명서만 인정됨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o 백신 접종 증명서는 수정 또는 위변조 되지 않아야 함<br>o 접종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와 EMA(이집트 의약청)에서 인정한 백신만을 인정함<br>- Pizer, Moderna, AstraZeneca, Sinopharm , Sinovac, Sputnik 백신은 2차 접종일 기준 15일 경과, Johnson and Johnson(얀센) 백신은 1차 접종일 기준 15일 경과한 것을 인정함<br><br>ㅁ(변이바이러스 유행국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br>o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부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 베트남 에서 이집트로 입국 또는 입국 전 14일 내 체류한 내외국인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br>- 위 국가에서 이집트로 입국한 내외국인 중 백신 접종 증명서 미소지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오면 입국이 가능하지만 양성이 나올 경우 이집트 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는 출국 조치<br><br>[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br>▸20.9.1.부터 이집트에 입국(항공, 육로, 선박편)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아랍어) 종이 원본 제출 의무 적용 중<br>※ 국문/영문 함께 기재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br><br>ㅁ(PCR 음성확인서 인정 시간)<br>o (한국 출발 – 이집트 도착) 내·외국인 모두 경유지에서 이집트 직항편 탑승 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검진(검체 채취 등)이 이뤄진 PCR 음성 결과 제출 의무<br>※ PCR 음성확인서 발급시간이 아닌 검진시간이 기준이고, 만약 PCR 음성확인서에 검진시간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발급일의 00시01분이 검진 시점으로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PCR 음성확인서 인정 시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필요<br>Ex) 만약 10월4일 밤 늦게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환승지인 두바이에서 10월5일 오전 11시 이집트행 노선을 탑승하는 경우 한국에서 검진 인정 시점은 시차를 적용한 96시간 이내인 10월1일 오후 16시 이후의 검진이 이뤄진 PCR 음성확인서를 인정<br><br>※ (제3국 출발 – 이집트 도착) 이집트 직항 노선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내 검진을 받은 PCR 음성확인서 인정<br>- 예외 : 이집트 직항노선 출발 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검진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인정되는 출발 국가(또는 공항) : 대한민국/ 일본 / 중국 / 태국 / 북미 / 남미 / 캐나다 / 런던(힌드로) / 로마 / 파리 / 프랑크푸르트 / 뉴질랜드 / 호주)<br><br>ㅁ(PCR 음성확인서 인정 기준 및 기타사항)<br>o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PCR 음성확인서는 우리 정부에서 인증한 검진 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개인 정보(성명, 여권번호 등), 검진기관 도장 또는 QR코드, 검체 채취 방법(swab 등), 검체 채취 시점(검진 시점), 검사 유형(RT-PCR)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br>o (유아의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br>o (단순 환승객) 단순 환승객은 최종 목적지의 PCR 음성확인서 인정 여부에 따라 면제 가능<br>o 관광전세기 등 직항편을 통해 이집트의 주요 관광지(샤름엘셰이크, 후루가다, 타바, 마르사알람, 마르사마트루)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중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도착 공항에서 PCR 검진 실시(30$ 자부담) 및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예약된 숙소에서 대기<br>o 21.5.7.부터 변이바이러스 주요 감염국(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부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으로부터 이집트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장소(공항, 항구, 육상 국경 검사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PCR 검진 등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야 함 |
| 아프리카 | 감비아 | ▸입국 시 도착 전 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시<br>※ 보건부 지정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국가(Hot Spot Contries)*에서 출발한 승객 대상으로 반줄 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신속검사 실시<br>* 영국, 미국, 덴마크, 독일, 터키, 프랑스, 인도,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일본, 아일랜드, 호주, 멕시코,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핀란드, 슬로베니아<br>※ 코로나19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에 따라 접종 완료한 자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불요(단,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신속검사가 요구될 수 있음) |
| | 기니 | ▸20.7.17.부터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 허용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 기니 행 항공기 탑승(입국/경유 포함) 전 온라인 사증 신청 및 현지 대리인을 통해 국경경찰에서 발행한 입국 허가증 발급 지참 필수<br>※ 출발 시점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미제출 시 입국 불가<br>- 예외) 특별한 사유(송환, 후송)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19 RT-PCR 음성 확인서 미 지참 시 공항에서 검사 및 격리(비용 자부담)<br>-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에서 출발한 입국자)** RT-PCR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공항 및 국경(육로, 해로)에서 코로나19 RT-PCR 검사 추가 실시(자부담) △ 체류기간 동안 추적 관찰 △ 기니 입국 2주 전에 백신 접종 완료 권고<br>※ 출국 시 출국 전 72시간 이내 기니 국립공중보건연구소(INSP)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사전 예약 및 검사비 선납) |
| | 기니비사우 | ▸ 입국 시 출발 72시간 전 공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br>※ 건강상태, 출발지 및 도착지 연락처 등 제출 필요<br>※ 발열 등 유증상자 대상 추가검사를 실시하며 및 결과 통보 및 보건당국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주지에서 격리<br>※ 의심환자가 탑승한 항공편의 모든 승객은 14일간 보건당국이 별도 관리 |
| | 나미비아 | ▸ 20.9.1.부터 빈트후크 공항의 국제선 운항 재개<br>※ 21.12.1.부터 입국 전 Trusted Travel System(africacdc.org/trusted-travel) 사이트에서 PCR 검사 결과서 및 백신접종증명서 사전 등록 및 승인 의무화<br>※ 입국자 대상 무작위 PCR 검사 실시<br>※ **(단기 방문객)** 나미비아 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적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입국이 허용된 사업, 교육, 의료, 관광 목적의 입국자 대상 아래 조치 적용<br>-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격리 면제(PCR 검사시기가 출발일 기준 7일 이내이나 72시간 초과시 입국은 가능하나, 감독하에 격리되며 추가 코로나19 검사비용은 자부담)<br>- 나미비아에서 출국 후 7일 이내 재입국하는 여행객은 출국 시 제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로 재입국 가능(단, 코로나19 고위험국가에서 재입국 시 검사결과서 재사용 불가)<br>※ **(장기 체류자)** 거주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가능하나 도착 후 진단검사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 지정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br>- 나미비아 영주권자는 출발국 정부의 유효한 격리면제서 제시할 경우,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격리대상에서 제외 |
| | 나이지리아 | ▸ 21.12.5.부터 모든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후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br>※ (입국 전) △항공기 탑승 전 질병관리본부 사이트(http://nitp.ncdc.gov.ng)에 입국정보 입력, 음성확인서 업로드, 입국 후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비용 결제(공항 도착 후 현금 지불 가능) 완료하고 QR 코드 출력 필요<br>※ (입국 후)<br>- (백신 완전 접종자) 도착 2일째 PCR 검사 실시(사전 검사 예약 및 검사비 결제 필요)<br>- (백신 미접종자/ 불완전 접종자) △도착 후 7일간 자가격리, △도착 2일째 및 7일째 PCR 검사 실시<br>※ (출국자)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출발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 필요 |
| | 남수단 | ▸ 출발 72시간 전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br>※ 단, 입국 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입국 목적(관광, 친지 방문 등)에 부합하는 초청장 등을 제시 필요 |
| | 남아공 | ▸ 출발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20.10.1.)<br>※ 유증상자 및 접촉자의 경우 10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br>※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남아공 Covid Alert 앱 설치, △가족원 중 한명이라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족 전체 검사 및 격리(자부담) |
| | 니제르 | ▸ 항공을 통한 출입국 재개(20.8.1.)<br>※ 출입국 시 72시간 이내(검체채취일 기준)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br>- 단, UEMOA 가입국발 승객들에 한해, 5일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허용<br>- 유증상자는 신속항체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 시 PCR 검사 실시<br>※ 니제르 거주자는 7일간 자가격리 실시(21.8.1.)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 △연락 가능한 장소에서 자가격리 실시 필요, △격리 시작 시 경찰당국이 입국자의 여권을 회수하고 격리 종료 시 반환, △격리 7일째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시 격리 종료<br>※ 출장 등 목적의 13일 이하 단기 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불요하나 방역조치 준수 및 출국 항공권 소지 필요<br>- 7일 이상 체류 시 7일째 정부지정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
| | 말라위 | ▸모든 외국인 대상 아래 방역조치 적용<br>※ 입국 시 입국일로부터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미지참 혹은 제출 불가시 현장에서 백신예방접종을 한다는 전제하에 입국을 허가하거나, 자부담으로 10일간 시설격리 실시 후 입국 가능)<br>- 해당 음성확인서에 대하여 Trusted Travel(https://trustedtravel.panabios.org)에서 디지털코드를 발급 또는 글로벌헤븐(www.globalhaven.org)에 접속하여 PCR 영문 음성확인서(스캔 또는 사진촬영본) 업로드 후 부여되는 디지털코드 제출<br>※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br>▸21.4.26.부터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브라질 출발 여행자 입국 금지<br>※ 상기 국가에서 출발했더라도 필수 목적(외교관, 필수 의료목적 등) 입국자는 예외적 입국 허용<br>※ 상기 예외적 입국자는 △정부지정 시설에서 14일 격리(자부담), △도착일로부터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검사지 지참 필수 |
| | 말리 | ▸20.7.25.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출입국 및 경유 허용<br>※ (입국 요건)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 후 검사 진행 /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혹은 호텔격리(비용 자부담)<br>※ (출국 요건) △공항 및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체온 38도 이하 및 코로나19 무증상자만 항공기 탑승 가능<br>※ (경유 요건)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발열 체크, △숙박 경유 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위생수칙 준수 |
| | 모잠비크 | ▸21.7.17.부터 30일간 아래 조치 한시 적용<br>※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6세 이상)는 출발 전 72시간 내 출발국에서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방식) 제출<b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검사 후 당국의 소견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격리(비용 자부담)<br>- 모잠비크 단기여행자나 경유 목적 체류자의 경우 제출 인정되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7일(샘플채취 기준)<br>※ 상기 정책 적용 지연 또는 예고 없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대사관에 사전 확인 요망 |
| | 민주콩고 | ▸20.8.15.부터 국경봉쇄조치 해제<br>※ 입출국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및 모든 승객에 대해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측정, 검역문진표 작성 |
| | 베냉 |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코로나19 PCR 검사, △ 입국 즉시 1차 검사(입국시 여권은 베냉 당국에서 보관하며, 양성 판정시 코로나19 완치 이후 여권 회수가능), △입국 14일 이후 2차 검사, △ 출국 72시간 전 3차 검사<br>※ 검사예약절차:www.surveillancesanitaire.bj 접속 > 개인정보 입력 > 항공정보 입력 > 비용지불(pay now) 클릭 > 이메일주소 입력 > 결재완료시 인증코드 발급받음(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모든 검사비는 무료)<br>※ 환승시 항공기 또는 공항밖(이민국 통과)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검사 면제 |
| | 부르키나파소 | ▸항공을 통한 출입국 재개(20.8.1.)<br>※ △입국 시 5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자의 경우 일상활동 가능하며, 입국일로부터 8일째, 14일째 날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권고, △코로나19 유증상자(체온 38도 이상) 또는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신속항체검사 및 PCR 검사 실시(90,000CFA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비용 자부담)<br>※ 음성확인서 미소지 입국자의 경우 PCR 검사 시행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지정 시설 격리 |
| | 상투메 프린시페 | ▸20.7.16.부터 코로나19 대응 3단계 완화 조치 시행하여 상업 항공 운항 재개 허가 및 상투메프린시페 내 섬 지역간 이동(항공 및 선박) 허가<br>※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및 제시, 음성인 경우 별도 격리 불요 |
| | 세네갈 | ▸20.7.15.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 허용<br>※ (항공기 탑승조건)<br>- 모든 입국 승객은 코로나19 RT-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거나, PASS SANITAIRE(보건패스)를 제시해야 항공기 탑승 가능<br>- (PCR 음성확인서) 세네갈 도착 기준 5일 이내 검사 실시하여 발급<br>- (PASS SANITAIRE) WHO 승인 백신을 접종하고, 최소 여행 전 14일 이전에 접종을 완료(접종 권장 횟수 충족)했음을 증명<br>※ (공항 입국 조건)<br>-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또는 보건패스 소지 승객은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입국(24시간 내 경유 및 환승 구역 내 체류 조건 충족 필요)<br>- 공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위험 평가(증상 여부, 출발지, 경유자, 경유지 체류 시간 등)를 한 후 검사 여부 결정 |
| | 세이셸 | ▸21.3.25.부터 외국인의 세이셸 입국 허용<br>※ 입국 시 ①항공편 출발 최대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후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 ②음성판정 이후 세이셸 건강여행허가증(Health Travel Authorization) 온라인 신청(seychells.govtas.com), ③세이셸에서 코로나19 감염 시 격리 및 치료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보유, ④입국 후 세이셸 정부(www.tourism.gov.sc)가 지정한 숙소 중에서 선택하여 숙박<br>※ 21.11.27.부터 신규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7개국 發 (남아공,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여행객 및 경유객 입국 금지 |
| | 수단 | ▸국적과 상관없이 8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수단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br>※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14일간 격리 조치(자비 부담)<br>※ 아메리카 대륙, 유럽, 호주, 뉴질랜드에서 출발한 입국자는 입국일 기준 96시간 이내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br>▸22.2.27.까지 지난 14일 이내에 남아공, 짐바브웨,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에 머물렀거나 경유한 모든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21.11.27.) |
| | 시에라리온 | ▸(입국 전)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실시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출발지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행허가서류(Traveler's Authorization)* 제시<br>*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시에라리온 여행포털(www.travel.gov.sl)에 게시된 Passenger Locater Form, △도착 시 코로나19 검사비용 납부증(상기 사이트를 통해 납부)(20.7.17.)<br>▸(입국 후) 코로나19 간이검사 및 PCR 검사 실시, 검사비용 납부증 및 Passenger Locater Form 제출<br>※ 간이검사가 △음성일 경우 목적지 이동 허용 및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1~2일 소요) 자가 대기*, △양성일 경우 공항 인근 격리호텔에서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격리<br>* 단, 백신 미접종자는 PCR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보건당국 지정호텔(www.travel.gov.sl 참조, 사전예약 필요)에서 격리(외교관 여권 소지자 제외) |
| | 앙골라 | ▸거주 외국인(외교관, 투자비자, 임시체류비자, 노동비자, 난민카드 소지자 등) 출입국 허용(단, 여행·상용 등 단기 방문객 입국 불가)<br>※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RT-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시 공항에서 신속항원진단검사 실시 의무<br>※ 입국 후 7일 자가격리 후 신속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br>- 21.9.1.부터 내외국민 불문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소지자는 입국 후 공항에서 신속진단검사 음성 판정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br>* 백신종류 : WHO 승인 백신+스푸트니크 V, 교차접종 미인정, 최종 접종 후 최소 경과기간 제한없음<br>※ 20.9.29.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입국 항공일정 e-ticket △여권 및 비자 사본 등을 첨부하여,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입국사전신고서를 앙골라 코로나19 범정부대처위원회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홈페이지(http://covid19.gov.ao)에 등록 후 승인 필요<br>▸21.12.1.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아프리카 7개국 입국 금지<br>※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 출발(경유 포함)한 모든 입국을 일시 금지<br>- 단, 상기 7개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해서 입국하는 앙골라인 및 거주 외국인(estrangeiros residentes)의 경우는 입국이 허용되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 | 에리트레아 | ▸모든 승객은 입국시 입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br>※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항에서 모든 승객들에 대한 PCR 검사 실시<br>-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후 재검사 실시 |
| | 에스와티니 | ▸브라질 등 고위험 국가군 49개국(한국 제외)* 방문객 대상 입국금지(20.10.1.)<br>*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프랑스, 인도, 이라크, 이스레알 미국, 영국 등<br>※ 입국 시 △출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코로나 유증상자는 검사 실시(자비 부담) 및 지정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20.10.1.) |
| | 에티오피아 | ▸(일반여권 소지자) 모든 내외국인은 ①입국일 기준 5일(120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함께 ②Trusted Travel(https://trustedtravel.panabios.org) 또는 글로벌헤븐(www.globalhaven.org)에 접속하여 PCR 영문 음성확인서(스캔 또는 사진촬영본) 업로드 후 부여되는 디지털코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단, 10세 미만 어린이는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br>※ 21.8.19.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완치 후 90일 이내인 입국자는 상기 PCR 음성확인서 및 디지털코드와 함께 관련 증명자료(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영문증명서/ 특정양식 없음) 제출시 7일 자가격리 면제<br>※ 코로나19로 인해 경유비자* 발급 한시적 중단<br>*경유 중 공항 밖으로 이동시 필요한 비자로, 공항 내 단순 경유시 불요<br>- 모든 경유승객은 원칙적으로 공항 내에서 대기해야 하나, 경유시간이 길 경우 호텔예약 확인증 및 탑승권을 제시하면 공항 밖으로 이동 허용(상세사항은 에티오피아 당국을 통해 확인 필요<br>▸(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코로나19 영문 음성확인서 제출(디지털코드 제출 불요)<br>※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14일 자가격리 |
| | 우간다 | ▸모든 입국자는 백신접종 여부, 출발국가에 상관없이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지참<br>※ 21.10.27.부터 모든 입국자는 엔테베 국제공항에서 PCR 검사(USD30 자부담)<br>- 6세 이하 아동과 백신접종을 완료한 승무원은 상기 의무 미적용 |
| | 잠비아 | ▸21.11.30.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검역절차를 적용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 필요<br>※ 출국일로부터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미지참 시 입국거부)<br>※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로부터 출발한 모든 입국자는 PCR 검사와 관계없이 의무적 10일 격리 실시(장기 체류자는 자가격리 허가, 단기체류자는 자부담으로 10일간 정부 시설격리)<br>※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
| | 지부티 | ▸21.6.20.부터 출입국 관리 강화(대통령령)<br>※ 입국 시 출발 기준 3일(72시간) 이내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br>※ 도착 시 공항 내 검사소에서 내외국인 모두 PCR 검사 실시(검사비: 30 USD)<br>-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br>- (백신접종증명서 미소지자)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10일 자가격리 / PCR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10일 지정호텔 격리(자부담) |
| | 짐바브웨 | ▸모든 외국인 대상 아래 방역조치 적용<br>※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지참(음성확인서 미지참 시 입국 불허)<br>※ 음성 확인서 지참과 별개로 21.11.30.부터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를 자부담으로 실시<br>-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10일 자가격리 실시(장기체류자는 자택 격리 가능하나, 단기 체류자는 자부담으로 정부 지정된 시설 중 선택하여 격리) |

| 구 분 | | 조 치 사 항 |
|---|---|---|
| | | - 도착 후 양성결과가 확인 시 자부담으로 정부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br>▸ 20.10.1.부터 관광 및 사업 목적 등 기존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 입국 전 3일(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br>※ 입국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체온 검사, 개인소지품 소독, 설문지 작성 등 조치 시행 |
| | 차드 | ▸ 입국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21.1.22)<br>※ 출국 시에도 출국 전 3일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 | 카보베르데 | ▸ 국경 경찰에서 발급한 입국허가서 사본 제시<br>※ 카보베르데 거주 중인 초청자를 통해 국경 경찰 측에 입국허가요청을 하여 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뒤, 입국 시 해당 사본 제시(최소 입국 7일 전 신청 권고)<br>※ 가족이 카보베르데 내 거주 중인 경우 불요<br>▸ 입국 시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
| | 코모로 | ▸ 입국시 탑승 72시간 전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
| | 코트디부아르 | ▸ 국제 항공편 운항 재개 및 입국 허용(20.7.1.)<br>※ 출입국 및 환승 시 항공여행 증명서 및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검체 채취일 기준) 지참, 입국 시 제시 의무<br>- (항공여행 증명서) 홈페이지(deplacement-aerien.gouv.ci)에 접속하여 인적 사항 및 항공편 정보 입력(입국시 수수료 2,000 FCFA, 출국 시 수수료 25,000 FCFA 지불/ 출국 시 항공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에는 코로나19 검사 비용 포함)<br>- 체온이 38도 이상이거나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승객은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br>▸ 오미크론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검역 강화조치(12.1 발표)<br>※ 오미크론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입국 직후 PCR 검사 및 5일간 추적 관찰조치 실시 |
| | 탄자니아 | ▸ 21.5.4.부터 모든 입국자(여행객, 체류자 포함) 대상 탄자니아 도착 96시간 이내에 검체가 채취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또는 NAATs) 제출<br>※ 모든 입국자는 탄자니아에 도착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여행자감시 양식 작성 의무화 (온라인 링크: https://afyamsafiri.moh.go.tz/)<br>※ 14일 이내에 코로나19 변이발생국가 또는 코로나 확진자수가 높은 국가를 방문한 경우 입국시 신속진단검사 실시(1인당 탄자니아 본토 USD10, 잔지바르 자치령 USD25 지불 필요)<br>- 단, 상기 검사시에 확진자로 판명된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또는 치료되어 음성 판정시까지 자가 격리의무 부과<br>▸ 탄자니아의 경우 입국제한조치를 변경하기 단 몇 시간 전에 발표하고 적용하고 있는 바, 방문 전에 수시로 항공사 및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요망 |
| | 토고 | ▸ 모든 입국자에 대해 7일 이내 검사받은 COVID-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온라인 입국신고서에 별도 첨부)<br>※ 입국 24시간 이전에 온라인 입국신고서(https://voyage.gouv.tg/checkphone) 작성(로메공항 입국시 실시할 의무 COVID-19 PCR 검사 신청, 비용 선지급 및 영수증 필수 지참) 완료 필요<br>※ 입국 이후 공항에서 COVID-19 PCR 검사 의무 실시, TOGO SAFE 모바일 앱을 설치(30일간)하고 숙소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24시간 이내 email 또는 문자메시지로 송부)가 나올 때 까지 자가격리 실시<br>※ 21.11.29.부터 남아공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72시간 자가격리 의무<br>▸ 선박 선원에 대한 조치사항<br>※ (입국)입국전 5일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입국 72시간 이내 온라인(http://www.voyage.gouv.tg)에서 검사예약 및 비용결재, △토고 정부 지정 선박 agent를 통하여 검사소로 이동 , △코로나 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입국 허용<br>※ (출국) 출국전 5일이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

※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밑줄 국가는 非쉥겐협약 가입국)

※ **쉥겐협약 가입국(26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밑줄 국가는 非EU 회원국)

##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 4개 국가·지역

※ 출발 전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조치 해제 국가·지역(해제 시기) |
|---|---|
| 유럽 | ▸ 리히텐슈타인, 벨기에①, 스페인② |
| 미주 | ▸ 엘살바도르 |

① 벨기에

o EU+역내 녹색/오렌지 지역 국가 및 EU+역외 국가 중 특별입국허용 지정국(White list 국가) 중 녹색/ 오렌지색 지역*에서 입국 시 별도 입국제한조치 미적용

* (녹색 및 오렌지색)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홍콩,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마카오, 뉴질랜드, 나미비아, 페루, 카타르,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아랍에미리트, 우루과이 / (적색) 요르단, 중국

o **(모든 해외 입국자 PLF 양식 제출의무)** △해외에서 항공, 배편으로 입국시, △EU+ 역외지역에서 입국시(기차, 버스 포함) 벨 입국 48시간 이내 PLF 양식 작성 필요 → 작성 완료시 이메일로 확인 QR코드 발송

o 적색지역에서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 완치증명서,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테스트 음성확인서 또는 36시간 이내 시행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서 중 택1 제시 필요

o (11.28일자) 벨기에 지정 고위험국 :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 직전 14일간 고위험국 체류자 벨기에 입국 금지
- (적용 예외) 벨기에 국적자, 벨기에 거주자, 운송업 종사자, 환승객, (이하 주재국 벨기에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발행 필수여행입증 증명서 소지 필수) 벨기에 거주자의 배우자, 파트너, 자녀(같은 세대 거주자)

o EU차원의 지역 분류에 따라 PCR 검사 및 격리 여부 결정 (12세 미만 아동은 PCR 검사 불요)

▸ **출발지별 입국자 대상 조치 현황 표**

| | 백신 접종자* | 백신 미접종자 |
|---|---|---|
| 녹색, 오렌지색 지역 | 제한조치(PCR 검사, 의무 격리) 불요 | |
| EU+ 역내 적색지역 및 특별입국허용 제3국(White list 국가)중 적색지역 | 제한조치 불요<br>(완치증명 포함) | ① (벨기에 거주자 중 입국前 72시간내 PCR 또는 또는 입국(전)일 실시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회복증명서 없는 경우)<br>- 입국후 1-2일내 검사 실시→ (음성)격리 해제, 7일차 재검실시/ (양성)10일 격리<br>+ 입국 후 7일차 PCR 재검실시<br>② (벨기에 거주자 중 72시간내 PCR 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서 있는 경우)<br>- 입국 후 1-2일차 검사 면제 + 입국 후 7일차 PCR 재검실시<br>③ (벨기에 비거주자) 입국전 72시간 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의무 지참, 입국(전)일 실시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결과서 소지 또는 도착일 RAT 검사 실시<br>- 입국 후 격리의무 無 + 입국 후 7일차 PCR 재검실시 |
| EU+ 역외 적색지역 | 입국시 72시간 내 실시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입국(전)일 실시한 신속항원(RAT) 음성결과서 제시 의무→ 입국후 1일차 PCR 또는 검사 실시→ (음성)격리 해제/(양성) 10일 격리<br>→ 입국 후 7일차 PCR 재검실시 | ※ EU국가 국민 및 필수여행입증 증명서 소지자인 경우만 입국 가능<br>o 입국전 72시간 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회복증명서, 입국(전)일 실시한 신속항원(RAT)검사 음성결과서 또는 도착일 실시한 RAT 음성결과서 제출 의무<br>o 10일 격리 의무<br>1, 7일차 PCR 검사 실시(7일차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br>o 일부국가 적용예외(info-coronavirus.be/en/colour-codes-by-country/ 확인필요) |
| EU+ 역내 | 제한조치 불요 | ① (벨기에 거주자) 입국후 1일차 PCR 검사 실시→ |

| | | |
|---|---|---|
| 고위위험지역 | (완치증명, PCR음성 포함) | (음성)격리 해제/ (양성)10일 격리<br>+ 입국 후 7일차 PCR 재검실시/ *입국시 72시간 내 실시한 PCR음성확인서 제시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면제/<br>②(벨기에 비거주자)<br>- (입국전 72시간 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지참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 면제<br>-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br>1일차 PCR 검사 실시→ (음성)격리 해제/ (양성)10일 격리<br>+ 입국 후 7일차 PCR 재검실시 |
| EU+ <u>역외</u><br>고위위험지역 | -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입국전 72시간 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지참<br>- 10일 격리 의무 + 1, 7일차 PCR 검사 실시 | |
| | 벨기에 非거주자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 불허<br>*△ 외교관, 운송업종사자, 인도적 사유 등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 가능, 예외사유증명 필수<br>(벨기에 非거주자로 입국 허가된 경우) EU 또는 벨기에에서 인정하는 백신증명서 지참 의무 | |

* 9.1.부터 제3국에서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 (인정 백신) 유럽의약품청(EMA)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및 Covishield
- (인정 조건) EU가 승인한 백신을 2회(존슨앤존슨의 경우 1회) 접종을 마친 후, 추가로 2주 경과해야 백신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

**② 스페인**

▸20.7.4.부터 한국 포함 EU+ 역외 여행제한 해제국가* 대상 입국 허용

* **<u>한국</u>,** 호주, 뉴질랜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대만, 캐나다,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쿠웨이트, 르완다,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바레인, 콜롬비아, 페루,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입국 허용 대상국은 매달 업데이트)

※ 상기 국가 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스페인 입국 가능하며, 한국인은 단기방문시 무사증 입국(최대 90일)이 가능하나 입국시 3단계 특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함

* ① 도착 전 48시간 이내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도착 시 QR 코드 제시(스페인 보건부의 Spain Travel Health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SpTH에서 작성), ② 발열 체크, ③ 대면 심사

※ 상기 국가 외 EU+ 역외국의 경우, EU 거주자, 장기체류비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 증빙서류를 갖춘 필수 출장인력 또는 백신접종완료자*는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

* WHO 또는 EMA 승인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 (교차접종 인정)

▸21.6.7.부터 코로나19 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NAAT(RT-PCR, RT-LAMP, TMA, HAD, NEAR, CRISPR, SDA 등) 또는 48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중 1가지 의무화

*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EU+ 역내 28개국 및 상기 EU+ 역외 여행제한 해제국가 외 모든 나라(한국은 미포함)(고위험국은 매주 업데이트)

▸21.11.29.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백신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NAAT(RT-PCR, RT-LAMP, TMA, HAD, NEAR, CRISPR, SDA 등) 또는 48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지참 및 10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 보츠와나, 에스와티니(스와질란드),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끝.